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673-01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방안 및 농어촌
통계기반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A Study on Operation Scheme of Rural Services
Standard and Construction of Rural Statistics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방안 및 농어촌 통계기반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12월

연구기관명: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연구책임자:	김	광	선	부	연	구	위	원	
공동연구원:	송	미	령	연	구	위	원		
	김	용	렬	부	연	구	위	원	
	권	인	혜	연	구	원			
	윤	병	석	연	구	원			

요 약

□ 연구의 목적

정부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을 통해 8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구성된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이행실태 점검·평가 등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운용을 위한 농어촌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연구 내용과 방법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째,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제도화 추진 경과와 현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관련 쟁점을 확인한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도입과 운용은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효율적·효과적 운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이들 쟁점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요소들을 확인한다.

둘째,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기준자료 작성과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득 가능한 공식통계 분석을 통해 항목별 기준자료를 작성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그러나 공식통계만으로 기준자료 작성이나 이행실태 점검이 쉽지 않은 항목들이 있어 보완적으로 사례지역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앞서 제시하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쟁점과 사례지역 심층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동 기준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자체의 운영방안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와 연계 방안 등도 포함된다.

넷째, 농어촌 통계기반의 구축방안 및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통계의 지속적 구축이 필요하지만, 이를 보다 확대하여 농어촌 통계기반을 구축하게 되면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이행실태나 보다 포괄적인 농어촌 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의 연구 수행을 위하여 활용한 연구 방법은 기존 논의에 대한 자료 검토, 통계자료 분석,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행정조사, 사례지역 조사, 관련 공무원 실무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이다.

□ 주요 연구 결과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의 도입을 위해 2009~10년 농림수산물부와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검증 과정을 거쳐 31개 항목의 기준을 설정하고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2011년부터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쟁점별로 구분한 결과 삶의 질 향상 계획과 농어촌 서비스기준 간 관계 설정, 기준자료 구축과 이행실태 점검,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에 대한 평가와 평가 결과의 활용,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수범사례의 발굴과 보급, 관련 제도 및 정책과의 연계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쟁점들을 중심으로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전, 본 연구는 동 제도 운영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자료 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31개 항목의 기준으로 구성되지만 이를 세분하면 모두 44개의 세부기준으로 나뉜다. 이들 세부기준의 기준자료 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51가지 항목의 통계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득 가능한 정부의 공식 공표통계에 근거한 분석과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행정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자료의 한계상 31개 기준항목 중 19개 기준항목, 44개 세부기준 중 22개 세부기준에 대한 기준자료를 구축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었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운용은 140개 농어촌 시·군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기준 이행실태의 비교분석을 위해 가능한 한 23개 일반시에 대해서도 기준자료를 함께 구축하고, 기준의 이행실태도 점검하였다. 지자체 행정조사에는 147개 시·군만 응하였으며, 기준항목에 따라 응답 시·군의 수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농어촌 시·군의 서비스기준 항목별 이행실태>

부문	기준항목	세부 기준항목	기준 목표	이행실태
주거	주거 가능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수비율	시·군별 90% 이상	76.0%
	신재생에너지 보일러 보급	해당 여부	해당 여부	97.9% (보급 가구 비중 0.4%)
	공동시설 프로그램	운영비/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행정리 비중	60.9%
	안전한 마실물	면지역 상수도보급률	면지역 75% 이상	45.6%
	오폐수 처리	하수도보급률	시·군별 71% 이상	57.1%
교통	대중교통	도보 15분 내 대중교통 이용 여건	3회 이상 행정리 비중	81.7%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시·군별 유무	41.6%
	인도 설치	읍·면소재지 접근로 인도 설치	시·군별 인도 설치 비중	17.4%
교육	고등학교	우수/기숙형고교	시·군별 1개교 이상	85.7%
	교육발전위원회	교육발전위원회	유무	59.8%
	평생교육	읍·면별 거점시설 1개 이상	유무	19.9%
보건 의료	1차 진료	중요과목 의사 진료	일반 병의원	99.3%
			한방 병의원	99.3%
			치과 병의원	99.3%
			방사선병리검사 병의원	32.1%
	순회방문	순회방문	월1회 이상 행정리 비중	50.5%
	의약품 구입	읍·면 단위 의약품 구입 가능	구입 가능 읍·면 비중	96.4%

<농어촌 시·군의 서비스기준 항목별 이행실태>(계속)

부문	기준항목	세부 기준항목	기준 목표	이행실태
사회 복지	청소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시·군별 설치 여부	92.9%
	아동	지역아동정보센터	1개 이상 설치 읍·면 비중	42.6%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군별 설치 여부	78.6%
방문서비스 여부		시·군별 시행 여부	71.4%	
응급	도난 방지	마을별 방범용CCTV	설치 행정리 비율	34.9%
문화 여가	독서	공공 및 작은도서관	읍·면별 1개 이상(%)	51.5%
	문화시설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시·군별 설치 여부	98.6%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시·군별 월1회 이상	19.4%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의 점검·평가를 위한 심층조사는 경북 김천시, 충남 예산군, 전남 장흥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심층조사 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모든 농어촌 시·군에 동일한 항목과 내용의 기준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행에 대한 평가 시에는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농어촌 시·군 간에도 지역의 공공서비스 공급 실태와 주민 수요가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 나름의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공통된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 달성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으므로, 혁신적 사례들을 다른 시·군에도 전파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현재 일선 지자체에서는 동 기준의 운용에 추가적인 정부지원이 없다는 점을 들어 크게 중요한 제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넷째,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이행 촉진을 위해서는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 확보가 요구된다.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동 제도 운영과 관련된 쟁점 중심의 기존 논의들에 대한 검토, 이행실태 점검·평가 및 사례지역 심층조사 등을 바탕으로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제시하였다.

첫째,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의 운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실무조직이 확대 편성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기준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전문연구기관(예: 가칭 ‘RSS 운영지원단’)에 위임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 부처 간, 중앙-지방 간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이들의 기준 이행을 실질화하기 위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및 사무국의 권한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동 제도의 중요성과 기준 이행의 실무적 기술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이행하는 데 참고할 만한 (가칭)‘농어촌 서비스기준 실행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해야 한다. 또 지자체 등의 기준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수범사례에 대한 상사업비 방식의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전문연구기관이 동 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준 이행에 있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문제점과 애로점을 조사·분석함은 물론이고, 이를 해결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동 전문연구기관이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선방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별도 예산은 수범사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 해당 지자체 간 (가칭)‘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 협약’에 기반한 예산, 그리고 전문연구기관(가칭 ‘RSS 운영지원단’)의 운영예산 등으로 예산 당국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를 관련 제도 및 정책과 연계 운영해야 한다. 예로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성과목표나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나 포괄보조금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정책의 목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 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제도(rural proofing) 운영 시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농어촌 영향관리 체크리스트에 반영하는 연계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농어촌 사회적기업이나 공동체회사 육성 시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에 대한 기여 정도를 근거로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평가를 위한 통계기반 구축의 문제를 확대하여 농어촌 통계기반 구축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공표되면서 시·군단위 이하의 공간단위로 구축할 수 있는 정부의 공식통계 풀(pool)을 구축하였고, 공표되고 있지만 공간단위를 시·군 이하로 조정해야 할 항목 그리고 신규 조사가 필요한 통계항목을 도출해 제시하였다. 이렇게 구축한 농어촌 통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농어촌 지역 발전지수, 기초생활기반지수, 창조지역지수, 삶의질지수 등을 예로 제시하였다.

ABSTRACT

A Study on Operation Scheme of Rural Services Standard and Construction of Rural Statistics

The government recently introduced Rural Services Standard(hereinafter 'RSS') as a new institution to improve quality of life in rural Korea.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hat is to make practical operation scheme of RSS as a follow-up to its institutionalization. And it is another purpose to construct the foundation of rural statistics as a means to monitor and evaluate fulfillment of RSS, and an infrastructure of rural policies.

To achieve these purposes, we put into operation various surveys and analyses. As a result, we proposed five schemes for the operation of RSS as follows.

Firstly, it is needed to establish a responsible organization under the Commission of Quality of Life and an operation system among the main bodies concerned for the operation of RSS. Especially, it is of very importance to commission a specialistic research institute to monitor and evaluate periodically the fulfillment of RSS.

Secondly, the government should inform the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of the importance of the new institution, RSS. The government also need to design and diffuse a fulfillment guideline of RSS.

Thirdly, a separate budget for the operation of RSS should be allocated from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budget can be used as incentive for the local governments which fulfill RSS best, and as contribution to the research institute mentioned above.

The fourth,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operation of RSS, it should be linked up with related rural policies. For example, policies for Rural Proofing, Rural Social Enterprises, Quality of Life, and so forth can be included in such rural policies.

Fourthly, to construct the foundation of rural statistics, various data must be collected on the scale of individual local areas(sis and guns). Then the rural statistics can be used to review and diagnose the conditions of rural areas, and to offer the government rural policy directions. The usage forms of

x

the rural statistics include Regional Development Index, Creative Index of Local Areas, Index of Quality of Life etc.

Researchers: Kwang-Sun Kim, Mi-Ryung Song, Yong-Lyoul Kim, In-Hye
Kwon and Byung-Seok Yoon.

Research Period: 2010.5~2010.12

E-mail Address: yeskskim@krei.re.kr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제2장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화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

1.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개요 5
2.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의 추진 경과 10
3.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의 주요 쟁점 12

제3장 농어촌 서비스기준 기준자료 구축과 이행실태 분석

1. 기준자료 구축 및 이행실태 분석 개요 23
2. 농어촌 서비스기준 기준자료 구축 24
3. 사례지역의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50
4. 기준자료 구축 및 이행실태 분석의 시사점 92

제4장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방안

1.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위한 구성 요소 95
2.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구성 요소별 운영방안 98
3. 향후 정책 과제 109

제5장 농어촌 통계기반 구축 및 활용방안

1. 농어촌 통계기반 구축의 배경과 의의 111
2. 국내외 농어촌 통계기반 구축 및 활용 사례 113

3. 농어촌 통계기반 설계	129
4. 농어촌 통계기반 활용방안	140
제6장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57
부록	161
참고 문헌	243

표 차 례

제2장

- 표 2-1. 농어촌 서비스기준 항목과 내용 8
- 표 2-2.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내 농어촌 서비스기준 반영 현황 15

제3장

- 표 3-1.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현황 28
- 표 3-2. 농어촌 서비스기준 항목별 기준자료 구축 내역 30
- 표 3-3.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율 기준 이행실태 32
- 표 3-4.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태: 지역별 상·중·하위 분포 33
- 표 3-5.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기준 이행실태 35
- 표 3-6. 하수도 보급률 기준 이행실태 35
- 표 3-7. 대중교통 1일 3회 이상 이용 가능 기준 이행실태 36
- 표 3-8. 시·군별 1개 이상 우수고교 육성 기준 이행실태 38
- 표 3-9. 시·군별 1차 진료 병의원 분포 40
- 표 3-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방문서비스 제공 현황 44
- 표 3-11. 농어촌 시·군의 읍·면별 도서관 설치 현황 46
- 표 3-12. 시·군별 지방문화원의 문화프로그램 개최 회수 47
- 표 3-13. 농어촌 시·군의 서비스기준 항목별 이행실태 48
- 표 3-14. 사례지역의 공공서비스 공급 실태 비교 51
- 표 3-15. 사례지역의 공공서비스 공급 실태 표준화 점수 비교 53
- 표 3-16. 김천시 읍·면별 인구 및 가구 54
- 표 3-17. 김천시 주거 서비스기준 현황 55
- 표 3-18. 김천시 교통 서비스기준 현황 57

표 3-19.	김천시 교육 서비스기준 현황	58
표 3-20.	김천시 보건·의료 서비스기준 현황	59
표 3-21.	김천시 사회복지 서비스기준 현황	60
표 3-22.	김천시 응급 서비스기준 현황	61
표 3-23.	김천시 문화·여가 서비스기준 현황	62
표 3-24.	김천시 정보통신 서비스기준 현황	63
표 3-25.	예산군 읍·면별 인구 및 가구	68
표 3-26.	예산군 주거 서비스기준 현황	69
표 3-27.	예산군 교통 서비스기준 현황	70
표 3-28.	예산군 교육 서비스기준 현황	71
표 3-29.	예산군 보건·의료 서비스기준 현황	72
표 3-30.	예산군 사회복지 서비스기준 현황	73
표 3-31.	예산군 응급 서비스기준 현황	74
표 3-32.	예산군 문화·여가 서비스기준 현황	75
표 3-33.	예산군 정보통신 서비스기준 현황	76
표 3-34.	장흥군 읍·면별 인구 및 가구	80
표 3-35.	장흥군 주거 서비스기준 현황	81
표 3-36.	장흥군 교통 서비스기준 현황	82
표 3-37.	장흥군 교육 서비스기준 현황	83
표 3-38.	장흥군 보건·의료 서비스기준 현황	85
표 3-39.	장흥군 사회복지 서비스기준 현황	86
표 3-40.	장흥군 응급 서비스기준 현황	87
표 3-41.	장흥군 문화·여가 서비스기준	88
표 3-42.	장흥군 정보통신 서비스기준	89

제4장

표 4-1.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위한 구성 요소와 주요 내용	97
--------	----------------------------------	----

제5장

표 5 - 1.	농어업 및 농어촌 관련 통계	114
표 5 - 2.	국가통계 부문별 주요 내용	115
표 5 - 3.	영국 Neighborhood Statistics의 데이터 제공 분야	118
표 5 - 4.	The State of Countryside 2010 보고서의 주요 내용	122
표 5 - 5.	일본의 농촌지역사회 관련 통계	128
표 5 - 6.	농어촌 통계 풀(pool)	130
표 5 - 7.	농어촌 통계 수요조사	134
표 5 - 8.	농어촌 통계 풀(pool)의 보완	135
표 5 - 9.	농어촌 통계 신규 조사	137
표 5-10.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신규 조사	138
표 5-11.	지역발전지수(RDI)의 구성과 세부내용	142
표 5-12.	지역별 지역발전지수(RDI)	144
표 5-13.	생활편의기반지수의 구성과 세부내용	145
표 5-14.	지역별 생활편의기반지수	148
표 5-15.	창조지역지수의 구성과 세부내용	149
표 5-16.	삶의질지수의 구성과 세부내용	151
표 5-17.	지역별 삶의질지수	152
표 5-18.	삶의질지수 및 부문별 지수 간 상관관계	155

그림 차례

제1장

- 그림 1-1. 연구의 주요 내용 요약 4

제2장

- 그림 2-1. 삶의 질 향상계획의 구성과 농어촌 서비스기준 간 관계 14

제3장

- 그림 3-1. 김천시 종합 스포츠타운 구성 64
 그림 3-2. 김천시 다문화교육지원센터 66
 그림 3-3. 장흥군 유치초중학교 90
 그림 3-4. 장흥군 유치초중학교 작은도서관 91

제4장

- 그림 4-1.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위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조직개편(안) 99
 그림 4-2.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추진체계 100

제5장

- 그림 5-1. 영국 Neighborhood Statistics의 지역정보 제공 사례 120
 그림 5-2. 캐나다 CID의 4가지 데이터 제공 지역단위 125
 그림 5-3. CID 인터넷 인터페이스 예시: 커뮤니티단위 언어 사용자 126
 그림 5-4. 삶의질지수 상위 50위 지역 153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기초생활권 발전정책과 삶의 질 향상 정책 등 많은 농어촌 관련 정책을 통해 침체된 농어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조화된 낙후성 탓에 저하되고 있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공공자금을 투입해 왔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은 도시와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 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물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에서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정책이 농어촌의 여건 변화와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채 일률적 투자로 효율성·효과성 저하를 초래했고, 게다가 정책 목표가 주로 하드웨어 중심의 투입지표 위주로 설정되어 실제 농어촌 주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 살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도록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제공되어야 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항목 및 수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는 농어촌 정책의 보다 과학적·체계적 추진은 물론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하는 한편, 농어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정책의 전환에 대한 요구를 의미한다. 농어촌 정책의 변화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2010년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의 도입으로 결실을 맺었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 항목과 수준’을 의미한다. 농림수산물식품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2010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일부개정을 통해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을 제도화하였다. 현재 동 서비스기준은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의 8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제도 시행을 위해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동 기준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내용적으로 담게 되어 있는 ‘삶의 질 향상 계획’이 동 기준의 이행 촉진을 위해 어떻게 수립·추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부터,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기준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들의 기준 이행을 독려할 것인가의 문제, 제도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의 문제, 관련 제도와의 연계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만 동 기준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기 도입된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도출하고, 동 기준 운용의 기반이 되는 농어촌 통계기반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도입된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조건과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이들 핵심 조건을 만족시키고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방안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의 필수적인 기반이 되는 농어촌 통계기반의 구축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다섯 가지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째, 제2장에서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제도화 추진 경과와 현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관련 쟁점을 확인한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도입과 운용은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효율적·효과적 운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이들 쟁점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해 마련해야 할 방안을 한 가지씩 짚어보고자 한다.

둘째, 제3장에서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 현황을 공식 통계와 사례지역 심층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동 기준의 기준자료(baseline data)를 구축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구득 가능한 공식통계 분석과 사례지역 심층조사를 통해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항목별 기준자료를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이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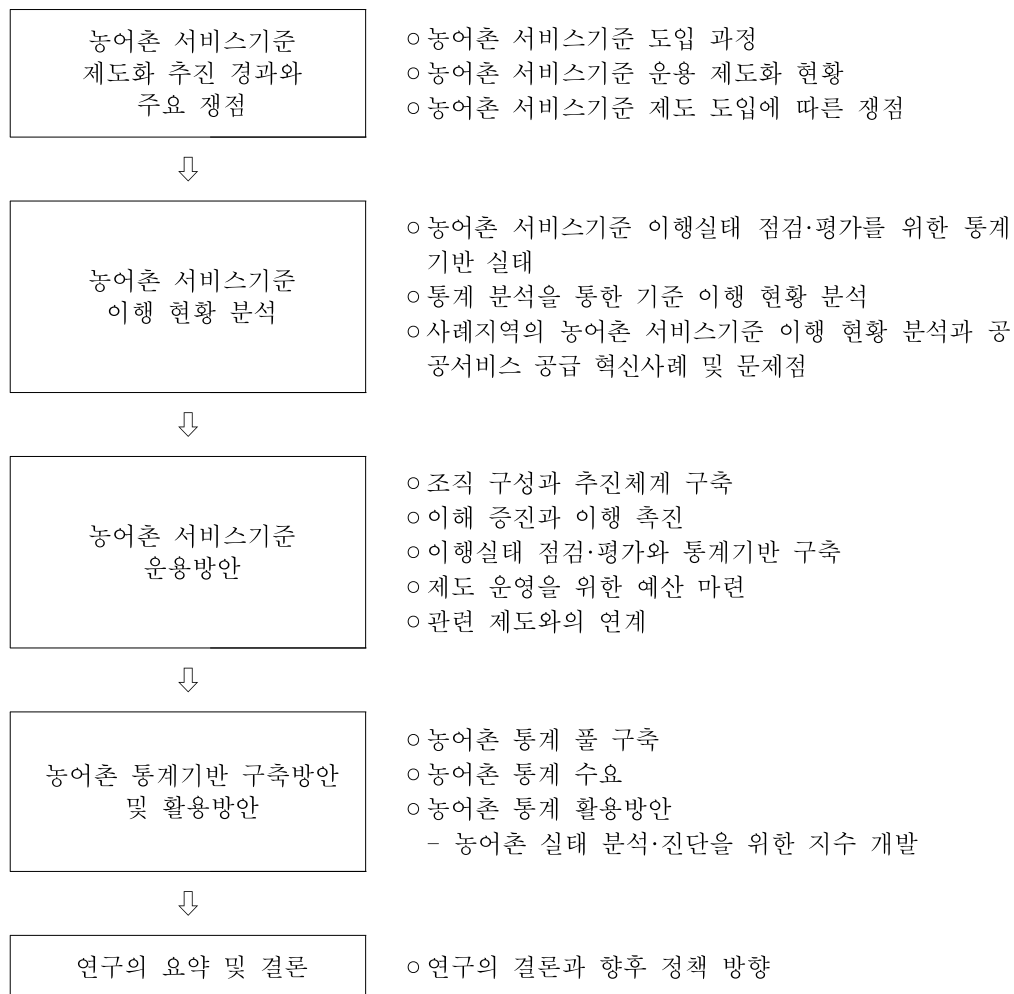
셋째, 제4장에서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앞서 제시하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쟁점과 사례지역 심층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동 기준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자체의 운용방안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와의 연계 방안 등도 포함될 것이다.

넷째, 제5장에서는 농어촌 통계기반의 구축방안 및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수준인 만큼 농어촌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또 동 기준은 농어촌의 변화에 따라 그 항목과 수준이 달라지기 마련이어서 주기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31개 항목과 관련된 통계 외에도 다양

한 측면에서 농어촌의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통계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농어촌 실태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지수(index) 개발을 제안할 것이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를 간략히 정리해 제시한다. 또 향후 연구에서 보완할 점이나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점들을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의 주요 내용 요약



제 2 장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화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

1.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개요

국내에서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관련 연구는 그간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김현호 외, 2008; 송미령·김광선, 2009; 송미령 외, 2007; 한표환 외, 2007).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이의 도입과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에 와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9년 한 해 동안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국내외 관련 논의와 사례들을 검토하는 한편, 통계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생활권 시·군의 공공서비스 공급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 국내 8개 시·군을 사례로 농어촌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와 수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8개 서비스 분야에서 30개 항목의 기준(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농어촌 서비스기준(안)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공론화 작업,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역시 다차원적으로 진행되었다. 100명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항목별 농어촌 서비스기준(안)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주민 및 공무원들의 여론 역시 수렴하였다. 특정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는 과정도 거쳤다. 또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도입에 관한 공론화를 위해 관련 부처 실무자 간 업무협의회, 지역별 공청회 및 국회 토론회 등을 추진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2009년 말 최종적으로 8개 분야 31개 농어촌 서비스기준(안)을 결정하였다(<표 2-1> 참조).

농어촌 서비스기준(안)을 선정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적용되었다. 첫째는 농어촌 주민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 항목 기준이다. 이는 국가적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측정 가능한 지표인가의 기준이다. 아무리 필수적인 기준일지라도 측정 가능하지 못하면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는 정책 목표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기준이다. 각 항목의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항목들로 다양한 방법의 검증을 거쳐 선정되었다.¹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공적 서비스의 항목과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국토 어디에 살든지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농어촌 주민들 역시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목표로서 설정한 최소 기준을 말한다. 동 기준을 구성하는 8개 서비스 분야는 인간의 사회적 삶의 최소 단위인 가정을 지탱하는 주거나 근린 지역사회 공동체로부터 시작하여, 지역 간 이동과 교류 및 서비스 공급을 촉진하는 교통, 그리고 이 외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서비스 분야로 확대된 것이다(송미령 외, 2009a). 이들 분야에 포함되는 31개 항목의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대한민국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오늘을 살아가는 농어촌 주민들이 농어촌의 상대적 낙후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최소한 제공받아야 할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수준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송미령 외, 2009b).

첫째,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농어촌의 현실과 특수성이라는 여건을 우선 감

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들 간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목표 수준이나 목표 항목이 조정되었다.

안하여 이의 개선과 증진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서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도입은 삶의 질이 낙후된 농어촌에 공공서비스 공급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초생활권 정책의 목표, 즉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의 질이 제공되는 발전정책 추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도·농 간 격차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셋째,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단순한 하드웨어 또는 투입지표 위주의 정책 목표가 아니라 농어촌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공급 방안의 마련을 촉구함으로써, 농어촌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전달체계의 구상과 실행을 요구하여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농어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질 수준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과 시행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다섯째,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운용은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명백한 정책 목표의 수립, 기준 설정과 이의 실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 마련, 소관 부처별 농어촌 관련 정책의 상호 조정 등 정책 과정의 선진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표 2-1. 농어촌 서비스기준 항목과 내용

부문 (항목수)	관련 항목	서비스 기준
주거(5)	주거가능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제고한다.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공동시설 프로그램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안전한 마실물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높인다. 지자체는 원수 수질검사와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오폐수 처리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높인다.
교통(3)	대중교통 운행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 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여객선 운항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인도 설치	읍·면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교육(6)	유치원/초·중학교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폐교 요건	폐교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과과목, 특기·적성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제고한다.
	교육발전 위원회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표 2-1. 농어촌 서비스기준 항목과 내용(계속)

부문 (항목수)	관련항목	서비스 기준
보건 의료(3)	1차 진료 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의 진료가 가능하다.
	순회방문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사회 복지(5)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다문화 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 불편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응급(5)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 분 이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도서·벽지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소방 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 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높인다.
	도난 방지	도난 방지 등을 위한 방법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 에 설치되어 있다.
	경찰 서비스	112 신고 시 90% 이상 10분 내에 현장에 도착한다.
문화 여가(3)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 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정보 통신(1)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80% 이상에 서 IPTV 시청이 가능하다.

2.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의 추진 경과

다양한 과정을 통해 최종 작성된 8개 분야 31개 항목의 농어촌 서비스기준(안)은 2009년 12월 삶의 질 향상 본위원회에서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안)’에 대한 국무총리 보고 시 함께 제출되었다. 당시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제정은 삶의 질 향상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도입할 2대 기본제도 중 하나로 제출되었으며, 동 기준의 운용을 위해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제도화 추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여 공표하였다(2010. 7. 23). 개정된 동 법은 농어촌 서비스기준에 대한 정의와 함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촌 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시행계획과 시·도계획, 그리고 시·군·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도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 농어업인 등의 복지 실태와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5년마다의 실태조사 시 조사 항목과 방법 등을 정할 때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음에 제시한 박스의 <참고: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농어촌 서비스기준 관련 주요 내용> 참조). 현재는 2011년 1월 24일 시행을 목표로 동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농어촌 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운용됨에 따라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같이 5년 주기로 제정·개정되고 운용될 예정이다. 또 기본계획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전문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계획이 담고 있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 역시 평가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동 법은 삶의 질 향상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통해 각급 지자체들이 모두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들 지자체 계획 역시 계획기간 종료 후 전문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추진실적을 평가받도록 되어 있어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 역시 함께 평가받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이행이 ‘삶의 질 향상 계획’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동 기준의 실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이들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정부로 하여금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기준의 이행실태 점검·평가 등을 위한 정부-민간 간의 협력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언급한 전문연구기관은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평가를 원칙적으로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²

<참고: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농어촌 서비스기준 관련 주요 내용>

- 제3조 제6호: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정의
 - 농어촌 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요구되는 공공 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의미
- 제5조 제1항 제10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범위)
 - 5년마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수립
- 제8조 제1·2항: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농어촌의 교육여건 및 교통·통신·환경·기초 생활여건 등 지역개발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조사해야 하며, 조사 항목·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제44조 제1항~제5항: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등
 -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음

² 물론 기준항목에 따라서는 관련 통계의 특성에 따라 매년 점검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③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함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⑤ 정부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음
- ⑥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결정

3.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의 주요 쟁점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2009년과 2010년 간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서 제정 및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당장 2011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많은 쟁점이 남아 있다. 현재 쟁점으로 남아 있는 이슈들을 정리하면 크게 ‘삶의 질 향상 계획’과 농어촌 서비스기준 간 관계 설정, 기준자료 구축과 이행실태 점검,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에 대한 평가와 평가 결과의 활용,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수범사례의 발굴과 보급, 관련 제도 및 정책과의 연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1. 삶의 질 향상 계획과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관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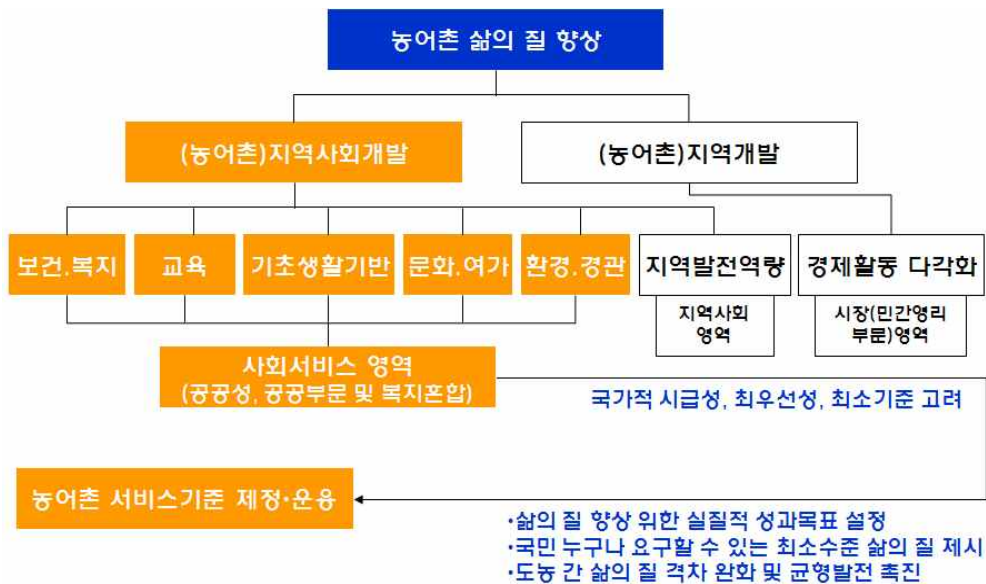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의 제도화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 및 기초지자체 모두 ‘삶의 질 향상 계획’을 통해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어촌 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계획’ 체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양자 간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양자 간 관계는 ‘삶의 질 향상 계획’의 내용 중 농어촌 서비스기준이 어떤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그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화를 통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접근은 지역사회개발과 지역개발의 관점이 혼합된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즉,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은 보건·복지, 교육, 기초생활기반, 문화·여가, 환경·경관 등 전통적으로 국가 등 공공영역에서 또는 최소한 복지 혼합에 의해 제공해온 삶의 질 요소와 지역사회 영역에서 제공하는 삶의 질 요소, 그리고 시장 영역에서 제공하는 삶의 질 요소로 구성된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농어촌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이들 다양한 요소 중에서 공공성이 강한, 그리고 국가 등 공공부문의 직접 공급 또는 복지혼합에 의한 공급과 강하게 연계된 사회서비스 영역의 세부항목을 의미한다. 특히 농어촌의 현 실태와 국가적 시급성, 최우선성, 최소 기준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으로서 국토 내 어디에 살든지 누구나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이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삶의 질 향상 정책의 가장 핵심적 정책 목표로서 기능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지표의 실질적 변화를 촉구하는 수단으로서도 기능한다. 이제까지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목표는 농어촌 주민들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느낄 수 있도록 설정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왔는데, 이에 비해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경우 그 성과목표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농어촌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성과목표의 달성 대상이 읍지역인지 또는 면지역인지, 아니면 시·군단위 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달성할 목표 역시 보급률, 빈도, 접근성, 대응 시간 등으로 보다 실질화하고 있다.

그림 2-1. 삶의 질 향상계획의 구성과 농어촌 서비스기준 간 관계



그러나 이와 같이 ‘삶의 질 향상 계획’과 농어촌 서비스기준 간 관계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남게 된다. 과연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삶의 질 향상 계획’이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성과목표로서 어느 정도나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0~14)’의 133개 세부추진과제의 내용 및 성과목표를 분석한 결과 <표 2-2>와 같이 다양한 항목에 농어촌 서비스기준이 반영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서비스기준 31개 항목이 모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내용적으로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정책목표 또는 지표로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표 2-2.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내 농어촌 서비스기준 반영 현황

관리 번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농어촌 서비스기준
3-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을 '14년까지 75%로 제고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자연마을 중 30호 이상 마을은 간이(마을)상수도를 설치하되, 지자체에서 관련 기준에 따라 수질관리 - 면단위 지역 생활용수의 안정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높인다. 지자체는 원수 수질검사와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3-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비용 지원, 순환버스 운행 지원 또는 수요 대응형 교통수단 제공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단 강구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 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3-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보 왕래가 많은 농어촌도로 및 지방도 등을 정비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유도 	읍·면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민에 한해 여객선 운임의 20%를 지원하되, 본인 부담액이 5천 원 이하가 되도록 지원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6-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까지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71% 수준으로 제고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높인다.
2-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단위 농어촌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여 교육품질 제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2-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2-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 중) 학업성취도 향상 및 도농간 학력·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 후에 다양한 교육·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과과목, 특기·적성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제고한다.
2-1-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협의를 위해 시·군단위에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표 2-2.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내 농어촌 서비스기준 반영 현황(계속)

관리 번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농어촌 서비스기준
1-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20개소씩 확충 - 아동 수가 적지만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 농어촌 보육시설에 영아(0~2세)반 설치를 위한 지원 확대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1-3-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접근성이 낮은 다문화가족 대상,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한국어 및 아동양육) 제공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 불편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이송 취약지역(이송시간 30분 이상 소요)에 119 구급지원센터(구급대원 최소 2명 이상, 구급차 1대)를 단계적으로 설치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1-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도·오지지역은 헬기·선박 이용 응급환자이송체계 구축 지원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5-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지역(읍·면단위) 공공도서관을 '13년까지 총 260관으로 확대(현재 243관)하여 도·농 간 정보인프라 격차 완화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5-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유희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 조성('13년까지 153개소 조성) 	
5-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지역 문예회관을 거점으로 국립극단 등 국립예술단체('09년 11개 단체 참여)의 우수 프로그램 순회활동 강화 - 우수 민간예술단체를 선정, 농어촌에 파견 또는 순회공연 등을 통해 우수 공연·전시프로그램 관람 기회 제공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5-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 확대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3-3-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어디에서나 IPTV 시청이 가능하도록 광대역 통합망 구축 '10년 실태조사를 거쳐 '14년까지 80% 구축('15년까지 구축 완료)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80% 이상에서 IPTV 시청이 가능하다.

3.2. 기준자료 구축과 이행실태 점검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가 도입되고 31개 항목의 기준을 설정하였지만, 각 항목별로 현 실태가 어떠한지 관련 데이터가 아직 구축된 바가 없다. 현 실태에 대한 데이터는 이른바 기준자료(baseline data)라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monitoring)하기 위한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당장 2011년부터 동 제도의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원칙적으로 매년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해야 하는데, 기준자료가 작성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행실태 점검이 쉽지 않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기준자료 작성을 위해서는 관련된 공식 통계를 수집해야 한다. 이때 수집한 통계가 만족시켜야 할 조건으로는 첫째, 해당 통계가 담고 있는 내용이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해당 통계의 최소 공표단위가 농어촌 서비스기준이 달성되어야 할 공간단위와 일치해야 한다. 현재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항목별 공간단위는 마을(행정리), 읍·면, 시·군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다. 셋째, 통계의 공표주기가 원칙적으로 1년이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동 기준의 이행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10월경에 발표할 계획이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31개 항목이지만 이는 다시 44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자료 작성 및 이행점검을 위해서는 51가지 통계가 필요하다. 상기 세 가지 기준자료 작성의 조건에 따라 관련 통계들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매년 기준자료 작성을 위해 구축할 수 있는 통계는 51개 중 11개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5년마다 구축할 수 있는 통계 2개를 합해도 1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머지 39개 통계는 공식통계 및 간행물로는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식 공표통계로 구축하지 못하는 통계는 관련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들 부처 및 공공기관에는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통계청, 산림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이 포함된다. 또 이들 부처

및 공공기관의 협조로도 구축이 불가능한 통계는 각 지자체의 행정조사를 통해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기준자료 작성과 매년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이들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는가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한편 이러한 기준자료 작성과 이행실태 점검을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현재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무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사무국(실무위원회)에서 담당하지만 동 사무국의 인력(2명)으로는 농어촌 서비스기준과 관련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실정이다. 더군다나 여기서 의미하는 추가적인 업무란 농어촌 서비스기준과 관련한 기준자료 작성 및 이행실태 점검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농어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농어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농어촌 통계기반의 구축과 운용,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평가, 관련 정책의 발굴 등 다양한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무를 담당할 조직의 강화를 필요로 한다. 또 관련 조직의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3. 기준 달성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 활용방안

농어촌 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해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 기준 역시 원칙적으로 5년을 주기로 개정될 예정이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5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년 실시되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31개 항목별 이행실태 점검(**monitoring**)과는 다른, 종합적인 평가(**evaluation**)가 가능하도록 평가시스템이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0~14) 종료 이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평가 역시 이행실태의 점검과 마찬가지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에 대한 평가방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평가 결과

의 활용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우선 평가 결과를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의 기간(2015~19) 동안 운용될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개정하는데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넓게는 동 기준이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정책 추진의 시급성, 최우선성, 최소 기준성 등의 성격을 지닌 만큼 동 기준의 운용 결과를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전반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역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4. 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마련

농어촌 서비스기준이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적 최소 기준으로서 정책적으로 개선이 시급하고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지만, 농어촌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지방에서는 지자체의 주요 정책으로서 외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사업과는 달리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은 대부분 별도의 추가 지원 없이 지자체의 자구적 노력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시·군·구 지자체가 삶의 질 향상 시·군·구계획 수립과 시행 시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히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어 동 기준의 이행 촉진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러한 이유로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 예산 지원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행실태 점검이나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와 더불어 동 기준의 이행이나 달성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나 관계 부처의 예산 배정 시 불이익을 주는 페널티 제도의 도입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 방법이 무엇이든 향후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이행 촉진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5. 제도 운영을 위한 중앙-지방의 조직체계 구축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정부의 특정 부처만이 노력해서 달성될 목표는 결코 아니다. 앞서 언급했던 10여 개 부처·청 등이 동 기준의 제정부터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와 환류 등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함께 협력·조정하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지자체 수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삶의 질 향상 정책이 종합적인 지역정책인 만큼 다양한 실·과·소 및 관련 주체들 간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상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이 관련 정책의 실무를 맡고 있다. 또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2010년 7월 개정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시·도 위원회와 시·군·구 위원회를 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는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련 사항의 심의, 점검 및 평가 등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실상 중앙정부 차원의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및 사무국의 실질적인 권한이 크지 않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시·도 위원회와 시·군·구 위원회는 이체막 관련 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그 운영 기반이 미약한 실정이다.

각 정부 수준에서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그 임무의 특성 상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이행과 이에 대한 점검·평가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해 현재 실질적 권한이 미약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및 사무국과 지자체의 위원회 및 관련 조직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의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급 위원회 및 사무국 자체의 구성원 확충, 하위 실무조직의 강화, 연계조직의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로 이어지는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 정부-민간-제3섹터 등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역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주체들 간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3.6. 수범사례 발굴 및 보급 방안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마다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듯이 농어촌 역시 지역마다 다른 실태와 특성을 보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국가적 최소 기준으로서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제정하였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농어촌 시·군마다 다양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달성을 위해 지역마다 공공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주체들 간 협력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창출이 필요한 것도 이러한 연유에 근거한다.

지역 현장에서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달성하는 공통된 방법이 없는 만큼, 지자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수범사례(best practice)의 발굴과 보급이 중요하다. 농어촌에서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들을 광범위하게 발굴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보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수범사례에 대한 조사 범위, 조사 방법, 서비스 공급 사례의 효과성·효율성·혁신성 등에 대한 분석 방법, 보급 방법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3.7. 관련 제도 및 정책과의 연계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삶의 질 향상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2대 기본제도 중 하나로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국민이 국토 어디에 살든지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최소한의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한다는 정책목표를 지니고 있어,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된 정책 및 제도와의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가 기존의

부문정책이나 공간정책과는 달리, 국민 특히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 기반을 개선하는 데 정책적 목표를 두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어촌 서비스기준과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 및 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첫째는 동 기준의 운용 제도를 담고 있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이다.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향후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추진에 있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권 정책이다. 기초생활권 정책은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의 질이 제공되는 발전정책’의 의미를 담고 있어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와 동일한 정책목표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초생활권 정책은 기초생활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소규모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창출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명시하고 있어,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와 정책목표를 상당히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정책 및 제도를 향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시켜 추진 또는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농어촌 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제도이다. 동 제도는 정부 정책이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는 것으로, 2009년 말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삶의 질 향상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2대 기본제도의 하나로 농어촌 서비스기준과 함께 제안되었다. 동 제도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와 마찬가지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지니고 있어 두 제도가 연계 추진될 시 정책적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두 제도를 연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 3 장

농어촌 서비스기준 기준자료 구축과 이행실태 분석

1. 기준자료 구축 및 이행실태 분석 개요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지역에 공급해야 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정책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동 기준의 운용을 위해서는 목표 대비 현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의 분야·항목별 변화를 점검해야 한다. 전자는 이른 바 기준자료(baseline data)의 구축을, 후자는 기준자료 대비 매년 실시되어야 할 이행실태의 점검을 의미한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기준자료 구축과 주기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 또는 공표되는 통계의 주기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계로는 대표적으로 정부의 공식 공표통계가 해당한다. 그러나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각 항목은 정부 공식 공표통계만으로는 그 기준자료 구축과 이행실태 점검을 완수할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따라서 대안적 방법으로 정부의 부처·청 및 관련 공공기관의 조사자료,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거나 지자체의 행정조사에 의한 조사·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1개 농어촌 서비스기준 항목의 기준자료 구축을 위해 활용

할 수 있는 정부의 공식 공표통계를 조사하여 목록화하였다. 또 대안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조사·통계자료 등을 조사하여 기준자료 구축을 위한 통계자료 목록을 보완하는 데 활용하였다. 이후 작성된 통계목록을 바탕으로 실제 조사·통계자료들을 수집하여 163개 시·군(군, 도농복합시, 일반시)에 대한 항목별 기준자료를 구축하였다. 다만, 구득 가능한 통계의 한계 상 31개 기준 항목 모두에 대한 기준자료를 구축할 수는 없었다. 또 일부 기준 항목에 대해서는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기준자료를 구축했지만, 이 역시 163개 시·군 모두에 대한 기준자료를 구축할 수는 없었다.

기준자료 구축의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경북 김천시, 충남 예산군, 전남 장흥군의 3개 시·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공공서비스의 공급실태를 분석하고, 농어촌 서비스기준 31개 항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보았다. 사례지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앞서 언급한 163개 시·군에 대한 기준자료 구축 방법과는 달리, 구체적인 통계수치의 구축보다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 정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2. 농어촌 서비스기준 기준자료 구축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크게 8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항목의 내용을 보면 한 개 이상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록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부 항목은 1~2개의 세부 기준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 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항목은 ‘자동차로 30분 내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 접근’과 ‘교통 불편 지역의 경우 방문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부 항목의 기준자료를 모두 구축하기 위해서는 총 51개의 통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1> 참조). 그러나 농어

촌 서비스기준의 기준자료 구축과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현재 주어진 공식통계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수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2.1. 기준자료 구축을 위한 통계 현황

2.1.1. 공식 발표 통계 현황

□ 현재 이용이 가능한 통계

현재 공표되고 있는 통계 또는 간행물을 이용하여 각 지자체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① 주거부문의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과 상·하수도 보급률, ② 교통부문의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정류장에서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가능 마을, ③ 보건·의료부문의 시·군 내 1차 진료 병의원 현황과 자동차로 20분 내에 의약품 구입 가능 여부, ④ 사회복지부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현황, 청소년센터(청소년활동 진흥 시설) 현황, 지역아동센터 현황, 영유아 현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⑤ 문화·여가부문의 도서관 현황, 문화시설 현황 등이다.

이러한 통계들은 대부분 현재 공표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통계의 경우 조사 및 공표 주기가 5년으로서, 향후 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매년 이루어질 상황에서는, 매년 최신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거부문의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은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통해 2년에 한 번씩 시·도 단위까지 발표하며, 5년에 한 번은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시·군 단위까지 발표되고 있어 조사의 주기나 공간 단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인구주택총조사나 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 데이터를 활용하는 통계 역시 공표 주기의 보완이 필요하다.

□ 보완이 필요한 통계

현재 공표는 되고 있으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파악에 사용하기 힘든 통계에는 ① 주거부문의 도시가스 보급률, ② 교육부문의 평생교육시설 현황, ③ 사회복지부문의 영유아보육시설 현황, ④ 문화·여가부문의 문예회관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공연 현황, ⑥ 정보통신분야의 초고속망 구축률 등이 있다. 이러한 통계들이 활용되기 힘든 이유는 읍·면 단위까지 통계가 필요하지만 시·군 단위까지만 공표한다거나, 또는 시·군 단위까지 필요하지만 시·도 등의 단위까지만 공표하는 등 공표 공간 단위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부문의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은 보육통계를 통해 시·군·구별로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읍·면 단위로는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에 활용하기는 힘들다. 반면 지자체 통계연보에서는 읍·면별로 공표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집계한다면 비교적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읍·면별 보육통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1.2. 공표되지 않는 통계 현황

□ 중앙정부 부처의 내부자료 및 신규조사 협조

현재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지만 부처의 내부자료를 통해 통계 데이터 구축이 가능하거나, 또는 부처를 통하여 신규 조사를 해야 하는 항목에는 ① <지식경제부·산림청> 주거부문의 신재생에너지(목재펠릿보일러, 태양광·태양열·지열) 보일러 보급 노력, ②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교통부문의 여객선 운항 현황, ③ <교육과학기술부·시·도 교육청> 교육부문의 통폐합학교 통학수단 제공 현황, 우수고 및 기숙형 고교 선정 현황, 폐교 시 지역주민 의련 수렴 현황, 읍·면·동별 방과후학교 참여율 현황, 기초지자체 교육발전위원회 현황, 사회복지부문의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④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응급부문의 소방서비스 현장 도착시간 현황, 구급차 현장 도착시간 현황,

119지원센터 구축현황, 낙도·벽지 환자 이송체계 구축 현황, ⑤ <경찰청·해양경찰청> 응급부문의 농어촌 주요 간선도로 및 마을 주요 진입로 CCTV설치 현황, 경찰서비스 현장 도착시간 현황, 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부문의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현황,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사업 현황, ⑦ <지식경제부>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여객선 운항과 관련하여 모든 도서지역과 본도가 1일 1회 이상 왕복선이 운행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단순 항로 목록이 아니라, 각 항로의 1일 운행 내역이 파악되어야 한다. 이는 각 운항사의 사업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항로 및 일정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와 지방해양항만청의 협조를 통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방방재청이나 경찰청의 경우 응급, 화재 신고 후 현장 도착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는 대부분 공표되지 않는다. 확보 가능한 내부자료 역시 시·도 단위나 사업소 단위로 공표되어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부처의 협조를 통하여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지자체 내부자료 또는 행정조사 협조

현재 서비스기준의 세부 기준 중 통계 자체가 없는 항목은 대부분 지자체의 행정조사를 통한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한 항목에는 ① 주거부문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운영비 및 상설프로그램 지원 여부, ② 교통부문의 준공공 교통 프로그램 운영 여부, 주요 생활도로 정비시 인도 구분 현황, ③ 보건·의료부문의 마을순회방문사업 현황, ④ 사회복지부문의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및 각종 재가서비스 수혜자 현황, ⑤ 문화·여가부문의 도서 대출/반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대안시스템 도입 여부, 지자체의 자체적인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현황 등이 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행정안전부를 통하여 각 지자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표 3-1.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현황

8개 부문	서비스 기준	세부 기준	통계 확충 범위	구득 가능 통계	통계 보완 범위			비고
					부처 협조		지자체 협조	
					공간 단위 수정	내부자료 및 신규조사	행정조사	
주거	5	8	9	3	1	2	2	1*
교통	3	5	5	1	0	1	2	1*
교육	6	6	6	0	1	5	0	-
보건·의료	3	3	3	2	0	0	1	-
사회복지	5	6	11	5	1	1	4	-
응급	5	8	8	0	0	8	0	-
문화·여가	3	6	7	2	1	2	2	-
정보통신	1	2	2	0	1	1	0	-
계	31개 기준	44	51	13	5	20	11	2

주: *는 법률에 의한 의무로서 이미 달성한 것으로 간주한 항목을 의미함.

2.2. 시·군 농어촌 서비스기준 기준자료 구축과 이행실태

2.2.1. 기준자료 구축의 개요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기준자료 구축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부의 공식통계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 협조와 지자체의 행정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공식통계로는 구축하기 어려운 통계를 구득하여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항목별 기준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농림수산물부를 통해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기준자료 구축을 위한 통계자료 조사를 실시하

였다. 본 통계자료 조사는 <부록 3>과 같이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율’과 ‘초고속망 접속 및 IPTV 시청’에 대한 기준항목을 제외한 29개 기준항목을 대상으로 관련 통계를 조사하였다.³

조사 결과와 기존의 정부 공식통계를 동시에 활용하여 농어촌 서비스기준에 대한 기준자료를 <표 3-2>와 같이 구축하였다.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를 구했지만, 관련 통계 구축에 한계가 있어 정보통신 분야를 제외한 7개 서비스 분야의 19개 기준항목 및 22개 세부 항목에 대한 기준자료만을 작성할 수 있었다. 또한 <표 3-2>의 음영 처리된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작성한 기준자료는 조사에 협조한 147개 시·군 또는 이 중에 해당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124개 농어촌 시·군에 대해서만 작성할 수 있었으며, 그나마 세부 기준항목에 따라 누락된 응답이나 유효하지 못한 응답이 많았다.⁴

기준자료의 기준연도는 가능한 최근의 통계의 해당 연도를 의미한다.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수 비율’과 ‘도보로 15분 내 접근 가능한 버스정류소에서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가능’ 기준에 대한 통계는 5년마다 공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자료를 활용했으므로 2005년이 기준연도이며,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구축한 기준자료는 모두 2010년이 기준연도이다. 이 외의 기준자료는 관련 통계에 따라 2008~2010년이 기준연도가 된다.

³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에 대한 조사는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데, 2005년 첫 조사 이후 2010년 기준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초고속망 접속 및 IPTV 시청에 대한 통계는 부처협조를 통해 구축하였으나 바로 활용하기 곤란하였다.

⁴ 147개 시·군은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 중 지자체 행정조사에 응하지 않은 충청남도의 16개 시·군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충청남도는 7개의 도농복합시와 9개의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 농어촌 서비스기준 항목별 기준자료 구축 내역

부문	기준항목	세부 기준항목	기준 목표	기준 연도	조사 시·군
주거	주거 가능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수비율	시·군별 90% 이상	2005	163개 시·군
	신재생에너지 보일러보급	해당 여부	해당 여부	2010	163개 시·군
	공동시설 프로그램	운영비/프로그램지원	지원 대상 행정리 비중	2010	124개 시·군
	안전한 마실 물	면지역 상수도보급률	면지역 75% 이상	2008	140개 시·군 (163)
	오폐수 처리	하수도보급률	시·군별 71% 이상	2008	163개 시·군
교통	대중교통	도보 15분 내 대중교통 이용 여건	3회 이상 행정리 비중	2005	140개 시·군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시·군별 유무	2010	147개 시·군
	인도 설치	읍·면소재지 접근로 인도설치	시·군별 인도 설치 비중	2010	124개 시·군
교육	고등학교	우수/기숙형고교	시·군별 1개교 이상	2010	163개 시·군
	교육발전 위원회	교육발전위원회	유무	2010	147개 시·군
	평생교육	읍·면별 거점시설 1개 이상	유무	2009	140개 시·군(163)
보건 의료	1차 진료	중요과목 의사 진료	시·군별 중요과목 분포	2008	163개 시·군
	순회방문	순회방문	월1회 이상 행정리 비중	2010	124개 시·군
	의약품 구입	읍·면 단위 의약품 구입 가능	구입 가능 읍·면 비중	2008	140개 시·군(163)

표 3-2. 농어촌 서비스기준 항목별 기준자료 구축 내역(계속)

부문	기준항목	세부 기준항목	기준 목표	기준 연도	조사 시·군
사회복지	청소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시·군별 설치 여부	2008	163개 시·군
	아동	지역아동정보센터	1개 이상 설치 읍·면 비중	2010	140개 시·군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군별 설치 여부	2010	163개 시·군
		방문서비스 여부	시·군별 시행 여부	2010	163개 시·군
응급	도난 방지	마을별 방법용CCTV	설치 행정리 비율%	2010	124개 시·군
문화여가	독서	공공 및 작은도서관	읍·면별 1개 이상(%)	2009	140개 시·군 (163)
	문화시설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시·군별 설치 여부	2008	163개 시·군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시·군별 월1회 이상	2010	163개 시·군

주: 음영 처리된 세부 기준항목은 지자체의 행정조사를 통해 관련 통계를 구득하였으며, 다른 항목의 통계는 정부 공식통계와 관계 부처 협조를 통해 구득하였음. ‘조사 시·군’ 중 ‘163개 시·군’은 86개 군, 54개 도농복합시, 23개 일반시를 의미하며, ‘140개 시·군’은 일반시를 제외한 지역을, 그리고 ‘147개 시·군’은 지자체 행정조사에 응한 77개 군과 47개 도농복합시, 그리고 23개 일반시를 의미. 124개 시·군은 앞의 147개 시·군 중 일반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의미. ‘(163)’은 해당 기준이 읍·면 단위로 설정되었지만 농어촌 지역과의 비교를 위해 일반시(동지역)의 이행실태를 함께 점검한 경우임.

2.2.2. 기준 이행실태

□ 주거 서비스 부문 이행실태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율을 90% 이상으로 제고한다.

163개 시·군의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율은 평균 78.1%이며⁵,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96.1%, 가장 낮은 지역은 34.6%로 나타났다. 이미 기준 목표를 달성한 지역은 33곳(20.2%)이다. 일반시의 경우는 동 기준을 이미 달성한 지역 비율이 73.9%(17개 시)에 이르는 반면 도농복합시는 29.6%(16개 시)에 그치고 있으며, 군지역은 동 기준에 모두 못 미치고 있다.

표 3-3.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율 기준 이행실태

지역구분	최대	최소	평균	기준 달성 시·군	
				시·군 수	비중
군지역	87.6%	34.6%	71.1%	0/86	0.0%
도농복합시	95.2%	61.9%	83.8%	16/54	29.6%
일반시	96.1%	75.3%	91.3%	17/23	73.9%
전체 시·군	96.1%	34.6%	78.1%	33/163	20.2%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시·군별로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한 통계를 구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군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 추진 실태만을 조사·분석하였

⁵ 여기서 ‘평균’이란 개별 시·군의 비율(%)을 단순히 더하고 이를 시·군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하다.

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의 추진’을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과 ‘그린홈 100만호’ 사업 지원 대상 가구에 한정하여, 전체 가구에 대한 비중을 분석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전혀 추진하지 않는 곳은 163개 시·군 중 기장군, 달성군, 울주군 세 곳으로 나타났다. 모두 광역시에 포함된 군지역이다. 그러나 전체 가구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은 상위 30%(49위)에는 군지역이 42곳, 도농복합시가 6곳, 그리고 일반시는 단 1곳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전형적인 농어촌 군지역일수록 해당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하동군)도 그 비중이 2.73%에 그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도농복합시의 경우 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구의 비중이 높지는 않다. 농어촌의 경우 인구의 분산분포로 도시가스 보급이 어렵다는 점이 잘 알려진 사실인 만큼, 향후 농어촌 가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난방비 저감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표 3-4.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태: 지역별 상·중·하위 분포

지역구분	상위30%	중위40%	하위30%	계
군지역	42개 군	36개 군	8개 군	86개 군
	48.8%	41.9%	9.3%	100.0%
도농복합시	6개 시	26개 시	22개 시	54개 시
	11.1%	48.1%	40.7%	100.0%
일반시	1개 시	3개 시	19개 시	23개 시
	4.3%	13.0%	82.6%	100.0%
전체 시·군	49개 시	65개 시	49개 시	163개 시
	30.1%	39.9%	30.1%	100.0%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해당 기준항목은 행정리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23개 일반시를 제외한 140개 군과 도농복합시만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 유지관리비 지원과 프로그램비 지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지원 여부를 물었다. 조사에 응한 124개 농어촌 시·군 중 유효응답을 제시한 곳은 15개 군과 3개 도농복합시에 불과하다. 이 중 괴산군, 증평군, 의령군, 함양군의 4개 지역은 전체 마을에서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은군, 고창군, 청원군은 90% 이상의 마을에서 지원을, 그리고 부안군과 진천군에서는 80% 이상의 마을에서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었다. 순창군과 충주시는 60% 이상의 마을에서, 그리고 남양주시와 완주군의 경우는 50% 이상의 마을이 해당 지원을 받고 있다. 나머지 5개 시·군은 해당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의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유효응답을 제시한 18개 시·군의 경우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는 마을의 비중은 평균 60.9%이다.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높인다. 지자체는 원수 수질 검사와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농어촌 140개 시·군의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평균 45.6% 정도에 머물고 있다. 도농복합시가 군지역에 비해 해당 보급률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다. 기준목표인 75% 보급률을 이미 달성하고 있는 지역은 8개 군과 10개 도농복합시에 불과한 실정이다. 참고로 일반시(동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98.9%에 이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조사의 한계 상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곳의 먹는 물을 지자체에서 원수 수질검사와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준자료 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자체의 수질관리는 관련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각 지자체가 상수도 외에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표 3-5.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기준 이행실태

지역구분	최대	최소	평균	기준 달성 시·군	
				시·군 수	비중
군지역	96.6%	7.4%	41.8%	8/86	9.3%
도농복합시	100.0%	6.5%	51.7%	10/54	18.5%
농어촌 시·군	100.0%	6.5%	45.6%	18/140	12.9%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높인다.

하수도 보급률의 경우 일반시는 평균 84.8%에 이르는 반면 군과 도농복합시는 각각 45.5%와 75.6%에 머물고 있다. 특히 청송군, 봉화군, 울릉군, 영월군, 영양군, 군위군은 하수도 보급률이 10%를 밑돌고 있을 정도로 하수처리를 위한 기반이 취약하다.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이라는 기준목표를 23개 일반시는 모두 이미 달성하고 있고, 도농복합시는 54개 시 중 36개 시(66.7%)가 이미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군지역은 86개 군 중 해당 기준목표를 기 달성한 곳이 8개 군(9.3%)에 그치고 있다.

표 3-6. 하수도 보급률 기준 이행실태

지역구분	기준 달성 시·군	
	시·군 수	비중
군	8/86	9.3%
도농복합시	36/54	66.7%
일반시	23/23	100.0%
전체 시·군	67/163	41.1%

□ 교통 서비스 부문 이행실태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 대응형 준공공 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140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도보 15분 거리 정류장에서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을(행정리)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 전체 마을 중 81.7%가 이 기준목표를 만족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마을이 동 기준목표를 이미 만족시키고 있는 곳은 창원시 한 곳뿐이다. 도농복합시의 경우 현재는 14.8% 정도의 마을이 동 기준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군지역의 경우는 20.5%의 마을이 그러한 상황이다.

표 3-7. 대중교통 1일 3회 이상 이용 가능 기준 이행실태

지역구분	최대	최소	평균
군	98.5%	17.3%	79.5%
도농복합시	100.0%	34.2%	85.2%
농어촌 시·군	100.0%	17.3%	81.7%

한편, 수요 대응형 준공공 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147개 행정조사 대상 시·군 중 53개 군, 36개 도농복합시, 19개 일반시 등 총 108개 지역에서만 유효응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해당 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비중은 군지역은 49.1%, 도농복합시는 30.6%로 나타났으며, 일반시는 5.3%(1곳)로 나타나 농어촌일수록 불리한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다 절실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효응답을 제시한 108개 지역 중 수요 대응형 준공공 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지역의 비중은 35.2%이며, 농어촌 시·군(89개 시·군)에서의 동 비중은 41.6%로 나타났다.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동 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배후마을에서 읍·면 소재지로 접근하는 도로의 수를 조사하고, 이들 도로 중 소재지의 시가지 밖에 일부라도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비중을 조사하였다. 행정조사에 응한 124개 시·군 중 유효응답을 제시한 곳은 52개 군, 28개 도농복합시이다. 이들 80개 지역의 읍·면 소재지 접근로 인도확보율은 17.4%에 그치고 있으며 군지역은 동 비율이 13.3%, 도농복합시는 25.1%로 나타나고 있다. 80개 시·군 중 원주시, 김천시, 울릉군, 칠곡군, 춘천시, 안성시 등 6곳만이 인도 설치율이 50%를 넘고 있는 반면, 절반이 넘는 42곳은 비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농어촌 시·군의 읍·면 소재지 접근로 인도 설치율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 교육 서비스 부문 이행실태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농어촌의 불리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 학생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旧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부터 ‘농어촌 우수고교’를 육성해 왔다. 이는 현재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실질적 교육력 제고를 위한 ‘기숙형 고교 육성’ 사업으로 발전하였으며, 정부는 2011년까지 150개의 기숙형 고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150개 고등학교에 대한 선정은 종결된 상태이다. 선정된 150개 고등학교의 분포를 보면 군지역은 86개 지역 중 세 곳을 제외한 83개 지역(96.5%)에 기숙형 고교가 선정된 상태이다. 도농복합시는 37개 지역(68.5%)에만 선정되어 우수고교 설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시의 경우는

본 지원제도의 취지가 농어촌에 우수고교를 육성하는 것이므로 단 1곳에만 기숙형 고등학교가 선정된 상태이다. 140개 농어촌 시·군 중 기숙형 고등학교 선정 지역 비중은 85.7%(120개 시·군)이다.

전반적으로 농어촌 시·군 중 기숙형 고교가 선정되지 못한 곳이 20개 지역에 이르고 있다. 반면 2개교 이상이 기숙형 고교로 선정된 농어촌 시·군 역시 25곳에 이른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공식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언급하고 있듯이, 도농복합시는 해당 읍·면부의 경우 군지역과 교육여건이 다를 바 없이 열악하다. 기숙형 고교에 대한 선정은 종료되었지만 향후 앞서 언급한 25개 농어촌 시·군이나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표 3-8. 시·군별 1개 이상 우수고교 육성 기준 이행실태

지역구분	우수고 미설치 시·군	1개교 이상 우수고 설치 시·군 수	
군지역	3	83	96.5%
도농복합시	17	37	68.5%
일반시	22	1	4.3%
전체 시·군	42	121	74.2%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최근 지역여건에 맞는 교육시책 추진과 교육발전기금 설치, 프로그램 운영 등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이슈들을 논의·협의하는 위원회 및 협의회 등을 설치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이는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등에서 해당 협의회 설치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원회·협의회 등의 설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조사에 응한 147개 시·군 중 99개 지역에서 유효응답을 제시하였다.

해당 99개 지역 중 교육발전위원회 및 협의회 등을 설치한 시·군의 비율은 절반을 조금 넘는 57개 시·군(57.6%)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64.8%로 나타났고 도농복합시는 50.0%, 일반시는 47.1%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의 동 설치비율은 59.8%이다. 농어촌 지역일수록 동 위원회·협회의 설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위원회·협의회 등이 모든 농어촌 시·군에 확대·설치될 필요가 있다.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현행 제도에 의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기관은 준형식 평생교육기관과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공민학교, 공민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 중등학교,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내대학, 특수대학원 등 공식 교육기관이 맡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의미한다. 반면 후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대학(원) 부설, 사업장 부설, 시민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기관, 원격형태 및 지식·인력개발 형태의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관, 학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읍·면별로 존재하는 평생교육기관은 대부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기준항목의 기준자료 구축과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통계를 활용했다. 단, 통계의 미비로 학원과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평생교육기관은 제외하였다.⁶ 학원과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평생교육기관을 제외하고 2009년 기준

⁶ 현재 평생교육통계자료집에는 이 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집계가 누락되어 있다.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적어도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통계가 정확히 집계될 필요가 있다.

으로 전국에는 2,807개소의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이 분포하고 있다.

분석 결과 농어촌 시·군마다 전체 읍·면 수 대비 1개 이상의 평생교육기관을 갖춘 읍·면의 평균비중이 1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군 지역의 동 평균비중이 17.1%에 그쳤으며, 도농복합시는 24.3%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이 설치된 읍·면 비중이 가장 높은 도농복합시는 용인시(85.7%)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군 지역은 인제군(66.7%)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일반시의 경우 전체 동 수 대비 1개 이상의 평생교육기관(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이 설치된 동의 비중은 36.2%이다.

□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 이행실태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능하다.

동 기준은 주민이 거주하는 시·군 관내에서 주요 1차 진료 과목에 대한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달성 목표이다. 우리나라 의사 중 전문의 비중은 2008년 기준 71%로, 이들 대부분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과목별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 경우 병의원급 의료기관 부족과 전문의 부족으로 1차 진료 서비스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 공중보건의 감소 역시 보건·의료 서비스의 여건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표 3-9. 시·군별 1차 진료 병의원 분포

단위: 개소

지역구분	일반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의원
군지역	23.8	9.1	8.1	0.1
도농복합시	114.4	45.2	51.6	1.5
일반시	217.8	82.3	108.9	3.1
전체 시·군	81.2	31.4	36.7	1.0

병의원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일반병의원(일반병원, 일반의원), 한방병의원(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의원(차과병원, 치과의원),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의원의 4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조사 결과 시·군별 병의원의 평균 분포 수에 있어 도농복합시는 일반시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군지역은 상대적으로 1차 진료 서비스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군지역의 경우 일반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이 일반시에 비해 1/10 정도만 분포하고 있으며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의원은 1/5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 시·군별로 상기 4개 주요 의료과목 병의원이 설치된 지역의 비율은 일반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이 각각 99.3%, 방사선병리검사의원이 32.1%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반시는 방사선병리검사의원을 설치한 지역의 비율이 69.6%이고 다른 3개 진료과목 병의원의 설치비율은 모두 100%이다.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의 순회방문을 받는다.⁷

동 기준은 행정리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23개 일반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지자체 행정조사에 응한 124개 농어촌 시·군 중 유효응답을 제시한 곳은 53개 군과 33개 도농복합시이다. 이들 86개 농어촌 시·군은 동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 마을의 평균 비중이 50.5%인 가운데, 군 지역의 동 비중은 57.4%, 도농복합시의 동 비중은 38.2%로 나타나 도농복합시의 읍·면이 군지역의 읍·면보다 오히려 기준 이행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유효응답을 제시한 86개 시·군 중 동 기준을 만족시키는 마을 비중이 100%인 곳은 15개 시·군이며, 이 중 군지역이 13곳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보건소

⁷ 동 기준은 개별 마을을 단위로 주민들에게 집단적으로 순회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정 개인 또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월 1회 방문사업을 실시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는 구별된다.

등의 전문 의료인력이 마을별 순회방문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은 곳은 2개 군과 4개 도농복합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 순회방문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은 지역 중 제3섹터 민간영역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는 안성시와 같은 사례도 있어 다른 지역에 수범사례가 될 만하다.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농어촌에서 자동차로 2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란 동일 읍·면 내의 이동 공간을 의미한다. 즉 동 기준은 주민이 거주하는 읍·면 내에서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달성 목표이다. 140개 농어촌 시·군 중 이미 96.4%가 동 기준을 달성하고 있으며, 2개의 군과 3개의 도농복합시만 이 동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시(동지역)는 동 기준을 100% 만족시키고 있다.

읍·면 내에서의 일반의약품 구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금도 가능하지만, 문제는 이동약자에 속하는 노인들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여전히 의약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의료 전문인력의 순회방문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연계 서비스의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 이행실태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자동차로 30분 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란 거주하고 있는 시·군 관내 지역을 의미한다. 또 청소년센터는 자료의 한계 상 청소년활동 진흥시설 중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에 한정하였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기반으로 동 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시·군에는 이러한 청소년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2개 도농복합시와 8개 군에는 해당 센터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즉 농어촌 시·군 중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 지역의 비중은 92.9%이다. 163개 시·군은 개별 시·군마다 3.4개의 청소년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도농복합시의 경우는 개별 시마다 평균 4.7개의 청소년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시는 평균 2.9개, 군은 평균 2.7개의 청소년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교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 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동 기준은 농어촌 시·군의 읍·면 별로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달성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비교분석을 위한 일반시(동지역) 해당 자료는 구득이 어려워 140개 농어촌 시·군에 대해서만 이행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농어촌 시·군에는 평균 42.6%의 읍·면에만 지역아동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군과 도농복합시로 구분하면 각각 38.9%와 48.5%의 읍·면에만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절반 이상의 읍·면에 해당 센터가 없는 것이다. 물론 농어촌에 아동이 적어 해당 시설에 대한 수요가 낮지만, 농어촌 아동의 복지 증진에 시장논리만이 적용된다면 농어촌 아동 복지의 악화는 물론, 이와 연계되어 농어촌 인구는 더욱더 줄어들고 삶의 질 또한 악화될 수밖에 없다.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 불편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동 기준은 거주하고 있는 시·군 관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필요한 경우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달성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

11월 현재 전국에는 국비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59개소, 지방비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2개소 설치·운영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모두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방문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방문서비스 제공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86개 군 중 동 센터가 설치된 곳은 60곳(69.8%)이며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52곳(60.5%)이다. 도농복합시의 경우는 센터 설치 및 방문서비스 제공 지역이 각각 50곳(92.6%)과 48곳(88.9%)으로 그 비중이 매우 높다. 종합해 보면 농어촌 시·군 중 동 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비중은 78.6%이며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의 비중은 71.4%이다. 일반시 역시 센터 설치 및 방문서비스 제공 지역이 각각 17곳(77.9%)과 16곳(69.6%)으로 군에 비해 상황이 양호하다. 결국 다문화가정이 지역 인구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전형적인 농어촌의 경우 오히려 이들을 위한 서비스 공급 센터의 설치나 방문서비스 제공 실태가 열악한 형편임을 알 수 있다.

표 3-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방문서비스 제공 현황

지역구분	미설치	설치	방문서비스	계
군지역	26개 군	60개 군	52개 군	86개 군
	30.2%	69.8%	60.5%	100.0%
도농복합시	4개 시	50개 시	48개 시	54개 시
	7.4%	92.6%	88.9%	100.0%
일반시	6개 시	17개 시	16개 시	23개 시
	26.1%	73.9%	69.6%	100.0%
전체 시·군	36개 시	127개 시	116개 시	163개 시
	22.1%	77.9%	71.2%	100.0%

□ 응급 서비스 부문 이행실태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범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동 기준은 일반시를 제외한 농어촌 140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리별로 주요 마을 접근로나 마을 주요 지점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달성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자체의 행정조사를 통해 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조사에 응한 124개 시·군 중 10개의 시·군에서만 유호응답을 제시하였다. 해당 10개 지역의 경우 전체 마을 중 평균 34.9%의 마을에만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군(8곳)의 경우는 동 비율이 39.2%이며 도농복합시(2곳)의 경우는 17.8%이다.

최근 농어촌 지역에 농작물에 대한 도난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1년 동안 땀 흘려 땅을 일군 대가가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되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 마을에 진출입하는 주요 길목에 방범용 CCTV 설치를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

□ 문화·여가 서비스 부문 이행실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동 기준은 140개 농어촌 시·군에서 각 읍·면별로 공공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읍·면 내에서 도서를 열람하거나 대출할 수 있는 것이 달성 목표이다. 또 도서관이 없는 경우 주민들의 도서대출 등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시스템을 구축하면 동 기준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도서대출 시스템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었지만 140개 시·군 전체에 대해 읍·면별 도서관 유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11. 농어촌 시·군의 읍·면별 도서관 설치 현황

지역구분	최대	최소	평균
군지역	100.0%	9.1%	54.8%
도농복합시	100.0%	0.0%	46.2%
농어촌 시·군	100.0%	0.0%	51.5%

농어촌의 경우 읍·면별로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비율이 51.5%에 그치고 있다. 군의 경우는 그 비율이 54.8%이며, 도농복합시는 이보다 낮은 46.2%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도농복합시의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시가지 동부에 주로 도서관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2개의 도농복합시는 읍·면에 도서관 설치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시의 경우 동 기준을 만족시키는 동지역의 비중이 50.2%이다.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동 기준은 모두 3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시·군마다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과 같은 전문적인 문화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둘째는 이러한 시설에서 전문가 및 비전문가들에 의한 문화프로그램이 월 1회 이상 진행되고, 셋째는 이들 시설에서 전문 예술인들에 의한 전문공연을 분기별 1회 이상 관람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의 한계 상 첫째와 둘째 세부 항목의 이행실태만을 점검할 수 있었다. 또 통계 구득의 한계 상 전문적인

문화시설은 앞서 언급한 문예회관과 지방문화원에 한정하였으며, 월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의 시행 여부는 지방문화원에서 개최하는 문화프로그램에 한정하였다.

163개 시·군 중 문화예술회관과 지방문화원이 모두 없는 곳은 옹진군과 계룡시 두 곳으로 나타났으며, 계룡시는 현재 문화예술회관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 놓여진 시·군 중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 비중은 98.6%이며 일반시는 100%이다. 전주시(일반시)의 경우 문화예술회관 등 전문적인 문화예술 시설이 가장 많은 6개가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일반시는 평균 2.1개, 도농복합시는 평균 1.9개, 그리고 군지역은 평균 1.6개의 전문적인 문화예술 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역별로 다소 문화예술 서비스 여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문화원의 문화프로그램 개최 회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113개 시·군이 응답하였다. 군 지역은 동 문화프로그램 개최 회수가 월평균 0.7회, 도농복합시는 0.8회, 일반시는 0.7회로 나타나고 있다. 또 ‘월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 지역은 군 지역이 12.7%(8곳), 도농복합시가 29.4%(10곳), 일반시가 18.8%(3곳)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문화원의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조사한 한계가 있지만, 문화프로그램 제공 주체가 다양하지 못한 군 지역의 경우 주민을 위한 문화·여가 서비스의 공급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표 3-12. 시·군별 지방문화원의 문화프로그램 개최 회수

지역구분	월평균 개최 회수	월1회 이상 개최 시·군		응답 시·군 수
군지역	0.7	8	12.7%	63개 군
도농복합시	0.8	10	29.4%	34개 시
일반시	0.7	3	18.8%	16개 시
전체 시·군	0.7	21	18.6%	113개 시·군

□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종합

이제까지 정보통신 분야를 제외한 7개 서비스 분야의 19개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항목 및 22개 세부 항목에 대한 기준자료를 구축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이행실태를 보다 현실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일반시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군지역과 도농복합시의 상황이 매우 다를 수 있어 두 지역 간 비교분석도 실시하였다. 그러나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140개 농어촌 시·군의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정리하면 <표 3-13>과 같다.

표 3-13. 농어촌 시·군의 서비스기준 항목별 이행실태

부문	기준항목	세부 기준항목	기준 목표	이행실태
주거	주거 가능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수비율	시·군별 90% 이상	76.0%
	신재생에너지 보일러보급	해당 여부	해당 여부	97.9% (보급 가구 비중 0.4%)
	공동시설 프로그램	운영비/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행정리 비중	60.9%
	안전한 마실물	면지역 상수도보급률	면지역 75% 이상	45.6%
	오폐수 처리	하수도보급률	시·군별 71% 이상	57.1%
교통	대중교통	도보 15분 내 대중교통 이용 여건	3회 이상 행정리 비중	81.7%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시·군별 유무	41.6%
	인도 설치	읍·면소재지 접근로 인도 설치	시·군별 인도 설치 비중	17.4%
교육	고등학교	우수/기숙형고교	시·군별 1개교 이상	85.7%
	교육발전위원회	교육발전위원회	유무	59.8%
	평생교육	읍·면별 거점시설 1개 이상	유무	19.9%

표 3-13. 농어촌 시·군의 서비스기준 항목별 이행실태(계속)

부문	기준항목	세부 기준항목	기준 목표	이행실태
보건 의료	1차 진료	중요과목 의사 진료	일반 병원	99.3%
			한방 병원	99.3%
			치과 병원	99.3%
			방사선병리검사 병원	32.1%
	순회방문	순회방문	월1회 이상 행정리 비중	50.5%
	의약품 구입	읍·면 단위 의약품 구입 가능	구입 가능 읍·면 비중	96.4%
사회 복지	청소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시·군별 설치 여부	92.9%
	아동	지역아동정보센터	1개 이상 설치 읍·면 비중	42.6%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군별 설치 여부	78.6%
		방문서비스 여부	시·군별 시행 여부	71.4%
응급	도난 방지	마을별 방범용CCTV	설치 행정리 비율	34.9%
문화 여가	독서	공공 및 작은도서관	읍·면별 1개 이상(%)	51.5%
	문화시설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시·군별 설치 여부	98.6%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시·군별 월1회 이상	19.4%

3. 사례지역의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3.1. 사례지역의 공공서비스 공급 실태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북 김천시, 충남 예산군, 전남 장흥군의 3개 농촌지역 시·군을 사례지역으로 분석하였다. 송미령 외(2009)의 지역별 공공서비스 공급실태 분석방법을 이들 3개 시·군에 적용하면 2005년 기준 165개 시·군 지자체 중 도농복합시인 김천시는 공공서비스 공급실태 종합순위가 107위를, 예산군은 93위를, 그리고 장흥군은 131위를 차지하고 있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이 삶의 질이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통해 이들 지역의 기초 서비스 공급을 개선하려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서비스 공급실태가 상위인 시·군보다는 오히려 공공서비스 공급실태가 낙후된 이들 3개 시·군을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송미령 외(2009)의 분석방법에 따라 8개 부문 37개 항목의 공공서비스 공급실태를 분석한 결과, <표 3-14>에서 볼 수 있듯이 사례지역 세 곳의 공공서비스 공급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165개 시·군 평균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상수도 보급률, 하수처리율, 대중교통 운행 회수 등 일부 항목에서는 세 지역 모두 165개 시·군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교사 1인 당 또는 인구 1천명 당 등의 기준으로 공급실태를 분석한 몇몇 항목에서는 사례지역의 여건이 평균보다 좋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 이 역시 과소화된 인구분포에 의해 양호하게 보이는 것으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 통계의 실제성(實際性) 결여’라는 약점을 드러낸다(송미령 외, 2009).

표 3-14. 사례지역의 공공서비스 공급 실태 비교

부문(8)	서비스 항목(37)	단위	평균	최대값	최소값	김천시	예산군	장흥군	
주거	최저주거기준 이상가구수비율	%	78.1	96.1	34.6	75.0	86.0	67.9	
	상수도 보급률	%	68.7	100	10	68.9	47.0	39.1	
	하수처리율	%	54.5	100	0.0	60.9	51.6	12.4	
교통	도보 15분 내 이용 가능 대중교통 운행 회수	회/일	18.3	83.6	4.7	16.6	14.7	8.6	
	도로 포장률	%	73.1	99.3	46	64.9	80.9	79.0	
	도로(면적)율	%	3.1	15.2	0.7	1.8	2.8	2.7	
교육	공교육	유아교육기관	개소/km ²	0.2	2.7	0.0	0.1	0.1	0.0
		초등학교	개소/km ²	0.1	1.0	0.0	0.0	0.0	0.0
		중학교	개소/km ²	0.0	0.5	0.0	0.0	0.0	0.0
		고등학교	개소/km ²	0.0	0.5	0.0	0.0	0.0	0.0
		교사1인당 유치원생	명	16.0	23.5	10.4	17.7	16.8	16.2
		교사1인당 초등학생	명	19.4	31.9	7.9	18.2	16.3	15.1
		교사1인당 중학생	명	14.8	26	4.5	15.5	13.6	10.5
		교사1인당 고등학생	명	12.5	17.8	3.8	15.4	12.5	10.2
	사교육	컴퓨터학원	개소/km ²	0.0	0.7	0.0	0.0	0.0	0.0
		보습학원	개소/km ²	0.7	11.5	0.0	0.1	0.1	0.0
예능학원		개소/km ²	0.8	13.7	0.0	0.1	0.1	0.0	
건강관리	병원	개소/km ²	0.8	16.3	0.0	0.1	0.1	0.1	
	공중보건	개소/km ²	0.0	0.1	0.0	0.0	0.1	0.0	
	약국	개소/km ²	0.4	6.2	0.0	0.1	0.1	0.0	
	병상수	개/인구1천명	8.7	31.7	0.2	12.8	3.3	8.4	
	의료인	의료인수/인구1천명	5.4	13.4	0.2	5.9	5.1	6.4	
사회복지	노인복지	개소/km ²	0.0	0.2	0.0	0.0	0.0	0.0	
	장애인	개소/km ²	0.0	0.1	0.0	0.0	0.0	0	
	아동보육	개소/km ²	0.3	6	0.0	0.0	0.0	0.0	
	기타복지	개소/km ²	0.1	0.9	0.0	0.0	0.0	0.0	

표 3-14. 사례지역의 공공서비스 공급 실태 비교(계속)

부문(8)	서비스 항목(37)	단위	평균	최대값	최소값	김천시	예산군	장흥군
응급	치안	개소/km ²	0.0	0.5	0.0	0.0	0.0	0.0
	소방	개소/km ²	0.0	0.2	0.0	0.0	0.0	0.0
	구급	개소/km ²	0.0	0.0	0.0	0.0	0.0	0.0
문화 여가	영화관	개소/1천명	0.0	0.0	0.0	0.0	0.0	0.0
	공연장	개소/1천명	0.0	0.0	0.0	0.0	0.0	0.0
	도서관	개소/1천명	0.0	0.1	0.0	0.0	0.0	0.0
	박물관	개소/1천명	0.0	0.2	0.0	0.0	0.0	0.0
	체육시설	개소/1천명	0.7	1.2	0.3	0.7	0.6	0.8
정보 통신 및 금융	우체국	개소/km ²	0.0	0.4	0.0	0.0	0.0	0.0
	은행	개소/km ²	0.2	3.3	0.0	0.1	0.1	0.0
	인터넷활용인구	%	29.5	60.5	11.7	29.3	27.7	22.6

주: 37개 항목 모두 2005년 기준으로 통일하였으며, 음영부분은 사례지역의 공공서비스 공급 실태가 165개 시·군 평균수준을 하회함을 의미. 교사 1인 당 학생 수는 수치가 낮을수록 양호한 항목임.

이들 37개 공공서비스 공급실태 수치를 표준화 점수(Z-score)로 전환하여 8개 서비스 부문별로 상대 비교한 결과 종합지수(종합평가) 기준 순위와 달리 동일 지역 내에서도 부문 간 순위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즉 김천시는 교통, 교육 부문에서 공공서비스 공급실태의 순위가 다른 부문에 비해 훨씬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⁸ 예산군은 사회복지와 문화·여가 부문에서 공급실태 순위가 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관련 시설의 낮은 분포율에 기인한다. 장흥군의 경우는 사회복지와 정보통신·금융 부문에서 낮은 서비스 공급실태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주거 부문의 서비스 공급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⁸ 김천시의 경우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로 알려진 지역이지만 산림을 포함한 녹지면적 비율이 74.8%로 매우 높아 도로(면적)율이 낮게 나타난 이유로 교통부문의 서비스 공급실태가 낙후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역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 통계의 실제성 결여’ 문제라 할 수 있다.

표 3-15. 사례지역의 공공서비스 공급 실태 표준화 점수 비교

단위: 표준화점수, (순위)

시·군	기초 생활권	시·군 구분	주거	교통	교육	건강 관리	사회 복지	응급	문화 여가	정보통신 금융	종합 지수
김천시	도농 연계형	도농 복합시	4.998	4.508	4.653	5.005	4.622	4.648	4.896	4.748	4.760
			(81)	(124)	(144)	(67)	(99)	(107)	(85)	(74)	(107)
예산군	농산 어촌형	군	4.848	5.083	4.784	4.803	4.565	4.954	4.699	4.763	4.812
			(93)	(55)	(103)	(96)	(128)	(39)	(122)	(72)	(93)
장흥군	농산 어촌형	군	3.789	4.850	4.856	4.888	4.561	4.717	5.089	4.480	4.654
			(151)	(82)	(87)	(85)	(132)	(82)	(55)	(129)	(131)

주: 165개 시·군의 표준화점수 평균은 4.000임.

이하에서는 사례지역 3곳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실제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을 시·도한다. 앞서 지적한 대로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8개 분야 31개 기준으로 구성되지만, 보다 세부적으로는 44개의 기준으로 구분된다. 또 이들 세부기준에 대한 기준자료 구축이나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모두 51개의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사례지역 심층조사에서는 이들 통계 항목 전체에 대한 데이터구축을 시·도했지만 지역에 따라 일부 통계는 구축할 수 없었다.

3.2. 김천시의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와 특성

3.2.1. 부문별 이행실태와 특성

김천시는 면적이 서울의 1.7배에 달하는 1009.5km²이며 전체 1개 읍, 14개 면,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가지인 동 지역의 통 단위까지 포함하여 마을 수는 모두 519개 통·행정리이다.⁹ 넓은 면적에 인구는 13만6천 명 조금 넘는 인구 과소지역이다. 그나마 인구의 62.3%가 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인구감소 역시 지속되어 최근 5년 간(2004~2009) 인구가 -5.7%만큼 감소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율은 17.2%에 달하고 있다. 또 전체 면적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다. 인구의 감소와 과소분포, 높은 고령화율과 임야비율 등은 김천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표 3-16. 김천시 읍·면별 인구 및 가구

구분	인구		가구(세대)	
아포읍	8,761	(6.4%)	3,549	(6.6%)
농소면	3,273	(2.4%)	1,307	(2.4%)
남면	3,695	(2.7%)	1,553	(2.9%)
개령면	2,959	(2.2%)	1,168	(2.2%)
감문면	3,972	(2.9%)	1,783	(3.3%)
어모면	5,151	(3.8%)	2,191	(4.1%)
봉산면	3,665	(2.7%)	1,498	(2.8%)
대항면	4,308	(3.2%)	1,693	(3.1%)
김천면	2,330	(1.7%)	938	(1.7%)
조마면	2,715	(2.0%)	1,132	(2.1%)
구성면	3,434	(2.5%)	1,638	(3.0%)
지례면	1,933	(1.4%)	935	(1.7%)
부항면	1,395	(1.0%)	649	(1.2%)
대덕면	2,516	(1.8%)	1,158	(2.2%)
증산면	1,264	(0.9%)	603	(1.1%)
자산동	9,630	(7.1%)	3,991	(7.4%)
평화남산동	10,949	(8.0%)	4,583	(8.5%)
양금동	5,739	(4.2%)	2,314	(4.3%)
대신동	25,426	(18.6%)	8,956	(16.6%)
대곡동	23,044	(16.9%)	8,401	(15.6%)
지좌동	10,255	(7.5%)	3,802	(7.1%)
합계	136,414	(100.0%)	53,842	(100.0%)

주: 김천시 홈페이지 및 통계연보.



9 마을 단위로 시행되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공간 단위는 ‘행정리’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심층 사례조사에서는 도농복합시인 김천시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종합적인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마을 단위에 시가지인 동 지역에 해당하는 통 단위까지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 주거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김천시는 주거 부문의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대부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은 ‘공동시설 프로그램’ 기준과, 목표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안전한 마실 물’ 즉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75%) 기준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목표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도시 성격을 상당히 갖춘 도농복합시인데도 불구하고 최소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이 75.0%에

표 3-17. 김천시 주거 서비스기준 현황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및 통계항목	김천시
주거가능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제고한다.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제고한다.	75.0%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50% 이상	0%
		신재생에너지(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0 가구
		신재생에너지(태양열보일러 보급)	113 가구
공동시설 프로그램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마을회관/경로당 운영비 지원	94.4% (490개 통·행정리)
		마을회관/경로당 상설프로그램 운영	-
안전한 마실물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높인다. 지자체는 원수 수질검사와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이상	74.7%
오폐수 처리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높인다.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	64.7%

그치고 있고, 하수도 보급률도 64.7%에 머물고 있다. 또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은 전무한 형편이다. 김천시가 주거 부문의 기준 이행실태가 좋지 못한 것은 2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31.1%)이 매우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편안히 주거할 만한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 최근 김천에서는 아파트 등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

□ 교통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김천은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로 알려져 왔고, 오늘날에도 경부선과 경북선과 같은 철도교통의 기반이 있으며, 동남으로 성주·진주, 서남으로 무주·거창, 동북으로 안동·문경을 연결하는 국도가 지나는 한편, 경부 고속도로와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여전히 교통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KTX 역사인 김천(구미)역이 완공되어 교통이 더욱 편리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천시는 전체 519개 마을 중 51개 마을이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정류소에서 하루 3회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¹¹ 시 관내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¹²

읍·면 소재지 접근로에 대한 인도설치는 양호한 편이다. 현재 배후마을에서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노선이 15개인데 이 중 위험지역 등에 인도설치가 된 도로가 10개(66.7%)로 나타났다. 김천시의 경우 교통 부문의 기준 달성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노선을 증가시키고, 한편으로는 대중교통 불편함을 보완할 농어촌 버스 운행이나 준공공 교통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¹⁰ 김천시 기획실 공무원 인터뷰 내용 중에서 인용하였다.

¹¹ 앞서 지적하였듯이 김천시에 대한 심층 사례조사의 경우 마을에 시가지인 동에 분포하는 통 단위까지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동일하다.

¹² 현재 김천시 관내에는 2개의 버스회사가 88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4개의 택시회사가 211대의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표 3-18. 김천시 교통 서비스기준 현황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및 통계항목	김천시
대중교통 운행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 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 사용	90.2% (468개 통·행정리)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콜택시 비용지원, 탄력적 버스 운영 등)	없음
여객선 운행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모든 도서지역과 본도가 1일 1회 이상 왕복선 운행	-
		도서지역 거주민 운임 일부 지원	-
인도설치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농어촌 주요 생활도로 정비 시 인도 구분 노력	66.7% (10/15)

□ 교육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김천시에는 2008년 말 기준으로 36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34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1개교, 전문대학 2개교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 중 구성초과곡분교와 금오산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2개교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폐교되었다. 현재 이들 통폐합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과 2012년에도 각각 1개교씩 2개의 초등학교가 추가로 폐교될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들 학교의 폐교를 확정하는 의사결정과 향후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시의 농어촌 우수고등학교는 2개교로 파악되었다. 농어촌 지역 및 낙후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실질적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은 ‘기숙형 고교’ 육성책인데, 이에 따르면 김천시에는 김천중앙고와

김천여고가 기숙형 고등학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기숙형 고교 선정계획에 따라 150개교를 모두 선정하였으며, 이 중 군에는 103개교, 도농복합시에는 46개교, 일반시에는 1개교를 배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김천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농어촌 우수고교가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김천에는 자율형사립고 1개교(김천고등학교), 그리고 개인이 시 보조로 운영하는 대안학교 1개교가 분포하고 있다.

표 3-19. 김천시 교육 서비스기준 현황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및 통계항목	김천시
유치원/ 초.중교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의거하여 적정규모 통폐합 시 통학수단 제공	통폐합 2개교 모두 제공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교과부 선정 우수고교 및 기숙형 고교 시·군당 1개교 이상	2개교
폐교요건	폐교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폐교 시 폐교재산활용과 관련하여 공청회 등 통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	폐교 예정 2개교 모두 주민의견 수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제고한다.	학생들의 70% 이상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93.5%
교육발전 위원회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기초지자체에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있음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 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읍·면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설 1개 이상	없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가율은 기준목표인 70%를 이미 초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비율이 김천의 경우 현재 93.5%에 이른다. 교육발전 협의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교육 관련 공무원, 학부모 대표, 학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김천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김천시의 평생교육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미활동·강좌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 보건·의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김천시에는 보건소 및 보건소가 17개소, 일반 병의원이 63개소, 치과의원이 28개소, 산부인과가 6개소, 물리치료실이 20개소 분포한다. 따라서 시 관내에서 주요과목에 대한 1차 진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다만 산부인과 병원의 경우 실제 분만이 가능한 병원은 1개소에 그치고 있다.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순회방문이 월1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의 비중은 절반가량에 머물고 있다. 순회방문은 주로 읍·면별 보건지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인력부족으로 이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약품의 읍·면 내 구입이 불가능한 곳은 1개 면으로 나타났다.

표 3-20. 김천시 보건·의료 서비스기준 현황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및 통계항목	김천시
1차 진료 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시·군 공공/민간의료체계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 등의 진료 가능	가능
순회방문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보건소 등 공공보건체계에서 마을별 집합장소에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순회 방문	50.1% (260/519 통·행정리)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자동차로 20분 내에 의약품구입 가능	93.3% (15개 읍·면 중 14개)

□ 사회복지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사회복지 부문의 기준 이행은 청소년과 아동,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항목에 대해서는 양호하지만 노인, 영유아에 대한 이행실태는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현재 김천시의 취약노인계층은 24,629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설에 수용되어 서비스를 받거나 재가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수는 3.3%인 801명에 그치고 있다. 영유아에 대한 기준 항목과 관련해서는, 15개 읍·면에 모두 3명 이상의 영유아가 거주하고 있는 반면, 영유아 보육시설이 없는 곳이 6개 읍·면에 달하고 있다.

표 3-21. 김천시 사회복지 서비스기준 현황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및 통계항목	김천시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노인 현황	24,629명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재가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수	801명 (3.3%)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관	0
		청소년문화의집	1
		청소년수련원	1
		기타 청소년활동 진흥 시설	1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교를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읍·면별 지역아동정보센터, 방과후학교 시설, 기타 방과후 돌봄 시설 운영	15개 읍·면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운영	9개 읍·면
다문화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방문교육서비스 제공)	1개소 (1개소)

□ 응급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김천시에는 응급장비가 구비된 구급차가 총 22대 배치되어 있다. 이들 구급차가 응급환자 발생시 30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마을은 469개 행정리로 이는 전체 마을 중 90.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차량 접근이 어려운 오·벽지 주민을 위한 응급 이송용 헬기 운행은 없는 상황이다. 소방차의 5분 내 현장 도착률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항목의 목표기준은 55%인데 현재 이를 충족하고 있는 마을 수는 219개 통·행정리로 전체 마을의 42.2%에 그치고 있다. 반면 경찰의 현장 10분 내 도착률은 98.3%로 목표기준 90%를 이미 초과달성하고 있다.¹³ 방범용 CCTV 설치마을 비율은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김천시 진출입 각 노선별 지역에 18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3-22. 김천시 응급 서비스기준 현황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및 통계항목	김천시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응급 처치를 한다.	응급장비가 설치된 구급차 관내 배치	22대
		30분내 응급현장도착	469개 통·행정리 (90.4%)
도서·벽지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해경, 산림청 헬기에 응급의 료장비 설치	없음
소방 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이상으로 높인다.	화재현장 5분내 도착률 55% 이상	42.2% (219개 통·행정리)
도난방지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범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농어촌 마을 진입 주요 도로 CCTV 설치	-
경찰 서비스	112 신고 시 90% 이상 10분 내에 현장에 도착한다.	현장 10분내 도착률 90% 이상	98.3% (510개 통·행정리)

¹³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마을은 총 9개 행정리로, 주로 증산면과 부항면에 분포하고 있다.

□ 문화·여가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김천시에는 시립도서관과 그 분관형태로 운영되는 8개의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다. 이 중 시립도서관과 6개의 작은도서관이 중심 시가지 지역인 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2개의 작은도서관은 각각 아포읍과 어모면에 입지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13개 면에는 도서관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면에는 주민들을 위한 이동도서관도 운영되지 않고 있어 앞서 언급한 9개의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원거리를 이동하지 않고서는 도서 열람 및 대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표 3-23. 김천시 문화·여가 서비스기준 현황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및 통계항목	김천시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 가능	13.3% (2개 읍·면)
		우체국 인터넷망 또는 택배 서비스를 활용한 시·군 도서관 대출, 반납 시스템 구축/운영	없음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자동차 30분 내에 문화시설 운영	2개소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가능 (연106회)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	가능 (연20회)
찾아가는 문화공연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현황	없음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부문의 기준과 관련해 김천시는 시 관내(자동차로 30분 도달 거리)에 전문적인 문화시설이 2개소가 있으며 이들 시설에서 연20회 정도의 전문가들에 의한 공연·예술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또 비전문가를 포함한 일반적인 문화프로그램은 연 106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류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외곽부에 위치한 읍·면 주민들은 동지역의 시가지까지 원거리를 이동하지 않고서는 문화·여가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 정보통신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김천시는 전체 519개 마을(통·행정리) 중 인터넷 접속을 위한 초고속망이 구축되고 IPTV 시청을 위한 광대역 통합망이 구축된 곳은 179개 마을(34.5%)에 그치고 있다. 그렇지만 군지역인 다른 두 사례지역에 비해서는 초고속망 및 광대역 통합망 구축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마을에 통 단위까지 포함한 결과임을 고려하면 행정리만을 대상으로 할 시 해당 비율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4. 김천시 정보통신 서비스기준 현황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및 통계항목	김천시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80% 이상에서 IPTV 시청이 가능하다.	초고속망 구축률 100%	34.5% (179개 통·행정리)
		IPTV시청을 위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80% 이상	34.5% (179개 통·행정리)

3.2.2.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을 위한 김천시의 혁신사례와 과제

□ 서비스 공급을 위한 혁신 사례

①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주민의 여가활동 증진

김천시는 1990년대부터 ‘스포츠 도시 김천’을 모토로 스포츠산업을 육성하여 왔다. 스포츠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00년부터 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과 국궁장, 실내사격장을 완공한 이후 2005년에는 실내체육관, 2006년에는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을 완공하였다.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의 구성은 <그림 3-1>과 같다. 김천시는 이들 시설을 기반으로 2006년에는 제87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고, 2007년에는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27회 전국장애인체전을 개최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국가대표 선수단이나 대학 선수단 등을 비롯해 국내외의 수많은 선수단의 전지훈련지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3-1. 김천시 종합 스포츠타운 구성



산업적 측면에서 조성한 이들 스포츠 시설을 김천시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여가 서비스 공급 증진에도 활용하고 있다. 우선 격년마다 열리는 김천시민의 날에 김천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수영장만 해도 연간 회원수가 1,6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김천 종합 스포츠타운은 일반 주민, 동호회, 학생, 장애인 등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향후에는 실내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전문적인 테니스 경기는 물론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테니스 교실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②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김천교육청은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 8천 여 만원을 지원받아 2010년 3월 김천중앙초등학교 내에 김천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교육청 차원에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은 최초인데, 이 센터는 교실 두 칸 규모로 다솜공부방, 식생활코너, 의생활코너, 전시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다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구와 학습자료를 갖추고 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는 다솜이의 학력향상과 소질계발을 위한 ‘다솜이 사랑방’, 결혼이주여성의 언어교육을 위한 ‘한글교실’, 다문화가족의 만남의 날 ‘무지개 장터’, 다문화가족의 화합을 위한 ‘한울타리 어울림’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김천시 관내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 및 중학생들에게 다문화 이해증진 교육을 위한 다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천시에는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과 일반 주민 및 일반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다문화 이해를 증진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 다문화가정을 위한 방문서비스 제공시에는 두 기관이 함께 협력하고 있기도 하다.

그림 3-2. 김천시 다문화교육지원센터



(a)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모습

(b) 다솜이 교실

□ 서비스 공급의 과제

김천시는 도시적 성격과 기능이 혼재한 도농복합시이지만 전형적인 농어촌인 군 지역에 비해 서비스기준 이행 상황이 그리 양호한 편이 아니다. 특히 주거,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부문에서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향후의 노력이 보다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주거 부문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비율,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건설이 필요하다. 이들 서비스기준 이행 정도가 미흡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노후주택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김천에서는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부족해 주택가격과 임대가격이 주변지역에 비해 오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교통 부문에서는 마을별로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교통요지로 알려진 김천시이지만 관내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 노선 부족이 그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민간 운송회사의 수익성이 없어 개선의 여지가 적다면 김천시에서 직영하는 공영버스 운행과 같은 대안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천시는 보건·의료 부문 중 전문인력의 마을별 정기순회 방문서비스와 노인 및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 공급이 특히 부족하다.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력의 부족이나 예산의 부족이 그 근본적인 이유이겠지만, 지자체의 노력만

으로 이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제3섹터 민간영역과 연대를 통해 해당 서비스 공급을 늘려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응급 서비스 중에서는 특히 소방차의 현장도착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충과 함께 대안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여가 부문 역시 도서관 시설과 같이 새로운 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점진적인 시설 확충과 함께 이동도서관 운영 등의 대안적 도서 열람 및 대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천시는 도농복합시로서 시설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양호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관련 시설이 시가지(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읍·면의 서비스 공급은 일반적인 군지역과 다르지 않게 열악하다. 결국 김천시와 같은 도농복합시의 경우 집중된 서비스 공급 시설의 읍·면 지역으로의 분산이나 읍·면 주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3.3. 예산군의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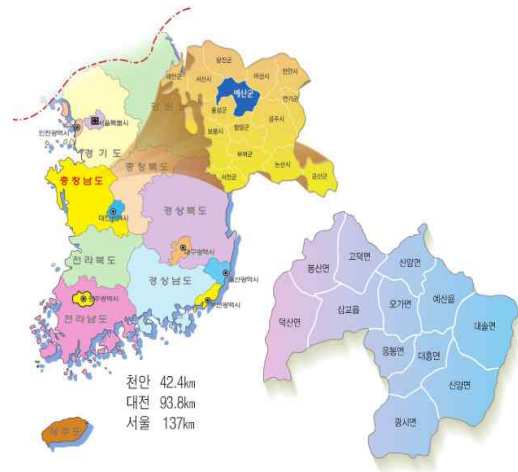
3.3.1. 부문별 이행실태와 특성

2009년 12월 기준 예산군의 인구는 총 89,242명, 가구는 35,854호이며, 행정구역은 2읍 10면 304개 행정리(177개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군의 인구와 가구는 각각 51.9%, 50.6%가 2개 읍지역에, 나머지가 10개 면에 분포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면지역 중 덕산면의 경우 인구와 가구가 각각 8.0%, 8.3%가 집중되어 있어 삼교읍에 버금갈 정도로 많다는 것이다. 그 외에 약 40% 정도의 인구와 가구가 나머지 9개 면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표 3-25. 예산군 읍·면별 인구 및 가구

구분	인구(%)	가구(%)
예산읍	37,401 (41.9)	14,591 (40.7)
삼교읍	8,902 (10.0)	3,562 (9.9)
대술면	3,186 (3.6)	1,339 (3.7)
신양면	3,780 (4.2)	1,571 (4.4)
광시면	3,805 (4.3)	1,650 (4.6)
대흥면	2,201 (2.5)	939 (2.6)
응봉면	3,154 (3.5)	1,264 (3.5)
덕산면	7,142 (8.0)	2,988 (8.3)
봉산면	3,022 (3.4)	1,274 (3.6)
고덕면	5,898 (6.6)	2,311 (6.4)
신암면	4,669 (5.2)	1,981 (5.5)
오가면	6,082 (6.8)	2,384 (6.6)
합계	89,242 (100)	35,854 (100)

자료: 예산군 통계연보



□ 주거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예산군의 주거 서비스기준을 조사한 결과 현재의 서비스 수준은 2014년 서비스기준 목표에 대부분 미달인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현재 예산군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32.0%로 목표 기준인 50.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은 각각 14.0%, 53.6%로 목표 기준인 75%와 7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율은 86.0%로 아직은 목표 서비스기준인 90%에 다다르지는 못하지만, 이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곧 목표 서비스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에 노력하고 있어 향후 예산군 주거서비스의 많은 증진이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표 3-26. 예산군 주거 서비스기준 현황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및 통계항목	예산군
주거 가능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 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제고한다.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제고한다.	86.0%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 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도 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50% 이상	32.0%
		신재생에너지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0.2% (81가구)
		신재생에너지 (태양열보일러 보급)	0.4% (131가구)
공동시설 프로그램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 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을 지원한다.	마을회관/경로당 운영비 지원	100% (304개 마을)
		마을회관/경로당 상설프로그램 운영	-
안전한 마실물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높인다. 지자체는 원 수 수질검사와 먹는물 수질기 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이상	14.0%
오폐수 처리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 로 높인다.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	53.6%

예산군의 경우 난방(도시가스보급)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고, 2014년 목표와 비교하여 매우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상·하수도 보급률과 주민 공동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공동시설의 경우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고 해도, 가장 기본적인 상·하수도 보급률에 대한 인식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교통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예산군의 현재 교통서비스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 사용이 가능한 마을(행정리)을 보면 총 304개 마을 중에 275개 마을로 나타나, 지속적인 노력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증대 및 확산시키기 위하여 비수익노선의 손실을 보상하거나 단일요금제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예산군은 총 38개 농어촌 생활도로 중 8개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여 인도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표 3-27. 예산군 교통 서비스기준 현황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및 통계항목	예산군
대중교통 운행	<p>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 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p>	<p>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정류장에서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 사용</p>	<p>90.5% (275개 마을)</p>
		<p>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콜택시 비용지원, 탄력적 버스 운영 등)</p>	<p>있음</p>
여객선 운행	<p>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p>	<p>모든 도서지역과 본도가 1일 1회 이상 왕복선 운행</p>	<p>-</p>
		<p>도서지역 거주민 운임 일부 지원</p>	<p>-</p>
인도설치	<p>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p>	<p>농어촌 주요 생활도로 정비 시 인도 구분 노력</p>	<p>21.1% (8/38)</p>

□ 교육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예산군의 현재 교육서비스는 이미 2014년 서비스기준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 통폐합학교는 4개교가 있는데 모두 스쿨버스나 교통비 지원 등 통학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산여고가 기숙형 고교로 선정되어 우수고등학교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또한 교육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 군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초·중·고생 7,311명 중 6,839명(93.5%)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도 읍·면별로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12개 읍·면에 모두 1개소 이상 운영되고 있다.

표 3-28. 예산군 교육 서비스기준 현황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및 통계항목	예산군
유치원/ 초·중교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의거하여 적정규모 통폐합 시 통학수단 제공	통폐합 4개교 모두 제공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한다.	교과부 선정 우수고교 및 기숙형 고교 시·군당 1개교 이상	1개교
폐교요건	폐교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폐교 시 폐교재산활용과 관련하여 공청회 등 통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	폐교예정 학교없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제고한다.	학생들의 70% 이상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93.5%
교육발전 위원회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기초지자체에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있음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읍·면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설 1개 이상	12개 읍·면

예산군은 교육서비스 수준이 이미 2014년 목표를 달성한 만큼 각 기준에 대한 중요성, 시급성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교육발전위원회의 경우 향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 보건·의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예산군의 보건·의료서비스는 비교적 서비스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예산군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비롯하여 일반병원도 4개소가 있어 모든 1차 진료기관 내에서 가능하며, 모든 읍·면에서 약국과 약방, 보건지소 및 진료소 등을 통해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특이한 것은 예산군의 경우 마을순회방문사업 대신 방문진료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마을순회방문사업의 혜택이 너무 적어 주민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예산군이 자체적으로 전환한 사업이다.

표 3-29. 예산군 보건·의료 서비스기준 현황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및 통계항목	예산군
1차 진료 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진료가 가능하다.	시·군 공공/민간의료체계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 등의 진료 가능	가능
순회방문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보건소 등 공공보건체계에서 마을별 집합장소에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순회 방문	- (방문진료)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자동차로 20분 내에 의약품 구입 가능	가능

□ 사회복지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예산군 사회복지서비스의 현재 수준은 서비스기준 목표와 비교하여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개소가 있어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질 뿐, 주 1회 이상 재가서비스를 받는 노인

482명으로 전체 취약계층 노인의 6.5%에 불과하다. 12개 읍·면 중 4개 면에 방과후 돌봄시설이 없으며, 3개 면에는 영유아보육시설이 전혀 없다. 청소년 센터의 경우 청소년 상담소와 야영장은 있으나, 청소년수련관 또는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복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은 없다.

표 3-30. 예산군 사회복지 서비스기준 현황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및 통계항목	예산군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노인 현황	7,465명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재가 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수	482명 (6.5%)
		방문건강관리사업	(월1회)
		지자체별 자체적인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방문진료)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 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관	0
		청소년문화의집	0
		청소년수련원	0
		기타 청소년활동 진흥 시설	2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교 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읍·면별 지역아동정보센터, 방과후학교 시설, 기타 방과후 돌봄 시설 운영	8개 읍·면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운영	9개 읍·면
다문화 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방문교육서비스 제공)	1개소

□ 응급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예산군의 현재 응급서비스 수준은 매우 양호한 편으로 2014년 서비스기준 목표를 거의 만족하고 있다. 응급장비가 설치된 구급차는 4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304개 마을 중 299개 마을(98.4%)에 30분내 현장 도착이 가능하다. 마을 주요 진입로에 CCTV가 설치되어 도난방지 역할을 하고 있고, 모든 곳에서 신고 접수 후 10분 내에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260개 마을(85.5%)이 신고 후 5분 내에 소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표 3-31. 예산군 응급 서비스기준 현황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및 통계항목	예산군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응급장비가 설치된 구급차 관내 배치	4대
		30분내 응급현장 도착	299개 마을 (98.4%)
도서·벽지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해경, 산림청 헬기에 응급의료장비 설치	-
소방 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이상으로 높인다.	화재현장 5분내 도착률 55% 이상	85.5% (260개 마을)
도난 방지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범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농어촌 마을 진입 주요 도로 CCTV 설치	100% (모두 설치)
경찰 서비스	112 신고시 90% 이상 10분 내에 현장에 도착한다.2)	현장 10분내 도착률 90% 이상	100% (모두 가능)

□ 문화·여가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예산군의 현재 문화·여가서비스 수준은 문화시설 프로그램은 기준을 달성하고 있으며, 반면에 독서와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매우 미흡한 편이다. 예산군에서 공연이 가능한 문화시설은 문화예술회관과 지방문화원 등 2개소이며, 월 1회 이상의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의 전문 공연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는 예산읍과 덕산면 2개 읍·면에서만 만족할 뿐 다른 읍·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독서의 경우도 예산읍과 삼교읍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통해서 2개 읍에서만 가능할 뿐 자른 면지역에는 작은도서관조차 없는 상황이다.

표 3-32. 예산군 문화·여가 서비스기준 현황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및 통계항목	예산군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 가능	2개 읍·면
		우체국 인터넷망 또는 택배서비스를 활용한 시·군 도서관 대출, 반납 시스템 구축/운영	없음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자동차 30분 내에 문화시설 운영	2개소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가능 (연20회)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프로그램 관람	가능 (연10회)
찾아가는 문화공연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현황	2개 읍·면

□ 정보통신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예산군의 정보통신서비스 수준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초고속망이 구축된 마을은 69개 마을로 전체 304개 마을 중 22.7%이며, 이 중 44개 마을만이 IPTV 시청을 위한 광대역 통합망이 구축되어 있다.

표 3-33. 예산군 정보통신 서비스기준 현황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및 통계항목	예산군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80% 이상에서 IPTV 시청이 가능하다.	초고속망 구축률 100%	22.7% (69개 마을)
		IPTV시청을 위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80% 이상	14.5% (44개 마을)

3.3.2.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을 위한 예산군의 혁신사례와 문제점

□ 서비스 공급을 위한 혁신 사례

①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예산군은 직접적인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하지는 않았으나, 대중교통 서비스를 증대시키고, 그 도달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비수익노선의 손실을 보상하고 있으며, 벽지 노선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0년 10월부터는 주민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대중교통 단일요금제를 도입하고, 그 손실을 군에서 보상하는 등 대중교통서비스 확산을 위하여 2010년에만 약 13.7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대중교통 단일요금제는 상주시와 금산군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② 마을순회방문사업의 방문진료사업 전환

예산군은 마을순회방문사업을 폐지하고, 해당재원과 인력을 전환하여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사업은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민이 많은 농촌에서 년 1~2회 순회방문사업으로 이루어져 효과가 크지 못했다. 또한 농번기에 시행하는 경우 주민들이 모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예산군은 2008년부터 형식적인 사업을 폐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계획하여 방문진료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방문진료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구별되는 사업으로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예방관리 역할을 하고 있다.

③ 기본적인 물리치료가 가능한 보건지소·진료소

예산군의 경우 1개의 보건소와 11개의 보건지소를 비롯하여 16개의 보건진료소에서 물리치료가 가능하다. 일반병원의 물리치료실 외에도 보건소와 삼교읍, 고덕면의 보건지소 등 총 3개소에 물리치료실이 마련되어 있다. 일반병원의 물리치료실은 농어촌 주민이 자주 이용하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은 거리라는 물리적 부담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군은 중심지와 거리가 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0개 보건지소와 16개 보건진료소에 찜질, 마사지 등 기본적인 물리치료가 가능하도록 기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더해 주민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④ 65세 이상 주민 의료비 감면

예산군은 공공의료체계에서 65세 이상의 주민에게 의료비를 감면해주고 있다. 특히 보건소의 경우 주민의 의약품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1,200원 상당의 의약품 쿠폰을 제공하여 인근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쿠폰의 비용은 군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⑤ 독거노인 세탁 지원 사업

예산군은 독거노인의 의류 세탁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생활관리사를 통하여 세탁물을 수집하고, 군 요양원의 세탁시설을 활용하여 무료로 세탁을 해주고 있다. 이는 현재 시범사업 중으로 40가구를 대상으로 격주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⑥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육성

예산군은 소규모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 서비스 공급의 과제

예산군의 부문별 서비스기준 실태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기준에 미달인 상태로 특히 주거, 보건·의료, 사회복지, 문화·여가부문에서 서비스 공급수준이 낮다. 주거부문의 경우 특히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14.0%로 최소 기준인 75%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예산군은 보건·의료부문에서 순회방문사업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는 예산군의 경우 마을순회방문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매우 낮아 2008년 이후 이 사업을 폐지하고, 대신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예산군에서만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사업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마을순회사업 뿐만이 아니라 각 서비스기준마다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과 시·도를 평가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부문의 경우 예산군은 서비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노인들 중 주 1회 재가서비스 수혜자가 매우 적고,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등 청소년 사회복지를 주관하는 시설이 전무하며, 더욱이 12개 읍·면 중 3개 면에는 영유아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과 각종 재가서비스 수혜자가 일부 중복 파악되어 정확

한 집계가 어렵다는 제도적인 문제도 나타났다. 문화·여가부문에서도 예산군은 서비스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는 예산읍과 덕산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예산읍과 삼교읍을 제외한 다른 10개 읍·면에는 작은도서관 조차도 없어 주민의 독서 기반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3.4. 장흥군의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와 특성

3.4.1. 부문별 이행실태와 특성

2009년 12월말 기준 장흥군의 인구는 42,097명, 가구는 19,265가구이다. 행정구역은 3읍 7면 295개 행정리(136개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장흥군은 지형적 특성상 장흥읍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역(장흥·부산·안양), 관산읍·대덕읍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역(관산·대덕·용산·회진) 그리고 유치면·장동면·장평면의 북부권역으로 생활권을 나누어볼 수 있다. 장흥읍을 필두로 한 3개 읍지역에는 인구의 약 61%가 집중되어 있다. 북부의 장동면과 유치면은 장흥군 중에서도 인구나 가구가 가장 적은 지역들이다. 이러한 거주 패턴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공급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표 3-34. 장흥군 읍·면별 인구 및 가구

구분	인구	가구
장흥읍	15,312 (36.4%)	6,388 (33.2%)
관산읍	6,289 (14.9%)	2,887 (15.0%)
대덕읍	4,185 (9.9%)	1,968 (10.2%)
회진면	3,409 (8.1%)	1,510 (7.8%)
안양면	3,344 (7.9%)	1,626 (8.4%)
장평면	2,551 (6.1%)	1,331 (6.9%)
용산면	2,678 (6.4%)	1,304 (6.8%)
부산면	1,620 (4.5%)	872 (4.5%)
장동면	1,456 (3.7%)	708 (3.7%)
유치면	1,253 (3.5%)	671 (3.5%)
합 계	42,097 (100%)	19,265 (100%)



자료: 장흥군청 홈페이지.

□ 주거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장흥군의 주거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수준을 보인다. 장흥군 전체 19,265가구에 대해 관내 총 19,581개의 주택이 있으나, 최저주거기준을 만족하는 주택의 비율은 67.9%에 불과한 수준이다.¹⁴ 읍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은 0%이다. 한국가스공사에서 2011년부터 위성기지방식의 공급 기반 건설에 착공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난방을 위한 인프라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¹⁴ 제시한 장흥군의 거주가능 주택 비율은 국토연구원(김혜승외, 2007)에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의 결과를 가공하여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만족 가구를 산정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표 3-35. 장흥군 주거 서비스기준 현황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장흥군	
거주가능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제고한다.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제고한다.	67.9% ※ '05년 기준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50% 이상	0%	
		신재생에너지	목재 펠릿보일러	0.2%
			태양열보일러	0.2%
			등유·화목 겸용보일러	0.7%
공동시설 프로그램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마을회관/경로당 운영비 지원	100% (295개 마을)	
		마을회관/경로당 프로그램 진행 지원	36.3% (107개 마을)	
안전한 마실 물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높인다. 지자체는 원수 수질검사와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이상	16.4%	
오폐수 처리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높인다.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	14.0% ※ '09년 10월 기준	

장흥군 관내 295개 모든 마을에 마을공동시설(경로당, 마을회관)이 있고, 전체 마을 경로당에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이 중 107개 마을(경로당)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지원되어, 군에서 파견하는 전담관리사 1명이 순회하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사업으로 하는 기체조나 보건소 연계사업으로 하는 손뼉치기, 수건돌리기 등이다. 장흥군 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16.4%, 군 전체 하수도 보급률은 14.0%로 서비스기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 교통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장흥군은 대부분의 마을에서 도보 15분 거리 내 정류장에서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나, 6개 오지마을의 경우는 이용률이 낮아 3회 미만으로 운행된다. 오벽지 노선 지원을 제외하면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은 없다. 장흥군에 있는 12개 섬 중 1개 섬이 유인도(노력도)인데, 연육교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읍·면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생활도로의 인도 설치 비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주요 마을에서 읍·면소재지에 이르는 44개 도로 중 인도가 설치된 도로는 1개이다.

표 3-36. 장흥군 교통 서비스기준 현황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장흥군
대중교통 운행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 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 사용	98.0% (289개 마을)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콜택시 비용지원, 탄력적 버스 운영 등)	없음
여객선 운행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모든 도서지역과 본도가 1일 1회 이상 왕복선 운행	1개 유인도가 있으나, 연육교로 연결 ※ 읍·면소재지 도서(본도)에 미해당
		도서지역 거주민 운임 일부 지원	
인도설치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농어촌 주요 생활도로 정비 시 인도 구분 노력	2.3%(1/44)

□ 교육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장흥군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외지로 다수 유출되는 형편이다. 학군이 달라 광주시로는 가지 못하고 인근의 장성군, 담양군 등지로 빠져나간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의한 학교 통폐합은 아니나, 2002년 장흥댐 건설 당시 수몰로 인해 유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된 유치초중학교가 있다. 유치초중학교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표 3-37. 장흥군 교육 서비스기준 현황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장흥군
유치원/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의거하여 적정규모 통폐합 시 통학수단 제공	통합학교: 유치초·중학교 학교버스(2대) 운영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교과부 선정 우수고교 및 기숙형 고교 시·군당 1개교 이상	1개교(장흥고: 우수고이자 기숙형공립고)
폐교요건	폐교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폐교 예정 학교	’12년 명덕초-회진초간 통폐합 예정
		폐교시 폐교재산활용과 관련하여 공청회 등 통해 지역주민의견 수렴	없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제고한다.	학생들의 70% 이상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100%
교육발전 위원회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기초지자체에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없음 ※ ’10. 5월 ‘장흥군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운영조례’ 제정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읍·면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설 1개 이상	100% (10개 읍·면)

2012년에 명덕초등학교와 회진초등학교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별도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 지역의 교육 주체와 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의사결정하는 기구로는 올해 5월에 제정한 ‘장흥군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운영조례’를 근거로 12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에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초중고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각 읍·면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도 열려있다. 읍지역의 경우 장흥문화원(장흥문화예술회관 문화센터), 전남대 평생교육원 장흥분원 등이, 면지역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보건·의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장흥군의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장흥군 내에 물리치료실 23곳, 병의원 26곳, 치과 6곳, 산부인과 2곳을 이용할 수 있어 주요 과목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다. 의약품 구입은 각 읍·면 내에서 모두 가능하다. 관내 2개의 종합병원이 있어 모든 과목의 1차 진료가 가능하며, 응급의료센터로서 기능하고 있기도 하다.¹⁵ 산부인과 분만은 형편이 어렵거나 다문화가정의 산모인 경우 장흥군에서 분만하기도 하나, 대부분 광주시의 병원을 이용한다.

장흥군에는 보건소 1곳(장흥읍 소재)과 보건지소 8곳, 보건진료소 10곳이 있고, 장평면과 장동면은 통합 보건지소를 함께 이용한다. 장평면 구계마을의 경우 면소재지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 보건진료소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놓여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에 있다. 장흥군은 모든 마을에 대해 월 1회 이상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¹⁵ 장흥읍의 종합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 10분 거리에 위치한 강진의료원(강진군 내 종합병원)과 의료 협조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

표 3-38. 장흥군 보건·의료 서비스기준 현황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장흥군
1차 진료서비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시·군 공공/민간의료체계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 등의 진료 가능	가능
순회방문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보건소 등 공공보건체계에서 마을별 집합장소에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순회 방문	100% (295개 마을)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자동차로 20분 내에 의약품 구입 가능	100% (10개 읍·면)

□ 사회복지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2010년 10월 기준 장흥군에는 전체 11,899명 노인인구의 약 36.3%에 해당하는 4,321명의 노인이 취약계층이며, 이 중 17.1%인 741명의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거나 재가방문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

청소년 복지시설은 다양하게 갖춰져 있지만, 아동복지시설과 영유아 보육 시설은 유치면, 부산면, 안양면, 장동면을 제외한 6개 읍·면에만 있다. 이들 지역은 아동·영유아 인구가 적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인근지역의 시설을 이용한다.

장흥군에는 관내 192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다. 지원센터는 장흥읍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낮은 가구에 대해서는 한국어와 아동양육 교육지도사를 파견하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2010년 10월 기준 25%에 해당하는 48가구가 방문서비스를 받고 있다.

표 3-39. 장흥군 사회복지 서비스기준 현황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장흥군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노인	4,321명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재가 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수	741명 (17.1%)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0개소 ※ '11 건축 계획 (장흥읍)
		청소년수련원	1개소
		기타 청소년활동 진흥 시설	1개소 (청소년야영장)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읍·면별 지역아동정보센터, 방과후학교 시설, 기타 방과후 돌봄 시설 운영	60% (6개 읍·면)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운영	60% (6개 읍·면)
다문화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 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군 내 이용 가능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방문 서비스 제공 여부	1개소 (방문서비스 제공)

□ 응급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장흥군의 응급 서비스는 서비스기준을 대부분 만족시키고 있다. 3대의 구급차가 배치되어 있고, 282개 마을(95.6%)에 대해 30분 내 응급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내 주요 산 지점에 헬기장 19개소를 설치하고 있어 헬기이송체계도 갖추고 있다. 소방 서비스의 경우, 10km 이상 떨어져 있는 유치면 대천마을을 비롯한 14개 마을에 대해서는 5분내 현장 도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95.3% 마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신고 시 10분 내에 경찰이 마을에 도착할 수 있는 경찰 서비스는 모든 마을에서 가능하다.

표 3-40. 장흥군 응급 서비스기준 현황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장흥군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응급장비가 설치된 구급차 관내 배치	6대
		30분내 응급현장 도착	95.6% (282개 마을)
도서·벽지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해경, 산림청 헬기에 응급의료장비 설치	헬기이송체계 있음
소방 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이상으로 높인다.	화재현장에 5분내 도착율 55% 이상	95.3% (281개 마을)
도난방지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법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농어촌 마을 진입 주요 도로 CCTV 설치	10.2% (30개 마을 60대)
경찰 서비스	112 신고시 90% 이상 10분내에 현장에 도착한다.2)	신고시 10분내 현장 도착율 90% 이상	100% (295개 마을)

□ 문화·여가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장흥군에서는 7개 읍·면에서 도서 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다. 장흥읍에서는 장흥공공도서관과 정남진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외 지역에는 옛 문고를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있다. 장흥군은 문화예술회관과 군민회관에서 월 1회 이상의 일반 문화프로그램, 분기별 1회 이상의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그러나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연 2회 이상 관람할 수 있는 읍·면은 장흥읍, 대덕읍, 회진면 등 3곳뿐이다.

표 3-41. 장흥군 문화·여가 서비스기준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장흥군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 가능	70% (7개 읍·면)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전문공연프로그램이 가능한 문화예술시설	2개소
		상기 시설에서 전문가들에 의한 공연예술프로그램 회수	연 10회
		관내에서 일반적(비전문가 포함) 문화프로그램 시행 회수	연 36회
찾아가는 문화공연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시행 회수가 연 2회 이상인 읍·면 수	30% (3개 읍·면)

□ 정보통신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장흥군은 5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284개 마을(96.3%)에서 초고속망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다. 서비스기준을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IPTV를 시청할 수 있는 마을은 50개 마을(16.9%)에 그치고 있다.

표 3-42. 장흥군 정보통신 서비스기준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장흥군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80% 이상에서 IPTV 시청이 가능하다.	초고속망 구축률 100%(초고속망 인터넷 접속 가능 마을)	96.3% (284개 마을)
		IPTV시청을 위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80% 이상 (IPTV시청 가능 마을)	16.9% (50개 마을)

3.4.2.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을 위한 장흥군의 혁신사례와 과제

이상으로 농어촌 서비스기준 항목에 비추어 장흥군의 서비스 공급 실태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장흥군 주민들의 생활 서비스 이용 여건은 탁월하지는 못하지만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인다. 국가 최저수준(national minimum)으로서의 서비스기준을 통해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별로 특히 낙후한 몇 가지 항목들을 제외한다면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장흥군의 주거와 사회복지 분야는 서비스기준을 달성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 주거 서비스는 거주가능 주택 비율이 상당히 낮고, 난방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안전한 마실 물 확보와 오폐수 처리 실태가 상당히 열악한 등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공공부문의 중장기적 계획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 투입을 필요로 한다. 2014년까지의 주거 서비스 달성 가능성에 대한 설문 결과 군에서는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지만, 현실성 있는 계획에 근거하여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지 않는다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재원을 마련하고 실행력 있는 서비스 공급 주체를 모색·발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복지 서비스 역시 그간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심화와 불리한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해 사업 환경이 녹록치 않은 형편이다. 자녀교육 문제로 농촌

을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 아동과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용 인원이 적은 4개 면에는 관련 시설이 전혀 없어 인근 지역으로 가야 하는 실정이다. 민간부문에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공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간이나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기업 등 중간적 영역에서 이러한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교육, 보건·의료, 응급,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양호한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 부문의 경우,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 주체 및 주민들 간 논의 통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도나 평생교육 기회 제공 측면에서는 서비스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한편 각급 학교 간 통합을 통해 적정규모학교를 조성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유치면 조양리에 위치한 유치초중학교는 2002년 장흥댐 수몰로 인해 유치초등학교와 유치중학교가 통합되면서 지어진 곳이다. 현재 초등학생 48명, 중학생 19명, 유치원생 9명 등 총 76명의 학생이 이곳에서 공부하며, 21명의 교사가 근무한다. 교사(校舍)의 1층은 유치원과 초등학생교실, 2층은 중학생교실, 3층은 다목적실로 이용된다.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그림 3-3. 장흥군 유치초중학교



자료: 유치초중학교, 두산백과사전, 해피빈재단 홈페이지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관내 2개 종합병원 등을 통해 거의 모든 과목의 1차 진료가 가능하고,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장흥군에서는 군 자체사업으로 널싱홈(Nursing Home)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가구에 대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방문·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읍·면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담당 지역의 취약계층을 주 3회 정도 방문 진료한다. 보건소의 경우 전담 방문팀은 매일, 치과 진료는 주 2회 이루어진다. 특히 의료 취약지역인 오지마을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방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문화·여가 서비스의 경우 문화예술회관과 군민회관에서 서비스기준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더 자주 일반 문화프로그램과 전문 공연예술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은 살펴볼 만하다. 그러나 찾아가는 문화서비스의 경우 군 자체적 사업 실행의 어려움으로 아직은 저조한 수준으로, 상급기관이나 민간기관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독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군소재지를 제외한다면 마을도서관이나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곳들은 보유 도서의 양과 질 측면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3-4. 장흥군 유치초등학교 작은도서관



자료: 동아일보, 해피빈재단 홈페이지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을 유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전라남도와 도교육청, NHN(주) 등이 체결한 ‘학교마을 도서관 조성’ 협약에 따라 2008년 10월 유치초등학교 건물에 3천 2백 여 권의 도서를 전달받아 마을도서관을 개관하였다. 관장으로는 교장과 주민대표가 각각 위촉되었다. 주민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방과 후에도 도서관을 개방하고, 책을 대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독서토론과 독서프로그램도 진행한다.

4. 기준자료 구축 및 이행실태 분석의 시사점

본 장에서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준자료의 구축과 이행실태 점검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한 작업과 분석을 정부 공표통계의 활용은 물론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지자체의 자료를 협조받아 실시하였으며, 분석의 보완을 위해 세 곳의 사례지역에 대한 심층사례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기준자료 구축과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농어촌 통계의 기반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기준자료 구축과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모두 51개의 통계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구득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 이 중 22개의 통계에 대해서만 정부 공식 공표통계를 통해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이다.

둘째, 정부의 관계 부처 및 기관, 지자체 등의 농어촌 서비스기준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이행실태 점검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기준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정부 공식통계의 활용에는 한계가 적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러한 협조가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이들 주체 간 협조체계가 법률 등에 근거해 강제력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의 운영 시 농어촌 지역 간에도 지역 특성과 실태가 매우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공급 실태가 다르고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농어촌 지역에 동일한 항목과 내용의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해도 평가 시에는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역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예산군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2008년 이후 마을 순회방문사업을 폐지하였다. 대신 주민들이 보다 원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주민들의 서비스 수요를 보다 만족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자구적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에 대한 점검·평가 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예산군의 기준 이행노력은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넷째, 농어촌 서비스기준 31개 항목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1회 이상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 항목은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개념정의의 포괄성은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의 유연성을 증대하는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 포괄성이 지나쳐 개념의 불명확성이라는 문제를 낳게 되면 기준자료의 구축이나 이행실태의 점검·평가 역시 엄밀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농어촌 서비스기준 각 항목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 4 장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방안

1.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위한 구성 요소

앞서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그간 논의되어온 주요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이 쟁점들은 동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제도적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을 다시 정리하면 크게 다섯 가지 제도 운영의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의 구성요소는 크게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정책 대상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백승기, 2007; 정정길 외, 2006), 이들 다섯 가지 요소들은 농어촌 서비스기준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에 해당한다.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의 정책적 목적과 정책 대상 집단은 이미 동 제도의 개념 정의 및 의의를 통해 설명하였다.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요소는 첫째, 법적 근거의 마련이다. 정부에 의해 특정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근거법이 마련되어야 관련 정책이 추진력을 얻게 된다. 관계 부처나 관련 기관, 지자체 등의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그 논리적 뒷받침이 근거법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다행히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지난 2010년 7월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동 기준에 대한 사항을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고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은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제도 시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추진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가 법적으로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정부 부처 및 지자체는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시행을 통해 그 이행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및 사무국(실무위원회)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의 인력(2명)으로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운영하는 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운용을 위해서는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제도의 운영은 10여 개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과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주요 주체들 간 동 제도 운영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이행하는 주요 주체인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서비스기준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어촌 정책이나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의 긍정적인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관계 부처나 지자체에서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동 제도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점검(monitoring) 방법과 평가(evaluation)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각 항목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도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해당 정책목표의 달성 시기는 원칙적으로 ‘삶의 질 향상 계획’기간에 맞추어 5년이지만, 그 시급성과 최우선성은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달성 기간 내에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또 농어촌 서비스기준이 원칙적으로 5년마다 개정될 예정이므로 해당 5년의 운용기간 후

이행 실적 및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반영하여 다음 5년 기간 동안 운용할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등에 대한 방안 역시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마련 방안이다. 물론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은 별도의 정부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있으나, 동 기준이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우선성과 시급성을 지닌 정책목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이행 촉진과 목표달성을 위해 일정한 정부예산이 책정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관련 제도와 연계 추진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제도로 도입되었기에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제도와 연계될 때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언급된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요소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이 중 법적 근거의 마련은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이미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되,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머지 제도적 요소들에 대한 논의 시 함께 다룬다.

표 4-1.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위한 구성 요소와 주요 내용

구성 요소	주요 내용
법적 근거 마련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 달성
조직구성과 추진체계 구축	· 삶의 질 위원회 및 사무국 기능 확대 · 관계부처, 관련 기관, 지자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
이해 증진과 이행 촉진	· 농어촌 서비스기준에 대한 홍보 및 가이드라인 제공 · 수범사례의 발굴 및 보급 · 이행실태 점검·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이행실태 점검·평가와 통계기반 구축	· 이행실태 점검·평가 방법 ·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통계기반 구축 방안
제도 운영 예산 마련	· 사무국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 서비스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예산 마련
관련 제도 연계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관련 제도 및 정책과의 연계 방안

2.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구성 요소별 운영방안

2.1. 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과 추진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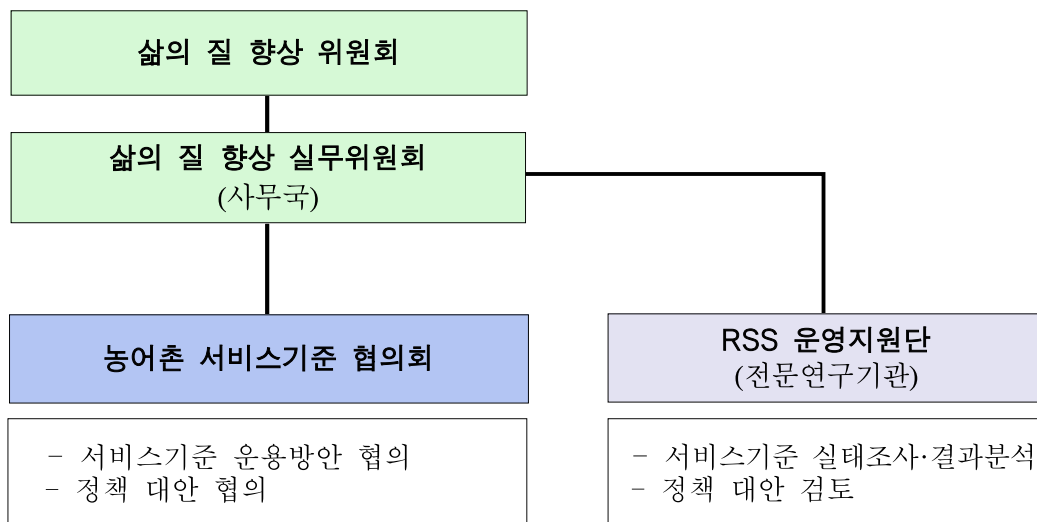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 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할 전문적인 인력으로 실무진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방안 전반을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특히 실무위원회(사무국)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가칭)‘농어촌 서비스기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동 협의회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으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장(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을 의장으로 하고, 사무국 공무원, 각 부처 삶의 질 향상 담당자 및 지자체 공무원, (가칭)RSS 운영지원단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협의회는 주기적으로 개최하되 중요한 협의사항이 있을 시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며, 이에 대한 분석과 정책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실무진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삶의 질 위원회 사무국 인원(현재 2명)을 대폭 확충하여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대안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관련된 실무를 위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대안 중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과 관련한 실무를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삶의 질 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다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의 실효성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정된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도 ‘정부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제44조 제5항)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대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1.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위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조직개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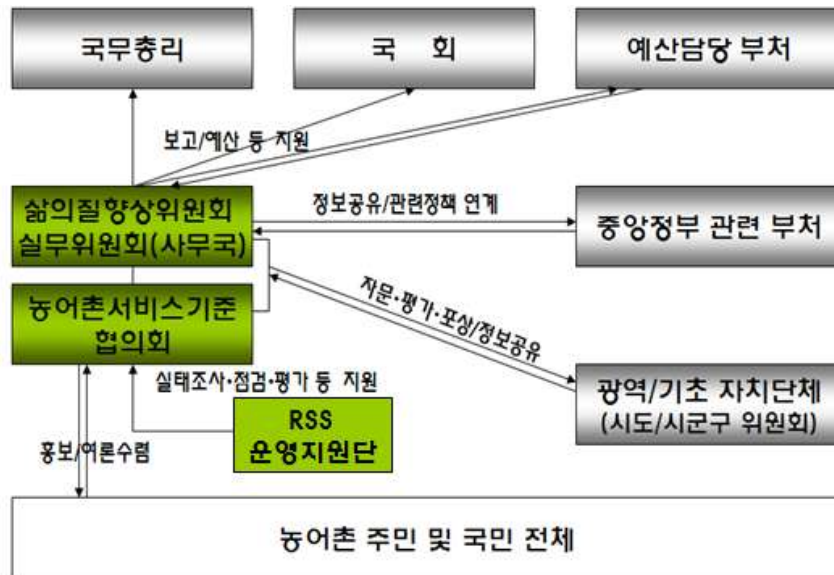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은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조직 확대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동 기준의 이행에 다양한 정부 부처, 지자체 등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다양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그림 4-2>와 같이 앞서 제시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및 사무국의 기능 확대를 포함한 제도 운영의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 향상 계획’과 관련된 부처들은 (가칭)농어촌 서비스기준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방안은 물론, 관련된 정책 대안들을 협의하고 도출해 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또 이들 관계 부처들은 고유한 정부 영역에서 오랫동안 정책을 추진해 온 주체로서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이행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를 위한 관련 통계 등의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 관련된 정책(또는

사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해당 정책(또는 사업)이 농어촌 서비스기
준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림 4-2.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추진체계



지자체 역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실현되는 현장으로서 농어촌 서비스기준 추진체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지자체는 각각의 지역에 적합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지역 나름대로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을 위한 위원회, 협의회, 파트너십 등을 조직해야 한다. 현행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시·도지사 직속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속의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 시·군·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각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기업부문, 제3섹터, 주민·시민단체, 전문가집단 등 지역의 주요 주체들 간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참고: 영국의 LSPs> 참조).

한편, 이와 같은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추진체계가 효율적·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및 사무국의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향후 관계 부처의 예산배정 등에 일부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동 위원회가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조직은 아닐지라도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과 관련한 별도의 예산을 관계 부처가 배정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결기능을 지닐 필요가 있다. 별도의 예산 배정은 이후 다시 논의한다.

<참고: 영국의 LSPs(Local Strategic Partnerships)>

- LSPs는 지방(local)에서 조직되는 파트너십으로 공공부문, 민간부문, 기업, 지역사회, 자발적 민간부문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대표들로 구성
- 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갖는 전문지식을 공유하여 연대와 지역사회 참여를 원칙으로 가장 필요한 지역적 우선사항들을 결정하고 그 해결을 위한 자원의 배분 등을 결정
- LSPs는 2000년부터 구성되었으며 당시 잉글랜드에서는 Index Multiple Deprivation에 의해 가장 낙후된 88개 지역의 LSPs가 정부로부터 근린재생지원금을 받았음
- 현재는 잉글랜드의 거의 모든 지방에 LSPs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유사한 로컬 거버넌스에 의한 파트너십이 스코틀랜드에서는 Community Planning Partnerships로, 웨일즈에서는 Local Service Boards라는 명칭으로 존재

2.2.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이행 촉진 방안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가 근거법이 마련되고 도입되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관계 부처나 지자체는 아직까지도 그 도입의 필요성이나 정책적 중요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 따라서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

고 다양한 방법으로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 우선은 중앙부처의 관련 부처,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 민간단체 등에게 간략한 홍보책자, 홍보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각종 설명회 및 연찬회, 교육 등을 통해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중요성과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내 관련 학회는 물론이고 OECD 등 국제적 논의의 장에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는 (가칭)‘농어촌 서비스기준 실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보급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농어촌 서비스기준과 ‘삶의 질 향상 계획’과의 연계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동 가이드라인은 ‘삶의 질 향상 계획’ 등을 비롯해 부처나 시·군의 계획 목표로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해당 계획 대비 실적 및 성과 평가에서 농어촌 서비스기준이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는 관련 수범 사례들(best practices)을 발굴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즉 농어촌 지역에서 공공 서비스의 공급 및 전달체계에 대한 다양한 혁신사례들을 국내외에서 발굴하는 한편, 그러한 혁신의 결과가 해당 지역에 어떠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농어촌 서비스기준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농어촌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행실태 점검·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 매년 각 지자체의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을 위한 수범사례 공모를 받고, 이를 삶의 질 향상 위원회(사무국 및 RSS 운영지원단)의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함께 평가하여 일종의 상사업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2.3. 이행실태 점검·평가와 통계기반 구축 방안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의 기초는 각 기준항목의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이미 앞서 제시하였다. 즉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세부기준으로 분해하고 각각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통계를 제시하였다. 또 정부의 공식 공표통계가 없을 시 부처 협조나 지자체 행정조사 등을 통해 구축해야 하는 통계항목 역시 <부록 2>와 같이 제시하였다(이행실태 점검·평가 방식). 또한 각 기준항목별로 어떤 공간 단위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할 것인가도 함께 제시하였다(이행실태 점검·평가의 공간단위).

그러나 이 외에도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주기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우선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주체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위원회 사무국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실질적 업무는 앞서 제시한 (가칭)‘RSS 운영 지원단’에 위임하여 전문성 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이행실태 점검·평가의 주체).

한편, 이행실태 점검 주기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정책적 시급성·최우선성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매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행실태 점검에 필수적인 관련 통계를 매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부 정부 공식 공표통계는 조사·공표 주기가 5년인 것들도 있는데, 이들 중 지자체 행정조사 등을 통해 조사 주기를 매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조사를 대체할 방법을 만들기 곤란한 것도 있다. 전자의 사례로는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행정리 단위)’가 있는데, 현재 관련 통계는 5년마다 조사·공표되는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이다. 그런데 동 통계는 마을 이장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구축되고 있어 각 시·군을 통해 읍·면별 조사를 실시하면 같은 방식으로 매년 통계구축이 가능하다. 대부분 읍·면의 경우 한 달에 1회 이상은 이장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이다.

후자의 사례로는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율을 90%이상으로 제고한다’가 있다.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율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5년 주기) 결과를 토대로 국토연구원에서 연구 결과로 발표한 바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동일한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물론 <참고: 최저주거기준>에 제시된 바와 같이 최저주거기준 항목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항목에도 포함되고 있으나, 해당 조사가 전국 약 3만 가구에 대한 표본조사로 실시되고 있어 정확한 시·군별 실태조사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참고: 최저주거기준>

최저주거기준이란 주택법에 의거해 건교부장관이 2004년에 설정·공고한 기준을 의미한다. 동 기준의 적용과 분석은 국토연구원에서 보다 현실화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자료의 한계 상 기준 항목 중 구조·성능·환경기준을 제외한 시설기준, 침실기준, 면적기준만을 가지고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 수 및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항목	주요 내용
시설 기준	- 전용 입식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침실 기준	- 가구원수를 고려한 방수 - 침실분리기준: 부부침실 확보,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침실분리, 만 8세 이상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면적 기준	- 가구원수별 총주거면적(예: 1인은 12㎡ 이하)
구조·성능·환경기준	- 영구건물로서 내열·내와·방습에 양호한 재질 확보 -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난방설비 구비 - 소음·진동·악취·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 - 홍수·산사태·해일 등 자연재해의 위험이 현저하지 않을 것

따라서 농어촌 서비스기준 31개 항목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원칙적으로 매년 실시하되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율’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5년마다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행실태 점검의 주기).

이렇듯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실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통계기반 구축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도 제3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기준항목별 기준자료 구축과 이행실태 점검을 시·도하였지만 이것이 가능한 항목은 전체 기준항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애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의 통계 제공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삶의 질 향상 특별법」(시행령)에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요구 시 부처 및 지자체가 해당 통계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통계 제출 의무화).

한편 농어촌 서비스기준 목표 연도(삶의 질 향상 계획 주기 5년)에는 각 항목별로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그리고 새롭게 제기되는 기준항목을 고려하여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동 평가를 통해 이행실태 점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마찬가지로 선별적으로 별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농어촌 서비스기준 실천을 위한 노력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한다. 단,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시행 이전 지역 간 실태가 다르므로 기준자료 대비 각 기준항목의 개선 정도를 감안한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행실태의 점검은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이행 또는 목표달성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으로, 점검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첫째, 관계 부처의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 실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가칭)‘RSS 운영지원단’이 이행 실태가 저조한 기준항목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부처의 사업추진 문제점, 관련 제도의 문제점, 관련 사업이 추진되는 현장인 지자체의 문제점 등을 조사·분석에 의해 진단해야 한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준항목의 이행을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자체의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을 독려하고 마찬가지로 이행 실천

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정책적 시급성·최우선성을 지닌 정책목표로 모든 농어촌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농어촌도 지역마다 상황과 특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항목의 이행실태 역시 매우 다를 수 있다.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은 특정 기준항목에 대해 이행실태가 매우 저조한 지역들을 선별해내는 기능을 한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조사·분석에 의해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 공급방안이나 전달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제점보다는 수범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합리적 기준 이행방안을 발굴하여 전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특정 기준항목이 다른 기준항목에 비해 이행실태가 양호하거나,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기준 이행 실적이 우수한 경우 해당 사례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기준 이행의 방법과 원리 등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행방법과 원리를 다른 기준항목이나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농어촌 서비스기준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효율적·효과적 기준 이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준 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정이 축적되면 단지 기준 이행을 촉진하는 것을 넘어, 관련된 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4.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의 운영은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근거해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일부로 추진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별도의 예산배정 없이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34조 5천억 원 가량의 투융자계획의 의해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동 기준의 이행 촉진과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삶의 질 위원회의 특성상 사업 추진 부처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앞서 제시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및 사무국 조직의 확대에 따라 추가 운영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가칭)‘농어촌 서비스기준 협의회’와 (가칭)‘RSS 운영지원단’의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이다. 특히 후자의 (가칭)‘RSS 운영지원단’은 특정 전문가 집단이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인건비, 연구·조사비, 국내외 여비, 인쇄비, 회의비 등 각종 경비의 확보가 요구된다.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위한 각종 위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박사급 인력 5명, 석사급 인력 3명 등 총 8명 정도의 전문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 20억 원의 보조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농어촌 서비스기준 항목 중 특정 항목의 집중적인 이행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 예산 배정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제시하였던 수범사례에 대한 공모 방식의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예산 배정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농어촌 서비스기준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지역 간 격차가 상이한데, 지역별로 기준 이행 정도가 특히 저조한 항목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지자체의 계획을 선정하고 이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을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 지자체 간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 협약’을 체결한 후 해당 지자체가 공모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여 기준 이행을 독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5. 관련 제도 및 정책과의 연계 운영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의 효율적·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연계 대상으로서는 먼저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들 수 있다.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촌 서비스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을 고려할 때 향후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성과목표나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연계 대상은 기초생활권정책이다. 동 정책은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의 질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와 동일한 정책목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나 포괄보조금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정책의 목표로서 농어촌 서비스기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책 사업 평가 지표로서 농어촌 서비스기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연계 대상으로는 농어촌 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동 제도는 농어촌 서비스기준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대 선진제도의 하나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연계 추진 시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영향관리 가이드라인의 체크리스트가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고려하여 작성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책(또는 사업)이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여러 항목 일부분과 관련이 있는가?’, ‘정책(또는 사업)이 현행 또는 현재 계획한 대로 시행한다면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농어촌 영향관리 가이드라인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책(또는 사업) 시행 이전에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과의 연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지역은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가 중첩되면서 낙후성이 심화되어 왔으며, 그 결과의 하나로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매우 부족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으로 농어촌 사회적 기업 육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사회적 기업이 농어촌 공공서비스 공급을 개선하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사례도 국내외에서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기

도 하다.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체 회사 육성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농어촌 서비스기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점을 주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향후 정책 과제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의 도입은 그간 추진해 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관련된 성과목표 역시 그간의 투입요소 위주에서 농어촌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전환하였다. 또 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여 이제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동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제도적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 살펴 보았지만, 이 외에도 향후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들이 남았다.

첫째,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만들고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한다 하더라도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름 아닌 관련된 주체들의 의지와 이들 간 협력이다. 현재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운용에는 별도의 추가 예산이 따르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관계 부처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향후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각 항목별로 내용의 정비가 필요하다. 여전히 개념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거 부문의 ‘마을공동시설의 프로그램 지원’, 사회복지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 문화·여가 부문의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그 적용 범위

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향후 관계 부처 간 논의 및 협의와 농어촌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명확히 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과 목표 달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

셋째,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목표달성 성과를 측정 및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기준항목별로 적절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각 기준항목에 따라서는 단순히 통계수치 대입을 통해 이행실태 점검과 평가가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농어촌 서비스기준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항목의 공급과는 달리 지역 실태에 맞는 나름대로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적절한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추진에 있어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동 기준은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되어 그 실질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지만 앞서 분석하였듯이 동 계획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급성과 최우선성을 지닌 농어촌 서비스기준 항목 모두를 담고 있지 못하다. 향후 각 기준 항목이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주요 부문(7개 부문)의 주요 성과지표 또는 성과목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5 장

농어촌 통계기반 구축 및 활용방안

1. 농어촌 통계기반 구축의 배경과 의의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통계기반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동 기준의 기준자료 구축이나 이행실태 점검·평가 등을 위해서는 관련된 통계를 주기적으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고정된 것이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목표로 제시된 후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 농어촌 주민들의 새로운 수요, 농어촌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정책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된다. 따라서 현재의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범위를 넘어 보다 광범위한 농어촌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

농어촌 통계를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은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운용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농어촌 정책의 수립과 관련 사업을 포함한 정책의 추진은 ① 농어촌 정책의 비전 및 목표의 수립, ② 농어촌 실태에 대한 분석, ③ 농어촌의 문제 발견과 진단, ④ 문제 해결 및 목표 실현을 위한 대안 마련, ⑤ 대안의 정책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⑥ 정책사업의 추진과 예산 투입, ⑦ 정책 추진의 점검(monitoring)과 환류, ⑧ 정책 성과의 평가 등의 단계를 거친

다. 이러한 모든 단계에 관련된 통계의 구축과 활용이 필요하다. 달리 말해 농어촌 통계기반은 농어촌 정책 추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농어촌 통계기반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필요한 통계가 조사·구축되지 않고 있는 한계도 있으며, 현재 존재하고 있지만 농어촌의 실태를 분석·진단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평가하는 데 갖추어야 할 조건이 미비한 측면도 있다. 농어촌 통계기반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첫째, 필요한 통계의 존재이다. 내용적으로 필요한 통계가 조사·공표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조사·공표의 공간적 단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어촌이란 주로 읍·면부를 의미한다. 때로는 정책 추진의 자치권이나 자율성을 고려해 기초지자체 단위로 도농복합시와 군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재 다수의 농어촌 통계가 전국을 읍·면·동으로 삼분한 통계이거나 시·도 단위로만 조사·공표되고 있다. 셋째, 조사·공표의 주기이다. 농어촌 통계가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정책 추진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매년(또는 그 이하), 격년, 5년 등의 주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는 농어촌 통계기반 구축을 위한 통계 설계 단계로 현재 구축할 수 있는 농어촌 통계 항목을 모아 분야별로 재구성해 보았다. 그리고 선행연구와 공간 정책을 다루는 지역발전위원회, 그리고 농어촌 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내부자료 등을 토대로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는 농어촌 통계를 선정해 보았다. 또 현재 조사·공표되고 있지만 앞서 제시한 농어촌 통계의 조건과 비교할 때 보완이 필요한 통계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한편 농어촌 통계가 실제 정책 추진의 과정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 목적에 맞도록 형태가 가공되어 정책 결정(policy making) 과정에 투입된다. 각종 지표 또는 지표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통계기반의 활용방안을 몇 가지 대표적인 농어촌 지수에 대한 소개를 통해 제시하였다. 다만 농어촌 통계기반 구축방안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전 국내외의 농어촌 통계기반 구축 및 활용 사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2. 국내외 농어촌 통계기반 구축 및 활용 사례

2.1. 국내 사례

농어촌 통계란 농어촌 지역(읍·면 또는 군과 도농복합시)이라는 공간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유·무형의 속성들을 계량화한 수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용렬·김경덕, 2008).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현재 국내에서 조사·공표되고 있는 농어업 및 농어촌 지역 관련 통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에는 농림어업총조사와 그 일환으로 실시되는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농업조사 및 어업조사를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농어가경제조사, 농산물생산비조사, 농업면적조사, 농작물생산조사, 여성농업인실태조사, 어업경영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수산물가공업통계 등을 들 수 있다(표 5-1).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 조사로서 농업에 대해서는 농가 및 농가인구, 경지, 작물, 가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어업에 대해서는 어가 및 어가인구, 어업 종사 가구원, 양식어업, 어선 등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며, 공표는 읍·면·동 단위와 시·군·구 단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는 농림어업총조사 중 일부 항목에 대해 마을(행정리)을 단위로 보다 자세하게 다루어지는 조사로서, 특히 우리나라 농어촌의 시설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지역조사는 농림어가별 마을 수, 주된 대중교통 수단별 마을 수, 대중교통 운행횟수별 마을 수, 교육시설·사설학원·의료시설 거리별 마을 수, 농업·임업·어업 관련시설 거리별 마을 수, 저장·가공시설 거리별 마을 수, 농업·임업·어업 형태별 마을 수, 농어촌관광 운영현황별 마을 수, 홈페이지 운영현황별 마을 수, 법인 조직 현황별 마을 수, 작목반 조직현황별 마을 수, 어촌계 및 산림계 조직현황별 마을 수, 농림어업쓰레기 처리현황별 마을 수 등 총 21개 항목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공표 지역단위는 전국단위(전국, 읍부, 면부), 시·도단위, 그리고 읍·면·동단위의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조사 및 어업조사는 농업과 어업에 대하여 매년 이루어지는 조사로서, 농업조사는 농가 및 농가인구, 전·겸업별·경지규모별·영농형태별·판매규모별 농가 수, 친환경농업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어업조사는 어가 및 어가인구, 어업형태별·어선보유톤수별·겸업분야별·판매규모별 어업가구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농어가조사의 자료는 어가 및 농가인구(시·군·구단위)를 제외한 항목들은 시·도단위로 공표되고 있다.

표 5-1. 농어업 및 농어촌 관련 통계

구분	주요 통계
농업	농업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농어업법인조사, 농가경제조사, 축산물생산비조사, 가축동향조사, 농기계보유현황, 농산물생산비조사, 농업면적조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조사, 농업조사, 농작물생산조사, 농지임대차조사, 누에사육 및 양잠규모현황, 배합사료 생산실적 및 원료사용실적, 생산지수, 양곡소비량조사, 여성농업인실태조사, 우유및유제품생산소비상황, 채소류가공현황, 축산물등급판정통계, 화훼류재배현황
어업	어업총조사, 어가경제조사, 불법어업단속통계, 수산물가공업통계, 수산종묘매입방류현황, 수출입수산물검사통계, 어류양식동향조사, 어업경영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어업조사, 영어자금 소요액 조사, 인공어초시설현황, 자율관리어업공동체현황, 천해양식어업권통계

이처럼 농림어업총조사를 비롯한 다수의 통계를 통해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해서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농어촌보다는 농어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지역통계들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 또한 제한점이 많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역통계는 <표 5-2>와 같이 인구, 고용·임금, 보건·사회·복지, 농림·수산, 교육·문화·과학 등 크게 16개 분야로 구분되는데,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전국사업체

총조사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국단위(전국, 동부, 읍부, 면부 등) 또는 시·도단위로 공표되고 있어 개별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표 5-2. 국가통계 부문별 주요 내용

구분	통계 수	주요 통계
인구·가구	9	-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인구이동, 주민등록인구통계, 외국인등록인구 등
고용·노동·임금	9	-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등
	7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사업체고용동향조사(특별조사),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등
	3	- 임금실태, 중소기업직종별 임금조사 등
물가·가계	4	- 소비자물가조사, 생산자물가조사, 수출입물가조사 등
	3	- 가계소득지출, 가구소비실태조사, 가계자산조사 등
보건·사회복지	26	- 건강보험, 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현황, 의료기관실태보고,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등
	19	- 사회조사, 농촌생활지표조사,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가족실태조사 등
	27	- 경로연금수급자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현황,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등
환경	12	- 기후, 상·하수도, 오염, 재활용, 폐기물, 수자원현황, 연안습지면적현황 등
농림어업	21	- 농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업면적조사, 농업조사, 농작물생산조사 등
	7	- 어업총조사, 어가경제조사, 어업경영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어업조사 등
	7	- 임업총조사, 산림기본통계, 임산물생산조사, 임업경영실태조사, 임가경제조사 등
광공업·에너지	12	- 광업·제조업조사,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기계산업통계, 산업단지현황 등
	13	- 에너지총조사, 에너지수급통계, 전력소비행태분석, 천연가스통계 등

표 5-2. 국가통계 부문별 주요 내용(계속)

구분	통계 수	주요 통계	
건설·주택 ·토지	14	- 건설업, 건설업조사, 건축물통계, 건축허가및착공통계 등	
	10	- 주택총조사, 주택보급률,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주택건설 실적통계 등	
	7	- 수동산거래현황, 전국지가변동률조사, 지적통계 등	
교통 ·정보통신	22	- 도로현황, 항공통계, 한국철도통계, 고속도로교통량통계, 대중교통현황조사 등	
	20	-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우편물통계, 정보화통계조사 등	
도소매 서비스	12	- 서비스업총조사,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등	
경기 ·기업경영 (사업체)	12	- 소비자동향조사, 시장경기동향 등	
	17	- 전국사업체조사, 총사업체통계조사 등	
국민계정 지역계정 국가자산	5	- 국민계정, 지역계정, 국가자산통계 등	
	1		
	1		
재정·금융 ·보험	13	- 국세통계, 국유재산현황, 공적개발원조실적통계, 국가채권, 국가채무 등	
	12	-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금융기관대출행태조사, 증권통계 등	
	2	- 보험통계, 생명보험성향조사 등	
무역·외환 ·국제수지	4	- 기술무역통계조사, 수출산업실태조사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등	
	3	- 외환, 환율 등	
	4	- 국제수지통계, 외국인직접투자통계 등	
교육·문화 ·과학	12	- 사교육비조사, 평생교육통계, 학교교육수준 및 실태조사 등	
	13	- 문화산업통계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전국도서관통계조사 등	
	5	- 연구개발활동조사, 원자력산업실태조사, 국내생물산업 등	
행정	공공 행정	8	- 병무통계, 지식재산권통계, 한국도시통계, 도달통계 등
	기타	4	- 남북이산가족교류현황, 남북인적왕래현황 등
총 16개 분야	38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농어촌 통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읍·면 또는 군을 단위로 공표하는 통계가 부족하다. 대다수의 통계가 전국단위의 동부와 읍부·면부 등으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만 이러한 통계로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성을 파악할 수가 없다. 둘째, 소득, 고용 등 중요한 통계가 누락되어 있다. 이는 이러한 통계들이 대부분 시·군 또는 읍·면·동단위가 아닌 시·도단위로 공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통계 획득이 불편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통계는 국가통계포털, 시·군 홈페이지, 해당 부처 및 부서 등 각 기관별로 구축이 되어 있어 농어촌 통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합적·일괄적으로 획득하는 데 불편이 크다.

2.2. 영국

□ Neighborhood Statistics

영국 Neighborhood Statistics는 통계청(ONS)에서 제공하는 지역정보 데이터베이스로서, 2001년 센서스 데이터와 최근의 지역통계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Neighborhood Statistics의 지역정보는 2001년 센서스 데이터를 비롯하여 서비스 접근성, 커뮤니티, 교육·기술·훈련, 주택, 소득 및 라이프스타일 등 크게 15가지의 주제로 구분된다. 각 주제별로 적게는 5개, 많게는 61개의 데이터군으로 총 290개 데이터군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5-3). 또한 이러한 정보들은 10가지의 다양한 지역구분¹⁶이 이루어지며, 최소 인구 1,000명(스코틀랜드의 경우

¹⁶ Neighborhood Statistics의 지역구분은 총 10가지로 이루어진다.

- ① Local Authority: ‘local government’보다 낮은 기준으로, 잉글랜드의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1단계 지역정부(unitary authority), 런던; 웨일즈의 1단계 지역정부(unitary authority); 스코틀랜드의 카운실(council areas); 북아일랜드의 district council areas
- ② Lower Layer Super Output Area(LSOAs): SOAs는 통계를 수집하고 공표하는 소 지역 단위를 의미함. LSOAs는 인구가 최소 1,000명(400가구), 평균 1,500명인

50명)단위의 소지역까지 구분하여 자세한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Neighborhood Statistics의 지역정보 검색은 매우 간단하게 이루어지는데, 원하는 지역의 이름 또는 우편번호(postcode)를 입력하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구분을 선택하면 각 주제별 정보를 살펴볼 수 있으며, 모든 정보는 선택한 지역과 그 지역의 상위 지역단위까지 같은 표에 제시되어 그 지역의 비중을 가늠하게 한다(그림 5-1의 (a)). 특히 이러한 데이터는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동되어 바로 지도화가 가능하며, 지도창에서 간편하게 보고자하는 다양한 데이터로의 변환이 가능하다(그림 5-1의 (b)).

표 5-3. 영국 Neighborhood Statistics의 데이터 제공 분야

주 제	내 용	데이터군
2001 센서스 지역 통계	인구 및 세대, 주거 형태, 경제활동, 어메니티, 커뮤니티 등 센서스 변수에 대한 정보 제공	55
2001 센서스 주요 통계	중요한 센서스 통계를 단순한 표로 정보 제공	31
서비스 접근성	의료, 교육, 법률시설 등 서비스시설로의 접근성 정보 제공	8
커뮤니티 복지/사회환경	커뮤니티 복지 및 사회환경에 관한 정보 제공	10
범죄 및 안전	범죄, 화재, 사고에 관한 데이터	1

지역단위로 총 34,378개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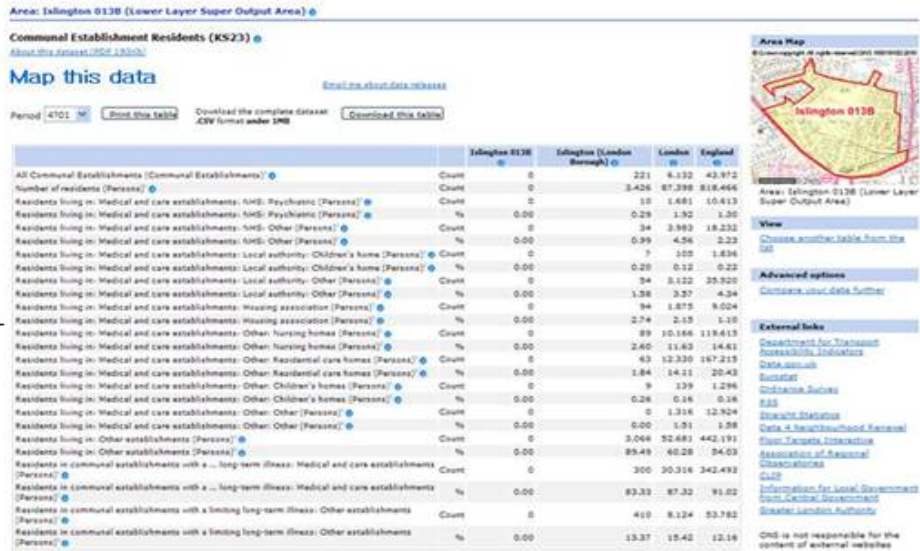
- ③ Middle Layer Super Output Area(MSOAs): MSOAs는 몇 개의 LSOAs로 이루어진, 인구가 최소 5,000명(2,000가구), 평균 7,200명인 지역단위로 7,193개로 구분됨.
- ④ Ward: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 ⑤ Output Area: 센서스조사의 기본단위. 스코틀랜드에서는 인구가 최소 50명 규모이고, 그 외의 잉글랜드 전 지역은 최소 100명 규모를 기본으로 함.
- ⑥ Primary Care Organisation: 1차 진료 기관 단위
- ⑦ Health Authority: 지역 보건·의료 행정단위
- ⑧ Education Authority: 지역 교육 행정단위
- ⑨ Westminster Parliamentary Constituency: 영연방의회 의원 선거구
- ⑩ Parish: 지방정부에 소속된 소지역

표 5-3. 영국 Neighborhood Statistics의 데이터 제공 분야(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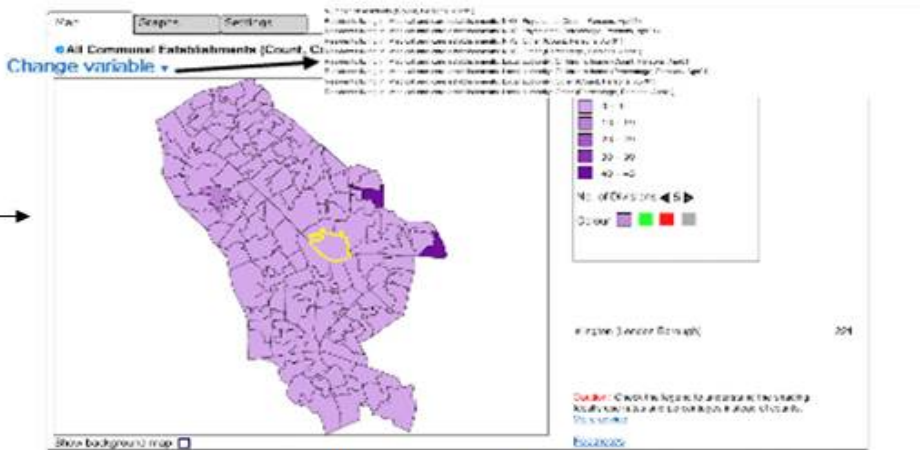
주 제	내 용	데이터군
경제 결핍	경제활동, 빈곤, 복리 증진에 관한 정보 제공	13
교육, 기술, 훈련	학교 및 학생 수, 고등교육기관, 교육 성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13
건강 및 의료	건강, 기대 수면, 건강한 습관, 비급여의료 등에 관한 정보 제공	17
주택	주택 공급 및 수요, 주택 조건, 노숙자 등에 관한 정보 제공	25
지수	모든 데이터들의 요약 및 지수화 정보 제공	23
결핍지수와 계층분류	결핍지수, 사회경제 계층 지수, 지역 계층 지수 등 제공	22
인구/사회: 소득, 라이프스타일	소득, 가정(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20
인구/사회: 인구와 인구이동	인구의 규모와 구조, 출생, 사망, 이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18
물리적 환경	토지 관리 및 재개발, 토지계획, 대기의 질 등에 관한 정보 제공	5
일자리 부족	기업활동 및 경제활동, 직업훈련프로그램 참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29
15개 주제 계		290

주: 데이터군의 수는 Lower Layer Super Output Area 지역구분일 경우임.
 자료: www.neighbourhood.statistics.gov.uk

그림 5-1. 영국 Neighborhood Statistics의 지역정보 제공 사례



(a) 정보의 제공(Table)



(b) 정보의 지도화

□ The State of Countryside

「The state of countryside¹⁷」는 통계청의 지역통계(Neighborhood Statistics)와 환경식품농촌부(DEFRA)의 지역통계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농촌생활, 경제, 토지·환경의 3가지 주제를 기본으로 그 안에 다수 항목들을 갖고 있는데, 이 항목들은 매년 이슈 및 필요에 따라 조금씩 바뀐다. 예를 들어 2010년 보고서에는 농촌생활분야에 ‘교통 및 이동’, 토지·환경분야에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내용이 추가되어 최근에 활발한 여가 및 문화의 이슈를 다루었다. 2010년 보고서는 3가지 대주제에 15개 중주제, 79개의 소주제 및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5-4).

□ 시사점

영국의 지역통계를 통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영국의 지역통계는 일반적인 인구 및 주택 등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소득과 고용, 교육, 복지, 환경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육, 의료, 커뮤니티 등에 대한 질/만족도와 서비스시설 대한 접근성 등 정성적인 내용을 정량화한 데이터도 제공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정책을 평가하고 수립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다양한 통계데이터를 제공하는 다양한 지역단위이다. 영국의 Neighborhood Statistics는 지역구분을 10가지로 다양화하여 최소 인구 1,000명(스코틀랜드의 경우 50명)의 작은 소지역까지 통계구축 단위에 포함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각 지역의 자세한 정보를 습득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이는 대부분의 공식 통계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지리정보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들을 다양한 지역단위로 시각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Neighborhood Statistics의 경우 기본 데이터 표에서와 마찬가지로 선택한 지역과 그 상위 지역단위까지의 정보를 지도화

¹⁷ 「The state of countryside」는 영국의 CRC(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가 농촌 지역의 사회, 경제, 환경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기술한 보고서이다.

함으로써 정보의 이해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일부 데이터를 지리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의 쉽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참고할 만하다.

표 5-4. The State of Countryside 2010 보고서의 주요 내용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및 세부항목
농촌 생활	인구 및 인구이동	인구와 인구 증가(도농 간 인구 변화), 연령별 인구(연령별 인구 구성), 영국 내 전출입, 이주 거리, 해외 이주자
	서비스 접근	서비스 제공 시설의 위치 및 접근성, 광대역 인터넷 접속
	교통 및 이동	자동차 소유(소득수준별 가구당 자동차 수), 지역별 5년 이상된 자동차 분포, 대중교통 접근성(도보 13분 내에 버스 이용이 가능한 가구 비율), 교통에 대한 지출(소득별 통근비용 지출), 교통 수준(도로별 차량통행량 지표), 도로 조건 및 사고(도로 조건 및 사망자 수(명/1억km))
	주택	주택 거래량, 평균 주택 가격, 주택 구입 능력, 무주택자 현황, 쉼터 현황, 1인 2주택 가구 및 자기자본 거래, 주택의 특징 및 질, 노후주택 비율, 난방 연료별 주택 현황
	건강 및 의료	건강 및 운동(매일 과일 및 야채 소비 인구 현황, 1주 3회 이상 운동 인구 현황), 질병 및 장애(암 발병 인구 현황, 노인 간병비 보조금 수혜자 현황, 간병인 보조금 수혜자 현황), 의료 관리 전망(지역별 지역보건의 병원(GP), 국민 의료보험료), 의료서비스 접근성
	교육	학습 효과(지역별, 가구소득별 학습효과), 아동센터(Children's Centres) 현황
	농촌 커뮤니티	지역 만족도, 비사교적인 행위와 이타주의에 대한 의견, 지역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도, 지방정부의 수행능력에 대한 의견
경제 복지	소득과 소비	가구소득, 개인소득(개인의 소득 및 세금), 거주지별 및 직장 위치별 연 평균 급여, 정부 혜택(소득 보조 청구 비율), 대출 금융 서비스, 개인의 부(빈부 격차), 소비 및 지출, 기업 매출 및 소득, 경제 성장(총 부가가치의 변화), 1인당 총 부가가치의 변화

표 5-4. The State of Countryside 2010 보고서의 주요 내용(계속)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및 세부항목
경제 복지	고용	고용 수준(산업별, 지역별 고용수준 및 취업률), 실업 수준(실업 수준 및 실업률), 농촌지역에서의 정리해고자 수(산업 분류별), 지역별 구직자 수당 지급 현황, 비경제활동(비경제 활동 인구 현황), 16~18세 구직포기자(NEET) 현황, 농촌 지역에서의 불안전고용 수준
	기업 및 기업가	농촌 기업(산업대분류별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징수), 기업의 성장과 쇠퇴(중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 산업 대분류 별 사업체 변화, 기업의 창업과 폐업(기업의 생성과 소멸), 소규모 신생 기업 현황, 농촌에서의 창업활동(초기 창업활동 현황),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초기 창업활동, 초기 창업 활동의 고성장 전망
토지와 환경	토지이용	토지 피복 및 토지 이용, 농촌 개발(목적별 토지 및 녹지 개발 현황), 기존 개발지역 활용, 농경지 개발, 그린벨트에서의 개발, 침수 가능 지역, 농지 가격
	경지와 산림	농경지 토지 이용(주요 품목별 경지 현황, 지역별 토지이용의 변화), 토지 관리에 대한 농경지 가격의 영향, 비식량작물의 증가, 연구 및 기술 발전, 농경지 및 토지 관리 보조, 환경 관리 측면에서의 농민과 토지 관리 비용, 농업-환경적 의미의 토지 비율, 농업 소득, 농업 총소득 현황 및 전망, 농경지의 비농업분야 활용, 농업, 비농업 분야 등 농업 소득의 구성, 가축 질병, 농민의 의식 변화, 영농 후계에 대한 인식, 산림 및 식재(산림유형별 면적 현황, 새로 조성되거나 보강된 산림 현황)
	환경의 질	에코시스템 서비스, 생물의 다양성(지역별 야생 동식물 조건 현황, 농지, 산림, 해안가 등 지역에 따른 야생 조류 현황), 경계 특성(boundary feature), 대기(대기오염이 기준치 이상인 날짜, 연간 미세먼지 및 오존 수치 현황), 소음, 문화유산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농촌 자연자원으로의 접근(자연보호 지정구역 현황), 자연 환경에 대한 태도, 자원봉사, 자연(환경) 방문(산림자원 방문 현황, 영국 국립공원 방문객 및 지출 현황), 건강과 자연 환경, 자연에 대한 지향
	기후변화	기후 변화(기온 변화), 농촌과 농촌 토지 이용의 영향(산업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농업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대응 방안, 범람위험지역의 주거지 개발 현황, 완화 방안(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지원 현황, 풍력발전 가능 지역 현황)

2.3. 캐나다

캐나다정부는 커뮤니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의 커뮤니티 정보 데이터베이스(CID: Community Information Database)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CID는 커뮤니티, 연구자, 정부의 정책 결정자에게 캐나다 전역의 커뮤니티에 대한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캐나다정부의 농촌사무국(Government of Canada's Rural Secretariat)¹⁸이 주와 준주, 타 정부 부처, 커뮤니티 그룹들과 협력적으로 구축하였다.

CID에서는 다음과 같은 18개 항목과 그 하위의 세부 지표들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표들은 캐나다 통계청의 인구 센서스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조사 주기는 5년으로 현재 1996년, 2001년, 2006년 데이터가 제공된다.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 연도, 지표를 설정하고, 표, 차트, 맵 등 원하는 형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 | | | |
|--------------|-------------|---------|
| • 커뮤니티 유형 | • 이주와 인구이동 | • 협동조합 |
| • 인구 | • 이민과 시민권 | • 인프라구조 |
| • 언어 | • 토착민 | • 소득 |
| • 가구 | • 주택 | • 고용과 일 |
| • 범죄 | • 환경과 지속가능성 | • 교육 |
| • 국내총생산(GDP) | • 사업 및 조직 | • 영농활동 |

데이터는 커뮤니티, 센서스 분할지역(census division), 경제지역(economic region), 주/준주(province/territory)¹⁹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 지역단위로 제공된다(그림 5-2). 대부분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데이터들은 커뮤니티 단위로 제

¹⁸ 캐나다의 농촌사무국(Rural Secretariat)은 캐나다정부가 농촌 및 낙후지역의 커뮤니티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을 수행하도록 1998년 농업·농식품부 내에 설치하였다(www.rural.gc.ca 참조). 특히 농촌 문제에 대해 실무그룹에서 부처 간 정책 조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¹⁹ 캐나다의 행정구역은 10개 주(province) 및 3개 준주(territory)로 구성되어 있다.

공되고 있으며,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의 지역단위로 제공된다. 예컨대, 범죄 데이터는 주 단위로 제공되고, 영농활동 데이터는 경제지역 단위에서만 제공된다.

그림 5-2. 캐나다 CID의 4가지 데이터 제공 지역단위



<13개 주 및 준주>



<288개 센서스 분할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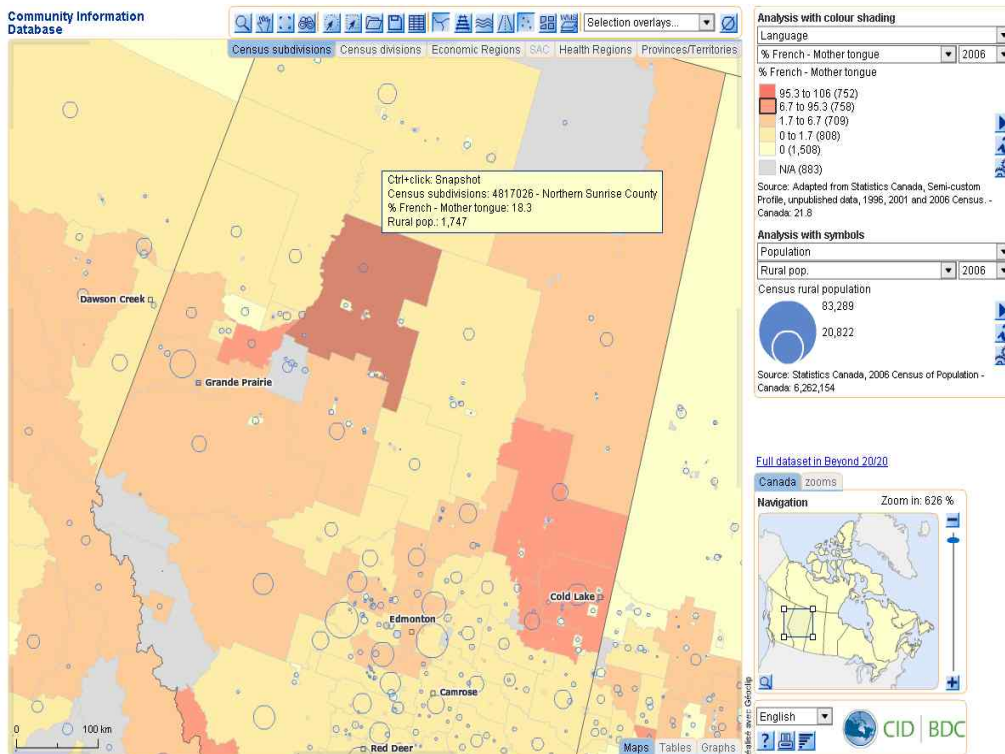
<76개 경제지역>



<5,418개 센서스 분할지역(커뮤니티)>

CID는 시각적으로 쉽게 원하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화형 지도화 (interactive mapping)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예시적으로 <그림 5-3>에서 지도 한 가운데 진한 색으로 선택된 지역은 센서스 분할지역(커뮤니티)인 노던선라이즈 카운티(Northern Sunrise County)로, 이 커뮤니티에서 ‘언어’ 지표 중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 비율이 18.3%, 농촌 인구가 1,747 명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림 5-3. CID 인터넷 인터페이스 예시: 커뮤니티단위 언어 사용자



2.4. 일본

일본 농촌지역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는 ‘농업집락카드’, ‘농림업센서스의 일부로 실시되는 ‘농촌집락조사’, ‘통계로 본 시구정촌의 모습’ 등이 있다. 농업집락카드와 농촌집락조사는 우리나라의 행정리와 유사한 지역단위 통계이고, 통계로 본 시구정촌의 모습은 시구정촌 단위의 통계로 우리나라의 시·군과 유사한 지역단위의 통계이다.²⁰

농업집락카드는 농업집락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조사하는 통계이다. 주로 농업 활동과 관련한 통계들로 구성되어 있고 생활환경과 관련한 항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주민 생활여건과 관련한 조사항목으로는 ‘가장 가까운 DID²¹ 구(旧)시구정촌’과 ‘생활 관련 시설까지의 소요시간’을 조사한다. DID 구시정촌 조사를 통해 농촌집락의 주민이 고차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근의 도시집적지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살펴볼 수 있고, 생활 관련 시설 접근성 조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편의시설로의 접근성을 파악할 수 있다.

농촌집락조사는 5년 주기 농림업센서스의 일부 조사로 실시되는 것으로, 농촌지역사회의 최소 커뮤니티 단위라 할 수 있는 농촌집락을 대상으로 한다. 집락 활동, 농업분야의 공동 활동, 집락생활환경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집락 생활환경에서는 혼주화(混住化)와 전입 상황 외에 생활 관련 시설까지의 소요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조사는 농업분야의 공동 활동과 함께 집회(모임) 현황과 집락 활성화를 위한 활동의 유무, 집락별 마을행사(축제, 전통문화·예

²⁰ 시정촌(市町村)은 우리나라의 시·군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으로 볼 수 있다. 시는 인구가 5만 명 이상이면, 상공업 등 도시적 업태 종사 세대가 전체의 60% 이상이어야 하는 등 도시적 성격을 가지는 지역이다. 정의 인구는 보통 5만 명 이하이고, 그 이상이 되면 시로 승격된다. 촌의 인구는 경우가 다양하지만 대부분 1만 명 이하이다.

²¹ DID(Densely Inhabited District)는 인구집중지역으로, 인구밀도가 4,000명/km² 이상인 지역이 복수로 인접하고, 인구밀도가 5,000명/km² 이상인 지역이다. 일본 전역에 1,389개의 DID가 있다(김용렬·유학렬, 2009).

능 보전 활동 등) 등 집락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활동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통계로 본 시구정촌의 모습은 시구정촌의 생활 실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 단위의 지역 통계자료를 수집·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군통계연보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와 유사한 범위와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활여건과 관련해서는 교육, 문화·스포츠, 거주, 건강·의료, 복지·사회보장 등의 분야에서 제공하는 조사 항목들이 있으나, 주로 관련 시설이나 인력 수를 파악하는 수준이다.

표 5-5. 일본의 농촌지역사회 관련 통계

통계명	소관 부처	조사 주기	공간 단위	생활환경 관련 조사항목	비고
농업집락 카드	농림수산성	5년	농업 집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조건)가장 가까운 DID 구(旧)시구정촌 • (농업집락의 관행)농업, 생활 관련 시설 등의 관리 • (생활환경)생활 관련시설까지의 소요시간 	16개 분야 86개 항목
농촌집락 조사	농림수산성	5년	농촌 집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락 생활환경)생활 관련 시설까지의 소요시간 	3개 분야 10개 항목
통계로 본 시구정촌의 모습	총무성	매년	시구 정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유치원, 초·중·고 학교 수 • (문화·스포츠)공민관 수, 도서관 수 • (거주)비수세식 인구, 쓰레기 계획수립 인구, 도로 및 포장 도로 실연장, 우체국 수, 도시공원 수 • (건강·의료)일반병원 및 일반진료소 수, 치과진료소 수, 의사 및 치과의사 수, 약제사 수 • (복지·사회보장)노인홈 수, 보육소 수, 보육소 입소 대기 아동 수, 보육소 재소아 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수 	11개 분야 100개 항목

주: 생활환경 관련 조사 항목 중 괄호 안은 조사 분야임.

3. 농어촌 통계기반 설계

3.1. 농어촌 통계 풀(pool) 구축

3.1.1. 농어촌 통계 풀(pool)

우리나라의 농어촌 지역 통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어촌 지역의 현실 및 특성을 정확하게 설명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인구 및 가구, 농어업 관련 자료 등은 농어촌 지역을 쉽게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통계는 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시설에 대한 접근성 등과 같이 농어촌을 설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은 없는 경우도 쉽게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어촌을 설명할 수 있는 통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농어촌 통계 풀(pool)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농어촌 통계 풀(pool)은 현 시점에서 농어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시·군단위 이하의 공식 통계로 구축하였다. 농어촌 통계라는 측면에서 농어촌의 특성과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지역단위는 읍·면이라 할 수 있으나, 시·군단위의 통계 역시 제한적으로나마 농어촌의 실상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단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통계의 대부분이 전국단위 또는 시·도단위로 공표되는 상황에서, 정밀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통계의 절대적인 양을 고려할 때 시·군단위 통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모든 통계들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통계와는 거리가 먼 통계들도 있으므로 이 중 농어촌 통계만을 구분하기 위하여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준거로 삼았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현재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거, 농어촌 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법정·종합계획이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은 보건·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경제활동 다각화, 문화·여가 여건 향상, 환경·경관 개선, 지역발전 역량 강화 등 총 7개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구분에 의거하여 농어촌 통계의 풀(pool)을 구축하면 <표 5-6>과 같다.

농어촌 통계 풀(pool)은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개 분야와 더불어, 기초통계 분야와 농어업 분야를 구분하여 다루어 총 9개 분야, 7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통계가 가장 많은 분야는 보건·복지 증진 분야로서 21개 항목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등의 분야에서 비교적 통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어촌 경제활동 다각화, 문화·여가 여건 향상,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지역발전 역량 강화 등의 분야에서는 통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풀(pool)의 주요 출처를 살펴보면 지자체 통계연보가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밖에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 국가통계기반 또는 각 부처의 통계가 지자체 통계연보에 비하여 읍·면 또는 시·군별 구분이 아직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서비스시설 접근성 등의 정성적인 내용을 정량화하는 과정이 미비함을 의미한다.

표 5-6. 농어촌 통계 풀(pool)

분 야	통계명	통계 출처	공표 주기	공표 단위
기초통계 분야 (8)	출생아·사망자 수	인구동향조사	1년	읍·면·동
	농촌 내 국제결혼 현황	인구동향조사	1년	시·군·구
	외국인 근로자 현황	지자체 외국인주민현황	1년	시·군·구
	전입자·전출자 수	인구이동통계	1년	읍·면·동
	총 인구 수 및 구성	주민등록인구	1년	시·군·구
	총 가구 수 및 구성	주민등록인구	1년	시·군·구
	인구 부양 구조	주민등록인구	1년	시·군·구
	통근/통학 인구	인구주택총조사	5년	시·군·구

표 5-6. 농어촌 통계 풀(pool)(계속)

분 야	통계명	통계 출처	공표 주기	공표 단위
보건복지 증진 (21)	국민연금 가입자 수	국민연금관리공단	1년	시·군·구
	국민연금보험료 평균 부담액 /지원액	국민연금관리공단	1년	시·군·구
	건강보험 가입자 수	건강보험통계	1년	시·군·구
	건강보험료 평균액/지원액	건강보험통계	1년	시·군·구
	보건·의료기관 및 인력 현황	지자체 통계연보	1년	읍·면·동
	의료기관 및 인력 현황	지자체 통계연보	1년	읍·면·동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소 현황	지자체 통계연보	1년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지자체 통계연보	1년	읍·면·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자체 통계연보	1년	읍·면·동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지자체 통계연보	1년	읍·면·동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	건강보험관리공단	매월	시·군·구
	보육시설 현황	지자체 통계연보	1년	읍·면·동
	사회복지시설 현황	지자체 통계연보	1년	읍·면·동
	여성복지시설 현황	지자체 통계연보	1년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현황	전국다문화가족지원사업단	1년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현황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1년	시·군·구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1년	시·군·구
	장애인 등록 현황	지자체 통계연보	1년	읍·면·동
	주요 사망 원인	사망원인통계	1년	시·군·구
	생활비 원천별 고령자 (65세 이상)	인구총조사	5년	시·군·구
의료시설 거리별 마을 수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5년	읍·면·동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10)	각급 학교 및 학생 현황	교육통계	1년	시·군·구
	각급 교원 현황	교육통계	1년	시·군·구
	진학률	사회조사	1년	시·군·구
	사설학원 현황	교육통계	1년	시·군·구
	유치원 현황	교육통계	1년	시·군·구
	학급별 시설 현황	교육통계	1년	시·군·구
	학교급식 실시 현황	교육통계	1년	시·군·구

표 5-6. 농어촌 통계 풀(pool)(계속)

분 야	통계명	통계 출처	공표 주기	공표 단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10)	국민교육 수준	인구주택총조사	5년	시·군·구
	현 거주지/통학지별 통학 인구	인구주택총조사	5년	시·군·구
	사설학원 거리별 마을 수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5년	읍·면·동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11)	금융기관 현황 및 분포	지자체 통계연보	1년	읍·면·동
	도로 포장률	e-지방지표	1년	시·군·구
	상수도 보급률	상수도통계	1년	시·군·구 (시·군·구별 읍·면·동 가능)
	하수도 보급률	하수도통계	1년	읍·면·동
	용도별 전력 사용량	지자체 통계연보	1년	시·군·구
	자동차 보유 현황	지자체 통계연보	1년	시·군·구
	우편시설 현황	지자체 통계연보	1년	읍·면·동
	주된 대중교통 수단, 횡수별 마을 수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5년	시·군·구
	주된 이용 교통수단	인구주택총조사	5년	시·군·구
	주택시설 현황	인구주택총조사	5년	시·군·구
주택 점유 형태	인구주택총조사	5년	시·군·구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4)	농공단지 및 농촌특산단지 조성 현황	농식품부 내부자료	1년	시·군·구
	체험·관광기반 조성 현황	농식품부 내부자료	1년	시·군·구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전국사업체조사	1년	시·군·구
	농어촌관광 운영현황별 마을 수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5년	시·군·구
문화·여가 여건 향상 (4)	녹지율	통계연보	1년	읍·면·동
	도서관 현황	국가도서관통계 시스템	수시	시·군·구
	문화공간 현황(공연시설, 전시 실, 지역 문화복지시설 등)	지자체 통계연보	1년	시·군·구
	체육시설 현황(공공 체육시설, 등록 체육시설 등)	지자체 통계연보	1년	시·군·구

표 5-6. 농어촌 통계 풀(pool)(계속)

분 야	통계명	통계 출처	공표 주기	공표 단위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2)	생활폐기물 매립지 현황	지자체 통계연보	1년	시·군·구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지자체 통계연보	1년	시·군·구
지역발전 역량 강화 (3)	마을 홈페이지 구축 마을 수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5년	읍·면·동
	법인 조직 현황별 마을 수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5년	시·군·구
	작목반 조직 현황별 마을 수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5년	시·군·구
농어업 (9)	경지 면적	농업면적조사	1년	시·군·구
	농업용 기구 및 기계 보유	지자체 통계연보	1년	읍·면·동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지자체 통계연보	1년	시·군·구
	농가 및 농가인구	농림어업총조사	5년	읍·면·동 (농업조사는 시·군·구(1년))
	경지 규모별 농가	농림어업총조사	5년	읍·면·동
	영농 전문성(전업, 겸업 농가)	농림어업총조사	5년	읍·면·동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수	농림어업총조사	5년	시·군·구
	연령별 농가인구	농림어업총조사	5년	읍·면·동
영농 지속성(영농 후계 가능 여부)	농림어업총조사	5년	시·군	

3.2. 농어촌 통계 풀(pool) 보완

시·군단위 또는 읍·면단위로 구축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농어촌 통계 항목은 총 72개 정도이다. 농어촌 통계의 대다수 항목이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읍·면·동 삼분)의 통계이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의 농어촌 통계에 대한 전문가 수요조사를 통해서도 농어촌 통계의 문제가 잘 나타나 있다(표 5-7). 김용

렬·김경덕(2008)은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통계는 인구와 소득/소비, 농림수산업 등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통계로서 소득/소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시설 접근성, 생활환경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공간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 역시 소득 통계와 서비스시설에 대한 접근성, 지역공동체(커뮤니티) 관련 통계의 보완 및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표 5-7. 농어촌 통계 수요조사

구분	사용빈도	개선 필요 통계	문제점
1위	인구	소득과 소비	통계 부재
2위	소득/소비 농림수산업	서비스시설 접근성	신뢰성 미흡 활용성 미흡
3위	토지이용	생활환경	시계열자료 부족 가공/분석 통계 부족

자료: 김용렬·김경덕(2008)의 내용을 재구성함.

□ 기존 통계의 보완

농어촌 통계기반 확충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기존 통계의 활용성이 매우 낮은 데 있다. 이는 앞서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 및 소비, 서비스시설 접근성, 정성적 특성을 정량화한 자료 등 주요 통계들이 대부분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의 통계인 이유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들의 공표 지역단위를 최소한 시·군단위로 보완한다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농어촌 통계 풀(pool) 구축이 가능하다. 실제로 공표되는 지역단위를 시·군으로 보완함으로써 구할 수 있는 농어촌 통계기반은 총 92개 항목으로 현재 가능한 농어촌 통계 풀(pool)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능한 농어촌 통계 풀(pool)이 시설의 현황 등 정량적인 내용이 대부분인 반면, 보완 가능한 통계들은 시설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 서비스시설

로의 접근성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내용적으로도 크게 보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8).

표 5-8. 농어촌 통계 풀(pool)의 보완

분야	통계 항목	주요 내용	주요 출처
기초통계	2	인구 추계, 기혼부인당 평균 출생아 수 등	인구주택총조사
보건·복지 증진	25	사회보험료에 대한 인식,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안전 및 복지 수준 만족도,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및 만족도 등	사회조사,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16	학교 교육 만족도, 학교 생활 만족도, 교육비에 대한 인식 및 부담, 사교육비 및 참여율, 방과후학교 참여율, 자녀 교육여건 만족도 등	사회조사, 사교육비조사,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6	교통문제, 주택 만족도, 기초생활여건 만족도, 이주 의사 등	사회조사,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농어촌의 경제 활동 다각화	14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 인구, 일에 대한 만족도, 취업률 및 실업률, 소득 및 소비 만족도,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농어가 총소득, 월평균 가구 소득 및 분포 등	경제활동인구조사, 농어가경제조사,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문화·여가 여건 향상	11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주요 여가활동, 사회단체 참여, 필요한 문화·여가시설, 근로시간 등	사회조사,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6	현재 체감 환경, 환경오염 방지 노력,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인식, 생활환경 쾌적성 만족도 등	사회조사,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지역발전 역량 강화	12	평생교육기관 현황, 사회교육 참여, 지역 생활 만족도, 마을공동체 참여 의식 등	사회조사,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농촌생활지표조사
계	92		

□ 신규조사의 필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통계의 가장 큰 문제는 통계의 부재에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통계는 시설의 현황 등 정량적 통계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처럼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나 만족도 등 정성적인 내용을 다루는 통계가 매우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과 녹색 저탄소 등 최근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급격한 변화들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영국의 경우 「The State of Countryside」를 통하여 최근의 이슈들에 대하여 농촌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통계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통계들을 보완하기만 해서는 농어촌의 변화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통계의 보완 외에 신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신규 통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통계 조사 시 추가적으로 조사하거나, 기존의 내부자료를 검토하여 시·군 또는 읍·면·동 단위로 생산하는 방안, 둘째,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서 해당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 통계에 대한 원자료를 가공 및 재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하는 방안이다. 특히 세 번째 방법은 자료의 재해석을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많은 통계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향후 보다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4절의 활용방안 참조). 위와 같은 세 가지 방안에 따라 신규로 구축할 수 있는 통계는 <표 5-9>와 같다.

신규로 구축하는 데이터는 총 31개 항목이며, 이는 중앙정부에서 추가로 구축해야 할 통계 17개, 지자체에서 행정조사 및 자료를 통해 구축해야 할 통계 12개, 기존 데이터의 가공을 통해 신규 생산해야 할 통계 2개로 구분할 수 있다. 분야별로는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분야가 9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5-9. 농어촌 통계 신규 조사

분야	통계 항목	통계 내용	구축방안	공표단위
기초통계	3	귀농/귀촌 인구 현황	행정자료	읍·면·동
		전문화된 전업농가	행정자료	읍·면·동
		독거노인 수	행정자료	읍·면·동
보건·복지 증진	5	건강관리실 현황	행정자료	읍·면·동
		농가도우미 이용 현황 및 지원 단가	행정자료	시·군
		여성농업인센터 현황	행정자료	시·군
		정신건강지수	가공	시·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4	방과후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	정부	시·군
		상치교사 현황	정부	시·군
		학교 교육기회에 대한 만족도	정부	시·군
		사교육의 질(지수화)	가공	시·군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4	주택의 신·개축 현황	행정자료	읍·면·동
		주택 가격	정부	읍·면·동
		빈집 수	행정자료	읍·면·동
		교통여건에 대한 만족도	정부	시·군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9	도농교류사업 참여 현황	정부	시·군
		산림휴양시설 현황	정부	시·군
		소규모 지역단위 종합개발 현황	행정자료	시·군
		지역소득	정부	시·군
		가구소득	정부	시·군
		가구소득 출처	정부	시·군
		가구 평균 지출액	정부	시·군
		창업/폐업 사업체 수	정부	시·군
토지 및 농지 가격	정부	시·군		
문화·여가 여건 향상	2	지역문화예술 행사 현황	행정자료	시·군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접근성	정부	시·군

표 5-9. 농어촌 통계 신규 조사(계속)

분야	통계 항목	통계 내용	구축방안	공표단위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3	농지구입 후 이용 실태	정부	시·군
		탄소배출량	정부	시·군
		어메니티에 관한 통계	정부	시·군
지역발전 역량 강화	1	NGO 단체 및 종사자 현황	행정자료	시·군
계	31			

주: 행정자료는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통계이며, 가공은 연구 기관에서 해당 통계에 대한 원자료를 가공하여 생산이 가능한 통계, 정부는 중앙 정부에서 통계조사 시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시·군 또는 읍·면·동 단위로 생산해야 하는 통계를 의미함.

한편 본 연구의 목적이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촌 정책 마련 및 추진 시 활용 가능한 농어촌 통계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며, 특히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계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신규 조사가 필요하다.

표 5-10.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신규 조사

부문	관련항목	통계명	필요 단위	신규 조사 방안
주거	난방	펠릿보일러보급사업 결과	시·군	정부
		태양열보일러설치 현황 (그린홈100만호사업)	시·군	정부
	공동시설 프로그램	마을회관/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황	읍·면·동	행정자료
		마을회관/경로당 상설프로그램 현황	읍·면·동	행정자료
교통	대중교통 운행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행 마을	시·군	행정자료
	여객선 운항	도서지역과 본도 여객 운항 일정	시·군	정부
		도서지역 거주민 운임지원 현황	시·군	행정자료
	인도 설치	농어촌 주요 생활도로 정비 시 인도 구분 계획 및 결과	시·군	행정자료

표 5-10.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신규 조사(계속)

부문	관련항목	통계명	필요 단위	신규 조사 방안
교육	유치원/ 초·중학교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에 의거한 통폐합시 통학수단 제공 현황	시·군	정부
	고등학교	우수고교 및 기숙형고교 선정 현황	시·군	정부
	폐교 요건	폐교 활용에 관한 공청회 등의 회의실시 현황	시·군	정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읍·면·동별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율	읍·면·동	정부
	교육발전 위원회	시·군 교육발전위원회 조직 현황	시·군	정부
보건 의료	순회방문	보건직원 정기 순회방문프로그램 현황	행정리	행정자료
사회 복지	노인	취약계층 노인 현황	시·군	행정자료
		노인돌봄 기본/종합서비스 대상자 현황	시·군	행정자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현황	시·군	행정자료
		지자체 자체 노인 재가서비스 대상자 현황	시·군	행정자료
	아동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시·군	정부
응급	응급 서비스	현장 도착시간대별 출동 현황	읍·면·동	정부
		119구급지원센터 설치 현황	읍·면·동	
	도서·벽지 서비스	헬기 응급의료장비 설치 현황	읍·면·동	정부
		EMS전용헬기 운영 현황	읍·면·동	정부
	소방 서비스	현장 도착시간대별 출동 현황	읍·면·동	정부
	도난방지	방범용 CCTV 현황	행정리	정부
해경청 CCTV 현황		행정리		
경찰 서비스	112 신고 후 출동 시간	읍·면·동	정부	
문화 여가	독서	읍·면별 도서 대출, 반납 방안 운영 여부	시·군	행정자료
	문화시설/ 프로그램	지방문화원 공연프로그램 현황	시·군	정부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계절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읍·면·동	정부
		지자체 자체의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개 최 현황	읍·면·동	행정자료
정보 통신	초고속망	광대역 통합망 가입자 현황	시·군	정부

4. 농어촌 통계기반 활용방안

4.1. 농어촌 통계기반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

농어촌 통계는 앞서 제시한 농어촌 정책의 추진 과정 전반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농어촌 정책의 중요한 인프라이다. 통계란 이미 발생한 다양한 현상을 수치화한 것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현 상황에 대한 분석에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주로 농어촌의 현실 진단을 위한 농어촌 통계기반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농어촌의 체계적 현실 진단을 위해서는 농어촌 통계기반이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도시와 농어촌 간 실태의 비교·진단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농어촌은 도시와 다른 특성들을 보이기 마련이기에 모든 측면에서 도시와 농어촌을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역시 국민들의 모습살이 공간이란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도-농 구분에 상관 없이 갖추어야 할 삶의 조건들이 있기 마련이며, 이러한 기본적 조건의 비교·진단은 도-농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이나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농어촌 통계는 농어촌 지역 간 실태의 비교·진단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농어촌 내부에도 도-농 간 차이만큼이나 다양한 지역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군지역은 전형적인 농어촌의 특성을 보이는 반면, 도농복합시는 농어촌의 특성과 함께 도시적 특성을 비교적 많이 갖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에 기반한 농어촌 지역 간 실태의 비교·진단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농어촌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

셋째, 농어촌 통계는 농어촌 공간이 담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때로는 종합적으로, 때로는 주요 부문별로 분석·진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이란 종합적 실체이기에 농어촌 통계 역시 농어촌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

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부문에 대한 실태를 분석·진단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앞서 언급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농어촌 통계기반 활용의 예들을 제시한다. 우선 각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도-농 간 비교 및 농어촌 지역 간 비교·분석이 가능한 활용 사례이다. 이러한 지역 간 비교를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역발전지수’,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농어촌의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생활기반지수’, 농어촌 정책의 비교적 새로운 이슈 분야를 중심으로 농어촌 통계를 지수화한 ‘창조지역지수’,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계획’의 7개 부문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한 ‘삶의 질지수’를 농어촌 통계기반의 활용 사례로 제시한다.²²

4.2. 농어촌 통계기반 활용 예시

4.2.1. 농어촌 지역발전지수(Regional Development Index)

지역발전지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지수로 주로 기초생활권의 삶의 질 여건 진단, 계획 목표의 정립, 목표에 따른 정책 구상, 목표 대비 성과 측정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역발전지수를 보완·수정하는 한편, 2009년과 2010년에는 지역발전위원회 및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동 지수를 활용한 기초생활권 실태 분석을 실시해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발표하였다.

²² 지표와 지수는 의미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전자의 경우는 특정 현상을 나타내는 수치(숫자) 자체를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이를 특정 기준(점)에 의해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농어촌 통계기반 활용방안의 사례는 측정(관찰)된 값이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의 몇 배 정도 떨어져 있는가를 표준화한 확률변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지표라기보다는 지수라 할 수 있다.

지역발전지수는 농어촌의 전반적인 발전 실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지수이다. 동 지수는 세부적으로는 생활서비스지수, 지역경제력지수, 삶의 여유공간지수, 주민활력지수로 구분되는데, 각 세부 지수는 인간의 모듬살이를 위한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터를 의미한다. 지역발전지수는 <표 5-11>과 같이 대부분 구득 가능한 공식통계를 기반으로 작성한 20개 지표로 구성된다.

표 5-11. 지역발전지수(RDI)의 구성과 세부내용

지수 (지표 수)	부문	지표	단위	세부내용
생활서비스 (9)	기초생활 여건	주택신규화	%	20년 미만 주택 비율
		식수보급현대화	%	상수도 보급률
		하수처리현대화	%	하수도 보급률
	교육여건	공교육기반	개/km ²	1km ² 당 학교 수(초·중·고)
		사교육기반	개/천명	인구 1천명당 사설학원 수
	보건·복지 여건	의료서비스 질	명/천명	인구 1천명당 의료인 수
		의료시설기반	개/천명	인구 1천명당 병상 수
		아동복지기반	개/천명	영유아(만6세 미만) 1천명당 보육시설 수
		노인복지기반	개/천명	고령인구(65세 이상) 1천명 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노 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지역경제력 (4)	산업기반	사업체기반	개
고용기회			%	15세 이상 인구 대비 사업체 종사자 수
소득수준		소득수준	천원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지자체 재정		재정기반	%	재정자립도

표 5-11. 지역발전지수(RDI)의 구성과 세부내용(계속)

지수 (지표 수)	부문	지표	단위	세부내용
삶의 여유공간 (4)	녹색휴양 기반	녹색휴양공간	천m ²	1인당 공원면적
	녹지기반	녹지확보율	%	녹지율(임야, 염전, 하천, 제방, 구거, 유지면적/토지면적)
	문화체육 기반	문화시설	개/천명	인구 1천명당 영화관, 공연 장, 전시실, 시·군민회관, 도 서관 수
		체육시설	개/천명	인구 1천명당 체육시설 수
주민활력 (3)	인구변화	인구증가율	%	연평균 인구 증가율 (최근 5년간)
	인구구조	고령화율	%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인구활력	출생률	%	해당 연도 중앙인구 1천명 대 비 출생자 비율(組出生率) * 중앙인구는 7월 인구 기준

자료: 송미령 외, “2010 지역발전지수(RDI) 개발”, 2010(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 자료).

지역발전지수는 20개 각 지표별, 12개 부문별, 4개 지수별로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의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유형(예: 일반시·도농복합시·군)에 따라 그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 실태를 지역별, 그리고 지역유형별로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을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으로 유형화할 경우, 지역유형별 생활서비스지수, 지역경제력지수, 삶의여유공간지수, 주민활력지수, 그리고 종합지수(RDI)를 <표 5-12>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도-농 간 또는 지역유형 간 종합적인 발전 격차뿐만 아니라 개별 지표별 격차까지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의 실태를 다차원적으로 분석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발전지수의 각 지표는 농어촌 서비스기준과 함께 삶의 질 향상 계획의 부문별 성과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12. 지역별 지역발전지수(RDI)

지역구분	생활서비스 지수	지역경제력 지수	삶의여유 공간지수	주민활력 지수	RDI (종합지수)
군지역	3.589	3.528	4.108	3.533	3.672
도농복합시	4.301	4.416	3.954	4.435	4.275
일반시	4.828	4.790	3.702	4.726	4.580
전체 평균	4.000	4.000	4.000	4.000	4.000

자료: 송미령 외, “2010 지역발전지수(RDI) 개발”, 2010(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 자료).

4.2.2. 농어촌 기초생활기반지수

생활편의기반지수란 201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특정 범위의 공간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 영위를 지지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기초적인 서비스 및 관련 시설의 분포를 지수화한 것이다. 여기서 특정 공간 범위는 근린(近隣)을 의미하며, 도보 및 자전거를 이용하여 쉽게 해당 서비스 및 시설에 도달할 수 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범위를 의미한다. 기초적인 서비스 및 시설이란 주로 근린생활시설을 의미하는데, 특히 사행성 또는 위락성 서비스 및 시설은 제외하고, 주로 1종 근린생활시설 항목으로 구성된다.

생활편의기반지수는 인간의 일상생활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생활의 기반 부문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근린에서 생활의 편의를 돕는 분야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그 결과 세부적으로 의생활부문, 식생활부문, 주거생활부문, 보건·의료부문, 미용위생부문, 운동여가부문을 구성된다. 동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모두 12개로 구성되며, 각각의 지표는 동일한 단위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5-13).

표 5-13. 생활편의기반지수의 구성과 세부내용

부문	지표	세부내용	단위	통계데이터
의생활 부문	의류구매 (소매)여건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개/km ²	사업체기초통계 (2008)
		한복 소매업		
		남녀용 정장 소매업		
		유아용 의류 소매업		
		내의 소매업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신발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식생활 부문	식료품구매 (소매)여건	슈퍼마켓	개/km ²	사업체기초통계 (2008)
		체인화 편의점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그외 기타 종합 소매업		
		곡물 소매업		
		육류 소매업		
		수산물 소매업		
		과실 및 채소 소매업		
		빵 및 과자류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기타 식료품 소매업		
		음료 소매업		
	휴게음식점 이용여건	제과점업	개/km ²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분식 및 김밥 전문점		
비알콜 음료점업				

표 5-13. 생활편의기반지수의 구성과 세부내용(계속)

부문	지표	세부내용	단위	통계데이터
주거 생활 부문	주택여건	건축년한 20년 미만 주택 비율	%	인구주택총조사 (2005)
	상수도여건	상수도 보급율	%	상수도통계(2008)
	하수도여건	하수도 보급률	%	하수도통계(2008)
보건 의료 부문	의료용품구매 (소매)여건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개/km ²	사업체기초통계 (2008)
		의료용 기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의료기관 이용여건	일반 병원	개/km ²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일반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유사 의료업				
미용 위생 부문	이미용서비스 이용여건	이용업	개/km ²	사업체기초통계 (2008)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업		
	위생청소서비스 이용여건	욕탕업	개/km ²	
가정용 세탁업				
운동 여가 부문	운동여가용품 (소매)여건	악기 소매업	개/km ²	사업체기초통계 (2008)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문구용품 소매업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표 5-13. 생활편의기반지수의 구성과 세부내용(계속)

부문	지표	세부내용	단위	통계데이터
	운동시설 이용여건	축구장	면/km ²	공공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 중 간이운동시설(2009)
		배구장		
		농구장		
		씨름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운동광장		
		베드민턴장		
		체조장		
		로울러장		
		수영장		
		기타 동네체육시설		

자료: 송미령 외, “2010 특수지표②: 생활편의기반지수”, 2010(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 자료).

생활편의기반지수는 지역발전지수 내 생활서비스지수나 ‘삶의 질 향상계획’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부문을 보다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어촌의 생활기반이나 편의시설의 분포 등을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개별 시·군 간 및 지역유형 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동 지수를 활용하면 <표 5-14>와 같이 군, 도농복합시, 일반시 간 생활편의기반의 종합적인 격차를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생활 관련 서비스 공급의 실태, 식생활 관련 서비스 공급 실태, 주거생활 관련 서비스 공급 실태,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공급 실태, 미용·위생 관련 서비스 공급 실태, 운동·여가 관련 서비스 공급 실태 등을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다.

표 5-14. 지역별 생활편의기반지수

지역구분	의생활 부문	식생활 부문	주거생활 부문	보건·의 료 부문	미용위생 부문	운동여가 부문	생활편의 기반지수 (종합)
군지역	3.644	3.643	3.368	3.650	3.646	3.636	3.598
	(-2.125)	(-2.119)	(-1.796)	(-2.126)	(-2.121)	(-2.167)	(-2.076)
도농복합시	3.813	3.818	4.511	3.801	3.812	3.813	3.928
	(-1.957)	(-1.944)	(-0.653)	(-1.975)	(-1.956)	(-1.990)	(-1.746)
일반시	5.769	5.762	5.164	5.776	5.767	5.803	5.674
전체 평균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주: 괄호는 일반시와 군 또는 도농복합시 간 격차를 의미함. 단, 해당 수치들은 표준화 점수로 표현되어 있어 이것이 지역 간의 절대적인 격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자료: 송미령 외, “2010 특수지표②: 생활편의기반지수”, 2010(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 자료).

4.2.3. 농어촌 창조지역지수

창조지역지수는 2010년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 작업을 통해 개발한 지역 평가 지수이다. 동 지수는 각 지역 내에 잠재된 자원의 가치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자구적 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창조산업, 창조기반, 창조자원, 창조인력의 4개 부문 14개의 지표로 구성되는데, 이들 지표는 지역 내의 사회·문화적 활력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잠재력을 대변하고 있다 (표 5-15).

표 5-15. 창조지역지수의 구성과 세부내용

부 문	지 표	기준연도	세부내용
창조 산업	창조산업 종사자	2008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 수 기준
	창조산업 특화도	2008	
창조 기반	문화시설	2008	면적(100km ²)당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수
	재정 투자	2010	시·군별 축제 및 행사경비 지출 금액 (인구 대비)
	지역언론	2010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주간지 수
창조 자원	지리적표시 농특산물	2010	농식품부 지리적표시제 등록 농특산물 수
	품질인증 전통식품	2010	농식품부 전통식품 품질인증제품 수
	지역축제	2008	문화부 집계 지역축제 수
	문화재	2008	면적(100km ²)당 문화재(유형문화재) 수
창조 인력	전통식품 명인	2010	농식품부 지정 전통식품 명인 수
	명장(공예 분야)	2010	노동부(산업인력공단) 지정 공예 분야 명인 수
	신지식농업인	2010	농식품부 신지식농업인 수
	무형문화재	2008	국가 및 도 지정 무형문화재 수
	지역단체	2010	지역발전협의회 활동

자료: 송미령 외, “2010 특수지표①: 창조지역지수”, 2010(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 자료).

지역별로 창조지역지수를 분석한 결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상위권 지역이 분포하는 지역발전지수나 생활편의기반지수와 달리 농어촌 지역도 상당수가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선, 담양, 여주, 순창, 하동 등 상당수의 군지역이 창조지역지수 상위 50위권 안에 포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내생적 발전의 가능성을 높이는 창조자원, 창조인력 부문에서 군지역의 약진이 돋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리적표시제 등록 품목이 많은 보성군과 울릉군, 장류 등 전통식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다수 보유한 순창군, 다량의 문화재가 분포하는 강화군, 전통식품 명인을 다수 보유한 담양군과 하동군, 신지식농업인이 많이 거주하는 청원군 등이 이에 해당한다.

4.2.4. 농어촌 삶의 질지수

농어촌 삶의 질지수는 ‘삶의 질 향상계획’을 구성하는 7개 부문별로 대표 지표를 구성하여 지역 간 삶의 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또는 부문별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앞서 제시한 지역발전지수(RDI)가 농어촌의 현실을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수라면, 삶의 질지수는 ‘삶의 질 향상정책’이라는 특정 정책 관점에서 농어촌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수이다. 특히 삶의 질 향상이 주민의 생활 여건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삶의 질지수는 이러한 여건을 나타낼 수 있는 지수라 할 수 있다.

‘삶의 질 향상계획’의 성과지표들은 지역적으로 주로 농어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도농 간 비교에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또 지역별로 성과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정부의 공식 공표통계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도농 간 비교 및 농어촌 지역 간 비교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의 삶의 질지수는 <표 5-16>과 같이 정부나 관계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통계를 활용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또한 삶의 질지수는 앞서 제시한 지역발전지수, 기초생활기반지수, 창조지역지수의 주요 지표들을 포괄하여, ‘삶의 질’이 지니는 주민의 생활 여건과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여건이라는 복합적·종합적 성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기초생활권 163개 시·군별로 삶의 질지수를 작성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를 지역유형별로 제시한 것이 <표 5-17>이다. 표에 제시된 삶의 질지수와 각 부문별 지수는 실측값을 표준화점수(Z-score)로 전환한 후 음수(-)를 제거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4점을 더하여 ‘조정 표준화점수’를 도출하고, 이를 다시 지역유형별로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한 것이다. 그 결과 농어촌 시·군의 삶의 질지수 및 부문별 지수는 모두 기초생활권 시·군의 평균(4.000)에 못 미치고 있다. 농어촌이 도시(일반시)에 비해 모든 측면에서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표 5-16. 삶의질지수의 구성과 세부내용

부 문	지 표	세부내용	단 위	기준연도
보건·복지 증진	의료서비스 기반	인구 1천 명당 의료인 수	의료인/천명	2008년
	의료용품 구매 여건	면적당 의약품 및 의료용품, 의 료용 기구 소매업 분포	개/km ²	2008년
	아동복지 기반	영유아 1천 명당 보육시설 수	개/천명	2008년
	노인복지 기반	고령인구 1천 명당 노인여가 복지시설 수	개/천명	2008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공교육 기반	면적당 초·중·고교 수	개/km ²	2008년
	교육성과 수준	대학 진학률(전문대 포함)	%	2010년
	평생교육 기반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분포	개/km ²	2009년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주택신규화	총 주택 수 대비 20년 미만 신 규주택 수 비율	%	2005년
	상수도 보급율	주민등록 인구 대비 지방 및 광 역상수도 보급률	%	2008년
	의생활 및 식생활 구매 여건	면적 당 의류 구매 소매점 및 식 료품 구매 소매점 분포	개/km ²	2008년
농어촌 경제활동 다각화	사업체 기반	총 사업체 수	개	2008년
	고용기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사업체 종사자 수	%	2008년
	지자체 재정	지자체 재정자립도	%	2008년
	관광산업 활성화	주요 관광지 연간 방문객 수	명	2009년
문화·여가 여건 향상	문화재 기반	문화재 수(국가 및 시·도지정 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 재)	개	2008년
	문화시설 기반	면적당 영화관, 공연장, 전시실, 시민회관, 도서관 수	개/km ²	2008년
	체육시설 기반	면적당 공공체육시설(동네체육 시설) 중 간이운동시설 면	면/km ²	2009년

표 5-16. 삶의질지수의 구성과 세부내용(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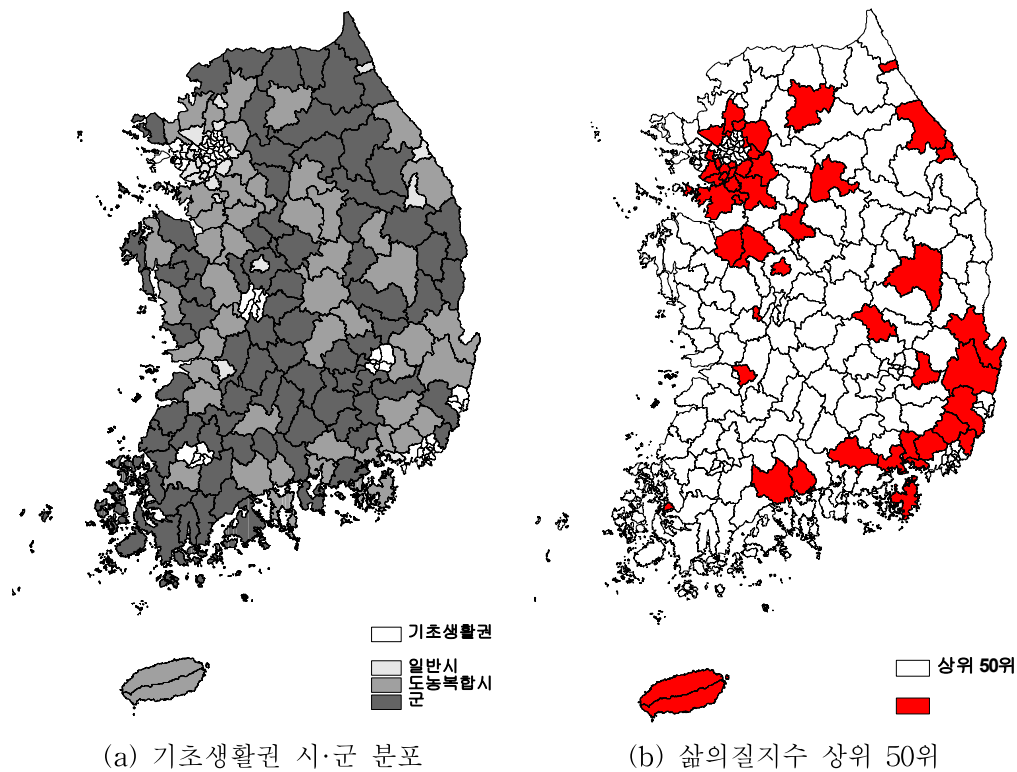
부 분	지 표	세부내용	단 위	기준연도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하수 처리율	총 인구 대비 공공하수처리 구역 인구 비율	%	2008년
	녹색휴양 기반	1인당 공원 면적	천㎡/인	2008년
	녹지 기반	녹지율(전체 면적 대비 임야, 염전, 하천, 제방, 구거, 유지면 적 비율)	%	2008년
지역발전 역량강화	정보통신 역량	광대역통합망 이용률 (광대역통합망(BcN) 가입자 수/ 전체 인구)	%	2010년
	고급인력 기반	내국인 인구 대비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 수 비율	%	2005년

주: 광대역통합망 이용률 자료는 2010년 10월 기준 자료임. 그런데 동년 7월 마산·창원·진해 3개 시가 통합하여 통합창원시를 구성한 이유로, 동 자료는 2008년, 2009년 기준의 다른 자료들과 시·군 구분을 같게 하기 위해 통합창원시의 측정값을 기존의 마산·창원·진해 3개 시에 동일하게 적용함.

표 5-17. 지역별 삶의질지수

지역구분	요약	부문별 지수							삶의질 지수
		보건 복지	교육 여건	기초생활 인프라	경제 활동	문화 여가	환경 경관	지역발전 역량	
전체 시·군 (163)	평균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표준 편차	0.460	0.618	0.809	0.682	0.665	0.497	0.902	0.474
일반시 (23)	평균	4.506	4.740	5.332	4.544	4.980	4.013	5.132	4.750
	표준 편차	0.768	1.022	0.794	0.644	1.118	0.388	1.253	0.541
군 (86)	평균	3.875	3.720	3.471	3.598	3.718	3.967	3.524	3.696
	표준 편차	0.351	0.349	0.428	0.410	0.216	0.565	0.558	0.206
도농복합시 (54)	평균	3.984	4.130	4.275	4.409	4.032	4.047	4.275	4.165
	표준 편차	0.259	0.394	0.376	0.647	0.458	0.422	0.578	0.274
농어촌 시·군 (140)	평균	3.917	3.878	3.781	3.911	3.839	3.998	3.814	3.877
	표준 편차	0.322	0.417	0.566	0.648	0.364	0.514	0.672	0.327

그림 5-4. 삶의질지수 상위 50위 지역



농어촌 시·군의 경우 기초생활 인프라 부문, 지역발전 역량 부문, 문화·여가 부문의 순으로 상대적 낙후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어촌 시·군을 군지역과 도농복합시로 구분하여 보면 삶의 질 실태가 상이하다. 군지역의 경우 기초생활 인프라 부문 및 지역발전 역량 부문과 함께 경제활동 부문의 상대적 낙후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농복합시는 보건·복지 부문, 문화·여가 부문, 환경·경관 부문의 상대적 낙후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시의 경우는 모든 부문별 지수가 평균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경관 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생활 인프라 부문, 지역발전 역량 부문, 문화·여가 부문의 상대적 우위가 삶의 질 측면에서 도시(일반시)가 지니는 미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일한 지역유형 내에서의 지역 간 편차는 농어촌 시·군보다는 도시(일반시)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삶의질지수가 높은 상위 50위 지역에는 21개 일반시와 26개 도농복합시가 포함되고 있으며, 군지역은 단 3곳만 포함되었다. 반면, 하위 50위에는 46개 군지역과 3개 도농복합시가 포함되고 있으며, 일반시는 해당하는 곳이 전혀 없다(<부록 7> 참조). 같은 농어촌 지역이라지만 군지역과 도농복합시 간 삶의 질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삶의질지수는 특히 기초생활 인프라 여건, 교육 여건, 경제활동 여건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기초생활 인프라는 물론이고 지역의 교육과 경제 여건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인 것이다. 한편 기초생활 인프라와 경제활동 여건은 교육 여건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교육 여건은 기초생활 인프라 여건 및 문화·여가 여건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부문적 접근보다는 연계된 부문들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정책 관점이 필요하다.

표 5-18. 삶의질지수 및 부문별 지수 간 상관관계

구 분		보건 복지	교육 여건	기초 생활 인프라	경제 활동	문화 여가	환경 경관	지역 발전 역량	삶의질 지수
보건·복지	Pearson 상관계수	1	0.556	0.546	0.334	0.623	-0.159	0.240	0.610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4	0.00	0.00
교육 여건	Pearson 상관계수	0.556	1	0.716	0.601	0.707	-0.047	0.413	0.809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55	0.00	0.00
기초생활 인프라	Pearson 상관계수	0.546	0.716	1	0.678	0.637	0.032	0.647	0.901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68	0.00	0.00
경제활동	Pearson 상관계수	0.334	0.601	0.678	1	0.453	-0.020	0.635	0.790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80	0.00	0.00
문화·여가	Pearson 상관계수	0.623	0.707	0.637	0.453	1	-0.109	0.436	0.769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17	0.00	0.00
환경·경관	Pearson 상관계수	-0.159	-0.047	0.032	-0.020	-0.109	1	0.083	0.124
	유의확률 (양쪽)	0.04	0.55	0.68	0.80	0.17		0.29	0.12
지역발전 역량	Pearson 상관계수	0.240	0.413	0.647	0.635	0.436	0.083	1	0.770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0.29		0.00
삶의질 지수	Pearson 상관계수	0.610	0.809	0.901	0.790	0.769	0.124	0.770	1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0.12	0.00	

주: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0.1 미만이면 변인 간 관계가 거의 없으며, 0.1~0.3이면 변인 간 관계가 약간 있음을, 0.3~0.5이면 변인 간 관계가 상당히 깊음을, 0.5~0.8이면 변인 간 관계가 매우 깊어 한 변인값을 알면 다른 변인의 값을 상당히 정확히 예측할 정도의 관계이며, 0.8~1이면 변인 간의 관계가 거의 일치하여 한 변인의 값을 알면 다른 변인의 값도 매우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

제 6 장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2009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공급 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농어촌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와 수요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농어촌 서비스기준(안)을 도출하여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적합성 검토,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타당성 검토, 지방 공청회 및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작업, 부처 간 실무자 협의회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8개 분야 31개 항목의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2010년 7월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1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동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준비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제도 운영을 위한 미비점들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운용과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구체화하였다. 또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의 기초가 되는 기준자료 구축과 이행실태 점검을 시·도하였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에 대한 농어촌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이행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3개 농어촌 시·군에 대한 심층 사례연구도 추진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 및 제도 운영방안을 법적 근거의 마련, 조직 구성과 추진체계 구축, 동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이행 촉진, 이행실태 점검·평가와 관련 통계기반 구축,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마련, 관련 제도와 연계 등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법적 근거의 마련은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일정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아, 나머지 다섯 가지 측면에서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의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과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실무조직이 확대 편성되어야 한다. 동 기준의 운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기준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을 위한 전문성을 지닌 실무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며, 전문연구기관에 동 실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조직의 확대 외에도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한편으로는 부처 간, 중앙-지방 간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준 이행을 실질화하기 위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및 사무국의 권한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농어촌 서비스기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이행 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방법으로 동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동 기준을 이행하는 데 참고할 만한 (가칭)‘농어촌 서비스기준 실행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해야 한다. 동 가이드라인에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 이를 이행하고 점검하는 방법, 관련된 제도 및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을 담아 동 기준의 이행 주체들에게 보급해야 한다. 또 지자체 등의 기준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수범사례에 대한 상사업비 방식의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를 위해서는 점검·평가 방식, 기준 항목별 점검·평가의 공간단위 설정, 점검·평가의 주체, 점검·평가

의 주기, 관련 통계의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이행 실태 점검·평가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 연구는 그러한 조직의 예로 (가칭)‘RSS 운영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시하였다. (가칭)‘RSS 운영지원단’은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평가를 기반으로, 기준 이행에 있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문제점과 애로점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해결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행실태 점검·평가를 기반으로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선 방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범사례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당 예산을 정부에 요구하여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는 특정 기준 항목의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자체로 하여금 이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 해당 지자체 간 (가칭)‘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 협약’을 맺도록 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추가 예산을 정부로부터 확보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로 하여금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평가와 제도 운영을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가칭)‘RSS 운영지원단’의 운영예산을 정부 보조금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다섯째, 관련 제도 및 정책과의 연계 운영 방안으로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성과목표나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나 포괄보조금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정책의 목표로서 활용하는 방안이다. 셋째는 농어촌 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제도(rural proofing) 운영 시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농어촌 영향관리 체크리스트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는 농어촌 지역이나 낙후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제3의 방안으로 농어촌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모든 농어촌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

한의 국가적 기준이다. 그러나 그 이행에 있어서는 농어촌 각 지역의 특성과 실태가 반영되기 마련이다. 지역에 따라 기준 이행의 방법과 성과가 매우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농어촌 서비스기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많은 지역에서 참고할 만한 수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도 운영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 간, 그리고 중앙-지방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또 다른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다. 농어촌 정책 추진의 기초 인프라로서 농어촌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 통계기반 설계를 통해 기존의 농어촌 통계 풀(pool)을 구성하고, 이를 농어촌 삶의 질 정책과 연계하여 ‘삶의 질 향상계획’의 7개 부문으로 재구성해 제시하였다. 또 기존 연구, 지역발전위원회 및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지역통계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새로이 구축해야 할 농어촌 통계와 보완이 필요한 통계 등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통계는 말 그대로 다양한 인문·사회 현상을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 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어촌 현실을 적절히 분석해 낼 수 있는 지표 내지는 지수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통계기반의 활용방안으로 지역발전지수, 기초생활기반지수, 창조지역지수, 삶의질지수 등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향후 농어촌 통계기반이 농어촌 정책의 추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관련 통계의 지속적인 구축이 필요하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농어촌 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처럼 사용자 편의를 지향하는 GIS 기반의 농어촌 통계 활용 인터페이스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 록

1. ‘서비스기준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성과목표 매칭
2.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기준자료 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통계 현황
3. 농어촌 서비스기준 기준자료 구축을 위한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조사표
4. 사례지역(김천·예산·장흥) 조사표
5. 농어촌 서비스기준 기준자료 구축 현황
6. 농어촌 통계 풀(pool) 보완 사항
7. 삶의질지수 및 부문별 지수 상위 50위 지역

부록 1.

‘서비스기준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성과목표 매칭

※ 매칭 수준 구분

- 계획의 관련성은 ○: 관련 계획 있음, △: 간접적 관련 계획 있음, ×: 관련 계획 없음
- 지표의 일치성은 ○: 서비스기준 지표와 성과지표 일치, ×: 서비스기준을 반영한 성과지표 없음

농어촌 서비스기준			삶의 질향상계획					매칭 수준	
부분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계획 부문	계획 세부 내용	성과지표	2009년	2014년	계획	지표
주거 (5)	주거 가능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제고한다.	보건 복지 증진 1-3	<input type="checkbox"/> 영세·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 <input type="checkbox"/> 영세고령농의 노후주택 개량 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우선 지원 <input type="checkbox"/> 고령농업인을 위한 집단거주 주택(공동체형 농어민홈) 조성 추진 - '10년 도입방안 마련 및 '11년 시범사업 실시 <input type="checkbox"/>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등을 활용한 노후주택 고쳐주기 사업 활성화 * (재)다솜동지복지재단, (사)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한국해비타트) 등 활용	-	-	-	△	×
			기초 생활 인프라 3-3	<input type="checkbox"/> 농어촌 주택개량 확대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주택을 보다 쉽게 신·개축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을 위한 융자금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물량 확대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물량	7	10	△	×

농어촌 서비스기준			삶의질향상계획					매칭 수준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계획 부문	계획 세부 내용	성과지표	2009년	2014년	계획	지표
				- 지원물량(동): ('09) 7천 동→('14) 10천 동 - 농어촌 특성과 전통을 살린 다양한 주거모델(환경친화형, 고령자 편의형, 에너지절약형 등) 개발·보급 ○ 노후주택 고쳐주기 캠페인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주택개량 등 생활여건 개선에 지자체·민간 참여 확대 * (재)다솜동지복지재단,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사회복지단체를 중심으로 매년 4천여 가구 개량 지원 중 ○ 마을경관개선 등을 위해 농어촌 빈집 정비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 * 지자체 농어촌 빈집정비 현황('97~'09): 91천 동/452억 원	(천 동)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	-	-	-	-	×	×

농어촌 서비스기준			삶의질향상계획					매칭 수준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계획 부문	계획 세부 내용	성과지표	2009년	2014년	계획	지표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환경 경관 개선 6-3	<input type="checkbox"/> '13년까지 농산어촌 주거용 유류 사용량의 7%(37만 톤), 시설 원예 난방기 유류 사용량의 20%(50만 톤)를 목재펠릿으로 공급 * 목재펠릿 이용 시 경유에 비해 비용은 1/3,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2 수준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펠릿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	목재펠릿 공급확대: • 주거용/ 시설원예 유류사용량 절감율(%)	-	7/20	△	- (기준 지표 없음)
			환경 경관 개선 6-3	<input type="checkbox"/>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집적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input type="checkbox"/> 소규모 마을(40~50호)을 대상으로 바이오매스·풍력·태양력 등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형 녹색마을로 리모델링 - '12년까지 시범사업 실시, '20년까지 전국적으로 600여 개 조성 <input type="checkbox"/> 친환경 저에너지형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 개발·보급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개)	-	(~'12) 시범사업, (~'20) 전국 600여개	△	- (기준 지표 없음)
	공동 시설 프로그램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문화 여가 여건 향상 5-2	<input type="checkbox"/> 농어촌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 프로그램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 현지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 우선 추진	-	-	-	△	- (기준 지표 없음)
	안전한 마실물	면지역 상수도보급률을 75% 이상으로 높인다. 지자체는	기초 생활 인프라 3-3	<input type="checkbox"/> 상수도보급률 증대 및 수질관리 강화 <input type="checkbox"/>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을 '14년까지 75%로 제고('10~'14년간 11,361억 원 투자)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	('07)45.2	75.0	○	○

농어촌 서비스기준			삶의질향상계획					매칭 수준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계획 부문	계획 세부 내용	성과지표	2009년	2014년	계획	지표
		원수 수질검사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자연마을 중 30호 이상 마을은 간이(마을)상수도를 설치하되, 지자체에서 관련 기준에 따라 수질 관리 - 면단위 지역 생활용수의 안정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 농업·생활용수가 부족한 지역은 암반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정수시설, 송·배수관, 물탱크 등) 설치 지원 - '09~'12년 간 1,218개소 개발 ('94~'08년까지 5,842개소 개발) 					
		면지역 상수도보급률을 75% 이상으로 높인다. 지자체는 원수 수질검사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보급률 증대 및 수질관리 강화 ○ 면단위 상수도보급률을 '14년까지 75%로 제고('10~'14년 간 11,361억 원 투자)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자연마을 중 30호 이상 마을은 간이(마을)상수도를 설치하되, 지자체에서 관련 기준에 따라 수질 관리 	-	-	-	○	- (기준 지표 없음)
	오폐수 처리	하수도보급률을 71% 이상으로 높인다.	환경 관리 개선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별 소규모 하수도 확충·정비 추진 ○ '14년까지 농어촌 하수도보급률을 71% 수준으로 제고 - 소규모 하수도(500톤 미만/일) 신설·개량 및 면단위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한 투자 확대('10~'14년 간 11,166억 원 지원) * 농어촌 지역(면단위) 하수도보급률: ('05)35.8% → ('10)56.0 → ('14)71 	하수도 보급률(%)	('07)45.7	71.0	○	○

농어촌 서비스기준			삶의질향상계획					매칭 수준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계획 부문	계획 세부 내용	성과지표	2009년	2014년	계획	지표
				- 소규모 마을은 자연 친화형 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검토					
교통 (3)	대중교통 운행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기초 생활 여건 개선	<input type="checkbox"/> 농어촌 주민 교통편의 및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도로정비 지속 추진 및 교통시스템 개선 <input type="checkbox"/> 지자체의 벽지노선 운행 버스 손실비용 지원, 순환버스 운행 지원 또는 수요 대응형 교통수단 제공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단 강구 * 사례) 전남 신안군은 13개 버스노선 공영버스화로 주민만족도 제고	-	-	-	△	×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 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	-	○	- (기준 지표 없음)
	여객선 운항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	<input type="checkbox"/> 낙도 도서주민에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제공 및 교통비 부담 완화 <input type="checkbox"/> 전국의 26개 보조항로*에 운항하는 국고여객선 26척에 대해 노후선 대체건조 또는 차도선으로 개조 지원 * 보조항로: 국가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해운법 15조) <input type="checkbox"/>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여객선 운임 지원 - 도서민에 한해 여객선 운임의 20%를 지원하되, 본인부담액이 5천원 이하가 되도록 지원	-	-	-	△	×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	-		-	-	○	- (기준 지표 없음)	

농어촌 서비스기준			삶의질향상계획					매칭 수준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계획 부문	계획 세부 내용	성과지표	2009년	2014년	계획	지표
	인도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input type="checkbox"/> 농어촌 주민 교통편의 및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도로정비 지속 추진 및 교통시스템 개선 <input type="checkbox"/> 도보왕래가 많은 농어촌 도로 및 지방도 등을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유도	-	-	-	○	- (기준 지표 없음)
교육 (6)	유치원 초·중학 교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교육 여건 개선 2-1	<input type="checkbox"/> 군 단위 농어촌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여 교육품질 제고 <input type="checkbox"/> 지역의 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유·초·중·고등학교를 통합·재배치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전반적 교육여건 개선 <input type="checkbox"/> 유·초·중등학교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으로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 육성	-	-	-	○	- (기준 지표 없음))
			교육 여건 개선 2-3	<input type="checkbox"/>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노후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현실화 추진	-	-	-	○	- (기준 지표 없음)
	고등 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교육 여건 개선 2-1	<input type="checkbox"/> 150개 기숙형 고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 <input type="checkbox"/>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등 지원	기숙형 고교 교육 만족도(%)	-	70.0	△	×

농어촌 서비스기준			삶의질향상계획					매칭 수준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계획 부문	계획 세부 내용	성과지표	2009년	2014년	계획	지표
				* 기숙형 고교현황(150개): '08년 82개교(공립), '09년 68개교(공·사립) * 지원금액: ('08) 3,173억 원, ('10) 2,720억 원, ('11이후) 정책연구 후 사업 확대여부 검토					
	폐교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	-	-	-	×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교과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제고한다.	교육 여건 개선 2-1		□ (연중 돌봄학교 육성)농어촌 취약지역 학생의 학력신장과 기초안전망 제공을 위해 교육·복지 종합서비스 연중 지원 ○ (학기 중) 학업성취도 향상 및 도농간 학력·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 후에 다양한 교육·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지원 ○ (주말 및 방학)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대신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습·문화·보건·의료 등 지원 - 378개 유·초·중·고교(유 24개, 초 222개 등)에 '09~'11년간 총 894억 원 지원	-	-	-	○	×
		교육 여건 개선		□ 150개 기숙형 고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	지원금액 (억 원)	('08) 3,173	('10)2,720 ※ '11년 이후	△	×

농어촌 서비스기준			삶의질향상계획					매칭 수준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계획 부문	계획 세부 내용	성과지표	2009년	2014년	계획	지표
			2-1	○ 기숙사내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정책연구 후 확대 여부 검토		
	교육 발전 위원회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교육 여건 개선 2-1	<input type="checkbox"/>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협의를 위해 시·군단위에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지자체, 교육청, 주민, 전문가 등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지역개발계획과 교육환경 개선과의 연계방안, 교육투자 활성화 방안 등 논의	-	-	-	○	- (기준 지표 없음)
	평생 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교육 여건 개선 2-1	<input type="checkbox"/>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이용 접근성 제고 * 평생학습도시 지정 76개 지자체 중 군지역은 13개 * 진안군은 「농촌 창업을 위한 평생학습 경제공동체 리더 양성」 프로그램 실시 중	평생학습 도시 지정 지자체 수 (개)	평생학습 도시지정 76개 지자체 중 군 13개	-	△	×
			교육 여건 개선 2-1	<input type="checkbox"/>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휴일 방과 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	-	-	-	△	×

농어촌 서비스기준			삶의질향상계획					매칭 수준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계획 부문	계획 세부 내용	성과지표	2009년	2014년	계획	지표
보건 의료 (3)	1차 진료 서비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보건 복지 증진 1-2	※ 내용상 지역 공공의료체계 서비스 여건 개선에 포함될 수 있으나, 계획 세부 설명에 해당 서비스기준을 반영한 내용 없음 <input type="checkbox"/>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 및 시설·장비 현대화, 서비스 여건 개선 ○ 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예방적 종합보건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성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관리, 치매조기검진, 보충영양사업,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제공 등 ○ 지방의료원(34개)을 공공의료서비스 중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 ○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병원급 의료기관 지원대책 마련 * 중소병원의 특성화(노인성질환, 재활 등)로 지역공공의료 체계와 유기적 관계 형성	-	-	-	×	- (기준 지표 없음)
	순회 방문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보건 복지 증진 1-2	<input type="checkbox"/> 보건(지)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강화 ○ 거동불편 노령자·장애인·임산부·영유아 등 취약계층부터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력 확충 및 서비스 질 향상 * 맞춤형 방문관리서비스 인력(안): '08) 2천 명 → '10) 2.7천 명	맞춤형 방문관리서비스 인력(천 명)	('08)2	('10)2.7	△	×

농어촌 서비스기준			삶의질향상계획					매칭 수준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계획 부문	계획 세부 내용	성과지표	2009년	2014년	계획	지표
				<input type="checkbox"/>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input type="checkbox"/>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낙도지역에는 병원선을 이용한 이동진료 제공 * 경남, 전남, 인천, 충남 섬 지역 대상으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병원선 운영 중	-	-	-	△	×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	-	-	-	-	×	×
사회 복지 (5)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 복지 증진 1-2	<input type="checkbox"/> 보건(지)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강화 <input type="checkbox"/> 거동불편 노령자·장애인·임산부·영유아 등 취약계층부터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력 확충 및 서비스 질 향상 * 맞춤형 방문관리서비스 인력(안): ('08) 2천 명 → ('10안) 2.7천 명	맞춤형 방문관리 서비스 인력 (천 명)	('08)2	('10)2.7	○	×
			보건 복지 증진 1-3	<input type="checkbox"/> 사고·질병 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확대 및 고령·취약 농가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다양화 <input type="checkbox"/> 영농도우미 상한연령 상향(70세→75세) 및 지원기간 확대(10일→15일) 추진 및 농어촌 경로당 지원 등 가사도우미 다양화	-	-	-	△	×

농어촌 서비스기준			삶의질향상계획					매칭 수준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계획 부문	계획 세부 내용	성과지표	2009년	2014년	계획	지표
	청소년	<p>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p> <p>※ 청소년수련관(시·군) 및 청소년문화의 집(읍·면) 등 서비스센터 설치·운영 및 서비스 접근성 향상</p>	보건 복지 증진 1-3	<p>□ (연중 돌봄학교 육성)농어촌 취약지역 학생의 학력신장과 기초안전망 제공을 위해 교육·복지 종합서비스 연중 지원</p> <p>○ (학기 중) 학업성취도 향상 및 도농간 학력·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 후에 다양한 교육·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지원</p> <p>○ (주말 및 방학)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대신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습·문화·보건·의료 등 지원</p> <p>- 378개 유·초·중·고교(유 24개, 초 222개 등)에 '09~'11년간 총 894억 원 지원</p>	-	-	-	×	×
	아동	<p>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p> <p>※ 지역아동센터, 방과후학교, 청소년아카데미, 농어촌유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 설치·운영 및 서비스 접근성 향상</p>	교육 여건 개선 2-1	<p>□ (연중 돌봄학교 육성)농어촌 취약지역 학생의 학력신장과 기초안전망 제공을 위해 교육·복지 종합서비스 연중 지원</p> <p>○ (학기 중) 학업성취도 향상 및 도농간 학력·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 후에 다양한 교육·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지원</p> <p>○ (주말 및 방학)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대신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습·문화·보건·의료 등 지원</p> <p>- 378개 유·초·중·고교(유 24개, 초 222개 등)에 '09~'11년간 총 894억 원 지원</p>	-	-	-	△	×

농어촌 서비스기준			삶의질향상계획					매칭 수준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계획 부문	계획 세부 내용	성과지표	2009년	2014년	계획	지표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보건 복지 증진 1-3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보육시설 시설 확충 <input type="checkbox"/> 농어촌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20개소씩 확충 * 전체 농어촌 보육시설 ('09) 6,504개소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426개 <input type="checkbox"/> 아동수가 적지만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 마을회관, 유희공공시설, 보건지소 등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 * ('09) 10개소(시범사업) → ('11) 20 → ('14) 50 <input type="checkbox"/> 농어촌 보육시설에 영아(0~2세)반 설치를 위한 지원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수(개소)	426	526	○	×
				필요한 지역의 소규모 보육시설 수(개소)	('09)10 (시범)	('14)50			
	다문화 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 복지 증진 1-3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계획이 있으나, 기능 확대가 주 내용이며 서비스 접근성 측면은 아님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능 확대 <input type="checkbox"/> 지역 사회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서비스 제공 -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녀 언어발달 지원,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	-	×	×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능 확대 <input type="checkbox"/> 센터 접근성이 낮은 다문화가족 대상,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한국어 및 아동양육) 제공				-	-	-	○	- (기준 지표 없음)	

농어촌 서비스기준			삶의질향상계획					매칭 수준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계획 부문	계획 세부 내용	성과지표	2009년	2014년	계획	지표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응급 (5)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보건 복지 증진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응급의료체계 개선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43개 군)에 응급의료시설·장비 지원 및 응급의학과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 - 보건·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13개 군), 병원급 의료기관(25개 군)이 있는 군은 시설 지원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육성 - 공공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군병원(2개 군)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3개 군)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육성 ○ 취약지 응급진료권(6개 권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 '10년까지 3개소 → '11년까지 6개소 모두 확충 ○ 농어촌 이송취약지역(이송시간 30분 이상 소요)에 119 구급 지원센터(구급대원 최소 2명 이상, 구급차 1대)를 단계적으로 설치 - 구급지원센터 추가 설치 계획(누계): ('10) 50개 → ('11) 100 → ('12) 175 	응급의료 기관 설치 확대(%)	73.6	100	○	○
					취약지 응급진료권(6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개소)	-	('10) 3개소 → ('11) 6개소 모두 확충		
					119구급센터 설치 확대(개소) - 농어촌 이송취약지역(이송시간 30분 이상 소요)에 119 구급지원센터(구급대원 2명 이상, 구급차 1대) 단계적 설치	0	('12)175		

농어촌 서비스기준			삶의질향상계획					매칭 수준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계획 부문	계획 세부 내용	성과지표	2009년	2014년	계획	지표
	도서 벽지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 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보건 복지 증진 1-2	<input type="checkbox"/> 농어촌 응급의료체계 개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낙도·오지지역은 헬기·선박 이용 응급환자이송체계 구축 지원 * 해경·산림청 헬기에 응급의료장비 설치(매년 8대) 및 오벽지 헬기 착륙장 건립 지원 * 해양경찰청 경비선에 응급의료장비 설치(누계): ('10) 25척 → ('11) 51척 → ('12) 52척	해경·산림청 헬기에 응급의료장비 설치 및 오벽지 헬기 착륙장 건립지원 해양경찰청 경비선에 응급의료장비 설치(척)	-	매년 8대	○	- (기준 지표 없음)
	소방 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높인다.	-	-	-	-	-	×	×
	도난 방지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법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	-	-	-	-	×	×
	경찰 서비스	112 신고시 90% 이상 10분 내에 현장에 도착한다.	-	-	-	-	-	×	×

농어촌 서비스기준			삶의질향상계획					매칭 수준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계획 부문	계획 세부 내용	성과지표	2009년	2014년	계획	지표
문화 여가 (3)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문화 여가 여건 향상 5-1	<input type="checkbox"/> 읍·면단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input type="checkbox"/> 농어촌 지역 공공도서관을 '13년까지 총 260관으로 확대(현재 243관)하여 도·농간 정보인프라 격차 완화 * '13년까지 전국에 OECD 국가 평균 도서관 인프라(인구 5만명 당 1관) 수준인 900개 공공도서관 건립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관)	243	('13)260	○	- (기준 지표 없음)
				<input type="checkbox"/>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 <input type="checkbox"/> 공공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유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 조성('13년까지 153개소 조성)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개소)	93	('13)153	○	- (기준 지표 없음)
				<input type="checkbox"/>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 확대 * ('09) 도서관(40개관, 24회), 박물관(77회), 미술관(10회)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미술관 운영 횟수(회)	('09)도서관 40개관, 24회, 박물관 77회, 미술관 10회	-	△	- (기준 지표 없음)
	문화 시설 및 프로 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문화 여가 여건 향상 5-1	<input type="checkbox"/> 정미소, 폐교 등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개보수하여 새로운 문화교류공간으로 조성 <input type="checkbox"/>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장, 주민의 문화체험·창작공간으로 활용 <input type="checkbox"/> 시범사업('09~'11)결과를 토대로 지역별로 확대 추진	-	-	-	△	×
문화 여가 여건			<input type="checkbox"/> 지방문화원을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문화활동의 거점기관으로 활성화	지방문화원 실버문화 프로그램	137	170	△	×	

농어촌 서비스기준			삶의질향상계획					매칭 수준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계획 부문	계획 세부 내용	성과지표	2009년	2014년	계획	지표
			향상 5-2	○ 은퇴 및 귀향전문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향토문화 발전과 청소년 창의성 계발에 기여토록 운영 - 역사문화유적탐방,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향토문화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문화활동 등 지원 ('09년 150개 원) * 프로그램 수/예산: ('09) 137개/19억 원 → ('10) 150/23 → ('14)170/25	수(개)				
					지방 문화원 수 (개소)	('09) 150개 원	-		
					프로그램 예산(억 원)	('09)19	('14)25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문화 여가 여건 향상	(부문별 대표 성과지표로 제시)	문화 예술 및 체육행사 관람율 (읍·면)(%)	38.4	60	△	×
			문화 여가 여건 향상 5-2	<input type="checkbox"/>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 ○ 농어촌 지역 문예회관을 거점으로 국립극단 등 국립예술단체('09년, 11개 단체 참여)의 우수프로그램 순회활동 강화	-	-	-	○	×
			문화 여가 여건 향상 5-2	<input type="checkbox"/>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 ○ 우수 민간예술단체를 선정, 농어촌에 파견 또는 순회공연 등을 통해 우수 공연·전시프로그램 관람 기회 제공	-	-	-	○	×
찾아가는 문화 공연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문화 여가 여건 향상 5-1	<input type="checkbox"/>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 확대 * ('09) 도서관(40개 관, 24회), 박물관(77회), 미술관(10회)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미술관 운영 횟수(회)	('09)도서관 40개 관, 24회, 박물관 77회, 미술관 10회	-	○	×

농어촌 서비스기준			삶의질향상계획					매칭 수준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계획 부문	계획 세부 내용	성과지표	2009년	2014년	계획	지표
정보 통신 (1)	초고속 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80% 이상에서 IPTV 시청이 가능하다.	기초 생활 여건 개선	<input type="checkbox"/> 농어촌 어디에서나 IPTV 시청이 가능하도록 광대역통합망 구축 ○ '10년 실태조사를 거쳐 '14년까지 80% 구축('15년까지 구축 완료)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26.1	80.0	○	○
			교육 여건 개선 2-1	<input type="checkbox"/> 농어촌 지역 IPTV 공부방 추진 ○ 지역아동센터 등에 인터넷방송 수신장비 및 디지털 TV설치 지원 * 충청남도도는 '09년도 지역아동센터 3곳에 IPTV 공부방을 설치, 향후 매년 50개씩 확대 추진	-	-	-	△	×

부록 2.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기준자료 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통계 현황

* 통계구득여부: ○: 공표되는 공식통계 및 자료 // △: 부처 및 관계기관 제공 자료 // X: 구득 불가 //
 -: 법적 의무로 달성 간주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공표 주기	공표 단위	활용 가능 여부 및 보완 방안	통계 구득 여부	비고
주거	주거 가능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 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제고한다.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제고한다.	국토연 최저주거기준 자료: 시·군·구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5년	시·군·구		○	- 격년 자료는 표본조사로 시·도단위 제공, 5년 단위 자료는 전수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군·구까지 제공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50% 이상	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보급률	1년	시·도	지경부에 읍·면·동별 보완 자료 협조 요청	X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 추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결과 그린홈100만호사업 태양광·태양열·지열·바이오·풍력 등				산림청에 자료 협조 요청 지경부에 자료 협조 요청	△ △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공표 주기	공표 단위	활용 가능 여부 및 보완 방안	통계 구득 여부	비고
									보급 사업임. - 산림청 및 지경부 내부 자료 획득
	공동 시설 프로그램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마을회관/경로당 운영비 지원	마을회관/경로당 운영비지원현황			지자체 행정조사 요청	X	- 마을공동시설 중 주거 및 커뮤니티 기능을 하는 경로당,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함.
			마을회관/경로당 상설프로그램 운영	마을회관/경로당 상설프로그램현황			지자체 행정조사 요청	X	
	안전한 마실물	면지역 상수도보급률을 75% 이상으로 높인다. 지자체는 원수 수질검사와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면지역 상수도보급률 75% 이상	환경부 상수도통계: 상수도현황	매년	시·군 (+읍·면·동)		O	
			기초지자체 원수 수질 검사 및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	수질기준/검사 및 결과 구축					-
	오폐수 처리	하수도보급률을 71% 이상으로 높인다.	하수도보급률 71% 이상	환경부 하수도통계: 하수도 인구 및 보급률 현황	매년	읍·면·동		O	
교통	대중 교통 운행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정류장에서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 사용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대중교통 운행 횟수별 마을 수	5년	읍·면·동	지자체 행정조사에 의한 매년 구축 고려 필요	O	- 원데이터(행정리별) 활용 가능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공표 주기	공표 단위	활용 가능 여부 및 보완 방안	통계 구득 여부	비고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 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수요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경우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콜택시 비용 지원, 탄력적 버스 운영 등)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행 마을			지자체 행정조사 요청	X	
	여객선 운항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모든 도서지역과 본도가 1일 1회 이상 왕복선 운행	여객선 운행 노선별 일정			국토부 및 지방해양항만청에 자료 협조 요청	X	
			도서지역 거주민 운임 일부 지원	도서지역 거주민 운임 지원 현황				-	- 최고운임(2009년 5천 원) 초과 금액에 대해 전액 지원하고, 최고운임 미만의 경우 20% 지원
	인도 설치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농어촌 주요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인도 구분 노력	농어촌 주요 생활도로 정비 시 인도 구분 계획 여부 및 결과 구축			지자체 행정조사 요청	X	- 노력 권고 사항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공표 주기	공표 단위	활용 가능 여부 및 보완 방안	통계 구득 여부	비고
		생활도로 정비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교육	유치원/초·중 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의거하여 적정규모 통폐합 시 통학수단 제공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의거한 통폐합 시 통학수단 제공 현황			교과부 및 지방교육청에 자료 협조 요청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의거 의무 -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매년 통폐합대상 선정. 단, 주민동의, 통학버스제공 기준 통과 시 가능(폐교 시 본교 20억 원, 분교 10억 원 지원).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교과부 선정 우수고교 및 기숙형 고교 시·군 당 1개교 이상	우수고교 및 기숙형고교 현황			교과부에 자료 협조 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2007년 교과부 우수고교 육성사업이 2008년 기숙형고교 육성사업으로 전환, 2009년 종료. - 계획 및 선정 자료 획득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공표 주기	공표 단위	활용 가능 여부 및 보완 방안	통계 구득 여부	비고
	폐교 요건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폐교 시 폐교재산활용과 관련하여 공청회 등 통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	폐교활용에 관한 공청회 등의 회의 실시 현황			교과부 및 지방교육청에 자료 협조 요청	X	- 의무 및 권고 사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제고한다.	학생들의 70% 이상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읍·면·동별 방과후 학교 참여율			교과부에 읍·면·동별 방과후학교 참여율 조사 협조	X	- 2008년 기준 모든 초중고(11,114개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중
	교육 발전 위원회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한다.	기초지자체에 지자체, 교육청, 주민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시·군 교육발전위원회 조직 현황			교과부 및 지방교육청에 자료 협조 요청	X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공표 주기	공표 단위	활용 가능 여부 및 보완 방안	통계 구득 여부	비고
	평생 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읍·면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설 1개 이상 운영	평생교육통계자료집: 평생교육기관 현황(비형식기관)	1년	시·도	교과부에 읍·면·동별 보완 자료 협조 요청	△	- 주소록(읍·면·동별) 획득 및 활용 가능 - 비형식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원자료의 한계로 주민자치센터가 제외됨. - 향후 비형식기관 중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할 필요 있음.
보건 의료	1차 진료 서비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시·군 민간의료체계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 등의 진료 가능	전국사업체조사: 일반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 방사선병리검사와 현황	1년	읍·면·동		○	
	순회 방문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의 순회방문을 받는다.	보건소 등 공공보건체계에서 마을별 집합장소에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순회방문 실시	보건직원 정기 순회 방문 프로그램 현황			지자체 행정조사 요청	X	- 월 1회 실시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구분할 필요 있음.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읍·면 내에 의약품 구입 가능	전국사업체조사: 의약품/의료용품 소매점, 공공의료 기관 현황	1년	읍·면·동		○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공표 주기	공표 단위	활용 가능 여부 및 보완 방안	통계 구득 여부	비고
사회 복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 등 재가서비스를 주 1회 이상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노인 현황			지자체 행정조사 요청	X	- 취약계층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및 등급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노인, 독거노인, 노인부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현황 (1~3등급)	매월	시·군·구		O	- 재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재가), 노인돌봄서비스, 방문건강관리사업, 그 외 지자체 자체적인 재가서비스 - 가사간병도우미서비스 중 노인대상자(65세 이상)는 노인돌봄서비스로 이관됨.
				노인돌봄기본(독거노인) 및 종합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서비스 대상자 현황			지자체 행정조사 요청	X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현황			지자체 행정조사 요청	X	
				지자체 자체 노인 재가서비스 대상자 현황			지자체 행정조사 요청	X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공표 주기	공표 단위	활용 가능 여부 및 보완 방안	통계 구득 여부	비고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시·군 내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수련원 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매년	시·군·구		O	- 청소년활동 진흥시설 중 청소년의 사회복지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을 기준으로 함.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교를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읍·면별 지역아동정보센터 또는 방과후학교사업 시설(초등돌봄교실) 운영	전국지역아동센터실 태조사: 전국지역 아동센터 현황	1년	시·군·구		O	- 주소록(읍·면·동) 활용 가능
				초등학교별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교과부 및 지방교육청에 자료 협조 요청	X	- 향후 민간시설 및 지자체의 유사 서비스 현황 파악 필요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읍·면 내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최소 3명 이상일 때 (소규모)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운영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만 5세 이하 영유아 현황	1년	읍·면·동		O	- 일정한 수요: 최소 3명 이상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복지부에 읍·면·동별 보완 자료 협조 요청	X	- 지자체 통계연보 자료 기구축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공표 주기	공표 단위	활용 가능 여부 및 보완 방안	통계 구득 여부	비고
	다문화 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접근 가능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전국다문화가족사업 지원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1년	시·군·구		O	
응급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30분내 응급현장도착	현장 도착 시간대별 출동 현황			소방청에 자료 협조 요청	X	
			구급 수요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30분 이상 소요되는 도서산간 취약 읍·면지역에 119지원센터 구축	119구급지원센터 설치 현황				X	- 도착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도서, 산간 취약지역에 2010년 50개소, 2011년 50개소, 2012년 75개소, 총 175개 읍·면에 설치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공표 주기	공표 단위	활용 가능 여부 및 보완 방안	통계 구득 여부	비고
	도서·벽지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해경 및 산림청 헬기와 선박에 응급의료장비 설치	헬기 및 선박에 응급의료장비 설치 현황			해경청, 산림청 및 소방청에 자료 협조 요청	X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EMS 전용헬기 운영	EMS 전용헬기 운영 현황			소방청에 자료 협조 요청	X	
	소방 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이상으로 높인다.	신고 접수 후 화재현장에 5분 내 도착 비율을 55% 이상으로 제고함.	현장 도착 시간대별 출동 현황			소방청에 자료 협조 요청	X	
	도난 방지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법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주요 간선도로 길목 및 마을 진입 주요 도로에 방법용 CCTV 설치	방법용 CCTV 현황			경찰청 및 지자체에 자료 협조 요청	X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공표 주기	공표 단위	활용 가능 여부 및 보완 방안	통계 구득 여부	비고
			양식장 등의 어산물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	해경청 방법용 CCTV 현황			해경청 및 지자체에 자료 협조 요청	X	- 포구나 항만을 대상으로 함.
	경찰 서비스	112 신고 시 90% 이상 10분 내에 현장에 도착한다.	신고 접수 후 현장 10분 내 도착 비율 90% 이상	112 신고 출동 시간			경찰청에 자료 협조 요청	X	
문화 여가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읍·면 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통해 도서 열람 및 대출 가능	문광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문고) 현황	수시	시·군·구		O	- 주소록(읍·면·동) 활용 가능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이동도서관 등 대안적인 도서 대출, 반납 시스템 운영	대안 방안 운영 여부			지자체 행정조사 요청	X	- 이동도서관 외에 기타 다양한 대안적 방법도 포함.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자동차 30분 내에 문화시설 운영	문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매년	시·군·구		O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조사	매년	시·군·구	문광부에 자료 협조 요청	△	- 한국문화원연합회 내부자료 획득	

부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공표 주기	공표 단위	활용 가능 여부 및 보완 방안	통계 구득 여부	비고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프로그램 관람	예술경영 지원센터 문예회관운영현황 조사: 문화예술회관의 정기공연 현황			문광부에 시·군·구별 보완 자료 협조 요청	X	- 문광부의 요청으로 문예회관연합회 및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
	찾아가는 문화 공연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읍·면별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연 2회 이상의 문화프로그램 향유	문광부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사계절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결과) 현황			문광부에 자료 협조 요청	X	- 총 13개 사업으로 구분 - 그 중 한국문예회관연합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탁)의 '소의계층 문화향유 프로그램(농산어촌 순회공연)' 자료 구축
				지자체 자체적인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현황			지자체 행정조사 요청	X	
정보 통신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80% 이상에서 IPTV 시청이 가능하다.	초고속망 구축률 10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방통위): 지역별 가구 인터넷 가능 여부	1년	시·도	방통위에 시·군별 보완 자료 협조 요청	△	- 방통위 내부자료 획득
			IPTV 시청을 위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80% 이상	가입자 현황			방통위에 자료 협조 요청	X	

부록 3.

농어촌 서비스기준 기준자료 구축을 위한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조사표

- 1) 「통계자료 제출항목」 별로 163개 농어촌 시·군에 대한 자료
- 2) 2009년 또는 2010년 현재 자료가 없는 경우, 가능한 가장 최근자료 제출 요망

관련부처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목표치	통계자료 제출항목	공표주기	조치사항
경찰청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시·군별 112 신고 시 평균 도착시간	1년	
교육과학 기술부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시·군별 학생 수, 학교 수	1년	• 교과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전문연구기관 분석
		시·군별 만족도 조사 결과	1년	
		시·군별 소규모학교 수, 지원받는 소규모학교 수	1년	
		통학수단 현황 - 읍·면 학교별 스쿨버스 등 운용 여부	1년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시·군별 우수고 및 기숙형고 현황	1년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시·도교육청별 폐교에 관한 자체추진기준	1년		

관련부처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목표치	통계자료 제출항목	공표주기	조치사항
	교과 과목, 특기적성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제고한다.	시·군별 초·중·고교 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 시·군 총학교수,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 수,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수	1년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읍·면별 초등돌봄교실 현황	1년	
국토해양부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본도의 여객선 운항 현황 - 시·군별 본도 수, 1일 1회 이상 왕복 운행하는 본도 수	1년	• 100% 달성한 근거자료 제공요청
문화체육 관광부	읍 면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읍·면별 공공도서관 및 도서대출 서비스 현황	1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시·군별 문화시설 현황	1년	•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 2와 관련한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등을 의미 • 어려울 경우,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의 문화기반시설 자료 활용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시·군별 문예회관 공연 및 행사 건수	1년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읍·면별 소외계층 문화순회공연 현황 - 읍·면별, 공연별 횟수	1년	• 소외계층 문화향유 프로그램, 소외지역 학교 대상 우수공연프로그램, 찾아가는 국악원, 찾아가는

관련부처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목표치	통계자료 제출항목	공표주기	조치사항
				중앙박물관, 찾아가는 민속박물관, 찾아가는 현대미술관, 찾아가는 도서관, 찾아가는 영화관, 지방순회공연, 찾아가는 합창단, 국립발레단 온국민 만족 프로젝트, 전국 방방곡곡사업(서울예술단), 찾아가는 정동극장 등 소관사업
		읍·면별 찾아가는 박물관사업 현황	1년	
방송통신위원회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시청이 가능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시·군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가입 분포	1년	
		시·군별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1년	
보건복지부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주요 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시·군별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 가능여부	1년	• 100% 달성한 근거자료 제공요청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군·구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1년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교를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읍·면별 지역아동센터 현황	1년	

관련부처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목표치	통계자료 제출항목	공표주기	조치사항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읍·면별 영유아보육시설 현황	1년	
소방방재청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소방서별 119구급대 현황 (구급차 대수, 인력 수)	1년	
		소방서별 119구급대 현장도착 시간대별 출동 현황	1년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이송체계를 구축한다.	EMS헬기 보유 대수 및 운영인력 현황 - EMS헬기별 커버 지역	1년	
	화재발생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이상으로 높인다.	소방서별 소방차의 평균 현장도착 시간	1년	
시·도 (시·군자료 취합제출)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읍·면·동별 마을공동시설이 있는 마을 수	1년	• 행정조사실시
		읍·면·동별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비 및 프로그램 진행비가 지원되는 마을 수	1년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 대응형 준공공 교통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시·군의 준공공 교통프로그램 운영 실적 - 콜택시, 스쿨버스, 사회복지관버스, 시·군공영버스 등	1년	• 비고란에 사례내용을 간단히 기재 • 수요대응형 준공공 교통프로그램: 수요부족으로 일반적인 대중교통의 운영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관련부처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목표치	통계자료 제출항목	공표주기	조치사항
				수요패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방식의 교통수단 제공 프로그램을 의미함.
	읍 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시·군별 배후지 주요 마을에서 읍·면소재지로 접근하는 도로 수	1년	
		이 중 소재지 밖의 도로부분에 인도가 설치된 도로 수	1년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시·군별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현황	1년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 인력의 순회방문을 받는다.	시·군별 월 1회 이상 의료인력의 순회방문서비스를 받는 마을 수	1년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범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시·군별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1년	
여성가족부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시·군별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1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 불편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군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1년	
		시·군별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현황	1년	

관련부처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목표치	통계자료 제출항목	공표주기	조치사항
지식경제부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읍·면·동별 도시가스 보급율	1년	• 어려울 경우 읍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
		읍·면·동별 태양광 및 태양열 주택 수	1년	• 그린홈 100만호 사업 현황
해양경찰청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이송체계를 구축한다.	응급의료시스템을 갖춘 경비함정 운영 현황 - 경비함정별 커버지역	1년	
환경부	면지역 상수도보급률을 75% 이상으로 높인다. 지자체는 원수 수질검사와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읍·면·동별 지역 상수도보급률	1년	
	하수도보급률을 71% 이상으로 높인다.	읍·면·동별 지역 하수도보급률	1년	

부록 4.

사례지역(김천·예산·장흥) 조사표

: 농어촌 서비스기준(2010~14년) 베이스라인 데이터(기준자료) 구축 및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지자체 조사표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2014년까지의 목표치)	조사 항목[조사 공간 단위] *별도 표시 없을 시 [시·군] 단위	응답 란	기준년월	비고
주거	거주가능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제고한다.	-	-	-	
	난 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읍]	()%	년 월	
			태양광시설 보급 가구 수	()가구	년 월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가구 수	()가구	년 월	
			등유-화목검용보일러 보급 가구 수	()가구	년 월	
	공동시설 프로그램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마을공동시설 없는 마을 수	()개 마을	년 월	마을 = 읍·면의 행정리 (이하 동일)
			유지관리비 지원 수혜 마을 수	()개 마을	년 월	
			프로그램 진행비 지원 수혜 마을 수	()개 마을	년 월	
	안전한 마실 물	면지역 상수도보급률을 75% 이상으로 높인다. 지자체는 원수 수질검사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면지역 상수도보급률 [면]	()%	년 월	
	오폐수처리	하수도보급률을 71% 이상으로 높인다.	해당 시·군 전체 하수도보급률	()%	년 월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2014년까지의 목표치)	조사 항목[조사 공간 단위] *별도 표시 없을 시 [시·군] 단위	응답 란	기준년월	비고
	대중교통 운행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 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보 15분 거리 내 정류장에서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마을 수	()마을	년 월	
			대중교통 부족 보완을 위한 지자체의 자구적 노력 유무(오벽지 노선 지원 제외)	유 / 무	년 월	
교통	여객선 운행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본도(읍·면소재지 섬)의 수	()개 섬	년 월	도서지역 해당 시·군만 응답 필요
			이 중 여객선이 1일 1회 이상 왕복운행하지 않는 본도의 수	()개 섬	년 월	
	인도 설치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배후지 주요 마을에서 읍·면소재지로 접근하는 도로 수	()개 노선	년 월	
			이 중 소재지 밖의 도로부분에 인도가 설치된 도로 수	()개 노선	년 월	위험지역 등 부분적으로 인도가 설치된 도로도 포함
교육	유치원/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 수	()개교	년 월	
			이 중 학생 위한 통학수단 제공 학교 수	()개교	년 월	스쿨버스 및 기타 운송수단 운영, 교통비 지원 등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농어촌우수고, 지역거점고교, 기숙형공립고 수	()개교	년 월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2014년까지의 목표치)	조사 항목[조사 공간 단위] *별도 표시 없을 시 [시·군] 단위	응답 란	기준년월	비고
교육	폐교요건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2010년 및 2011년 폐교 예정 학교 수 이들 중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과정 거친 경우	2010()개교 2011()개교 ()개교	년 월 년 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제고한다.	관내 초·중·고교 학생 수	()명	년 월	
			이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자 수	()명	년 월	
	교육발전 위원회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시·군 단위 교육발전위원회, 협의회 등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진흥 위한 정책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 기구 설치·운영 여부	유 / 무	년 월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주민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읍·면] 수	()개 읍·면	년 월	
보건 의료	1차 진료 서비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	()개소	년 월	
			물리치료실	()개소	년 월	전문적인 물리치료사 상근 시설을 의미
			병원/의원 수	()개소	년 월	의사가 상근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수	()개소	년 월	치과의원,
			산부인과 수	()개소	년 월	산부인과를 의미
	순회방문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의 순회방문을 받는다.	월별 1회 이상 의료 전문인력의 순회방문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마을 수 [행정리]	()개 마을	년 월	의료 전문인력이란 보건소 의료진, 의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간호사(원)등을 의미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2014년까지의 목표치)	조사 항목[조사 공간 단위] *별도 표시 없을 시 [시·군] 단위	응답 란	기준년월	비고
보건 의료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보건진료소 또는 약국·약방이 없는 읍·면 수 [읍·면]	()개 읍·면	년 월	
사회 복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노인 수 (노인: 만 65세 이상,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상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65세 미만 노인 포함)	()명	년 월	취약계층 노인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상의 1~3등급과 등급의 A~C 해당 노인, 장애 및 중증질환 노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대상 노인, 독거노인, 노인부부가정, 조손가정을 의미
			이 중 입소시설 서비스 수혜자 및 주 1회 이상 재가·방문서비스를 받는 노인 수	()명	년 월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청소년 수련관	()개소	년 월	청소년활동진흥법 10조에 의거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시설을 의미
			청소년 수련원	()개소	년 월	
청소년 문화의 집	()개소	년 월				
기타 청소년 활동 진흥시설	()개소	년 월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2014년까지의 목표치)	조사 항목[조사 공간 단위] *별도 표시 없을 시 [시·군] 단위	응답 란	기준년월	비고
사회 복지	아 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초등보육교실, 종일돌봄교실, 기타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읍·면 수	()개 읍·면	년 월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영유아가 3명 이상인 읍·면 수	()개 읍·면	년 월	영유아는 만 6세 미만, 즉 0~5세를 의미
			이 중 영유아 보육시설이 (소규모라도) 전혀 없는 읍·면 수	()개 읍·면	년 월	
	다문화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 불편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정 지원 센터 개소 수(비고 참조)	()개소	년 월	관련 시설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교육)센터, 이주여성지원센터 등 포함
이 중 방문서비스 제공 센터 개소 수			()개소	년 월		
응급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응급장비가 설치된 구급차 관내 배치 수	()대	년 월	일반 구급차 기준. 필요 시 관내 소방서 등 유관 기관 협조 통해 작성
			신고 후 30분 내 도달 어려운 마을 수	()개 마을	년 월	
	도서·벽지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이송체계를 구축한다.	관내 자동차 접근이 어려운 곳에 응급환자 발생 시 헬기 또는 선박을 이용한 이송체계 구축 여부	헬기 이송체계: 유 / 무	년 월	선박 이용은 도서지역 지자체만 응답
				선박 이송체계: 유 / 무	년 월	
소방서비스	화재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높인다.	119 신고 후 소방차가 5분 내에 도달할 수 없는 마을 수	()개 마을	년 월	필요 시 관내 소방서 등 유관 기관 협조 통해 작성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2014년까지의 목표치)	조사 항목[조사 공간 단위] *별도 표시 없을 시 [시·군] 단위	응답 란	기준년월	비고
응급	도난방지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법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마을에 접근하는 주요 도로 길목 또는 마을 내 주요 지점에 CCTV 미설치 마을 수	()개 마을	년 월	방법용 및 도난방지용 CCTV의미(신호위반 및 과속 등 교통감시용 제외)
	경찰서비스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112 신고 후 경찰이 10분 내 도달할 수 없는 마을 수	()개 마을	년 월	필요 시 관내 경찰서 등 유관 기관 협조 통해 작성
문화 여가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도서 열람 및 대출 수단이 없는 읍·면 수	()개 읍·면	년 월	각급 도서관, 이동도서관, 기타 독창적인 도서대출 서비스 등이 전무한 읍·면 의미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전문 공연 프로그램이 가능한 문화 예술시설	() 개소	년 월	문화예술회관 등 전문가들의 공연이 가능한 시설 의미
			상기 시설에서 전문가들에 의한 공연예술 프로그램 횟수	연 () 회	년 월	2010년 1~10월 기간 기준
			관내에서 일반적인(비전문가들 포함) 문화 프로그램 시행 횟수	연 () 회	년 월	2010년 1~10월 기간 기준
찾아가는 문화공연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읍·면별로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시행 회수가 연 2회 미만인 읍·면 수	()개 읍·면	년 월	2010년 1~10월 기간 기준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2014년까지의 목표치)	조사 항목[조사 공간 단위] *별도 표시 없을 시 [시·군] 단위	응답 란	기준년월	비고
정보 통신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 시청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초고속망 인터넷 접속 가능 마을 수	()개 마을	년 월	
			IPTV 시청 가능 마을 수	()개 마을	년 월	IPTV 시청 가능한 광대역통합망 구축 마을 현황

부록 5.

농어촌 서비스기준 기준자료 구축 현황

* 주: 음영은 농림수산식품부를 통한 지자체 조사에 의거한 자료이며, 그 외에는 공표된 통계를 활용한 자료임.

구분		주거					교통			보건·의료					
		주거 가능	신재생 에너지 보일러 보급	공동시설 프로그램	안전한 마실물	오페수 처리	대중교통		인도 설치	1차 진료			순회방문	의약품 구입	
시·군명	행정구역	최저주거 기준이상 가구비율 90%이상	%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이상	시·군별 하수도 보급률 71%이상	행정리별 도보 15분내 정류장 버스 하루 3회 이상 이용	시·군별 준공공 교통 유무	인도설치 도로비율 (%)	일반 병의원	한방 병의원	치과 병의원	방사선 병리 검사	행정리별 월1회 이상 순회방문 (%)	읍·면 내 의약품 구입 가능 (%)
기장군	군지역	78.9	0.000	-	78.9	78.9	98.5	X	-	42	17	15	0	-	100.0
달성군	군지역	82.9	0.000	-	93.1	68.7	87.6	X	0	63	32	28	0	-	100.0
강화군	군지역	78.4	0.263	-	43.1	100.0	91.8	X	3.2	20	14	10	0	98.9	100.0
용진군	군지역	81.2	1.713	-	17.2	11.6	50.7	O	0	2	0	0	0	94.5	100.0
울주군	군지역	86.2	0.000	-	51.0	75.0	89.1	X	0	64	31	29	0	100.0	100.0
수원시	일반시	94.4	0.009	-	99.8	98.3	-	X	-	572	224	314	11	-	100.0
성남시	일반시	91.5	0.040	-	99.9	99.3	-	X	-	606	241	334	8	-	100.0
의정부시	일반시	94.1	0.016	-	99.2	98.2	-	X	-	216	78	114	3	-	100.0
안양시	일반시	93.8	0.005	-	99.9	99.9	-	X	-	333	144	190	6	-	100.0
부천시	일반시	92.5	0.009	-	100.0	98.0	-	X	-	493	164	242	5	-	100.0
광명시	일반시	92.6	0.009	-	99.8	98.8	-	X	-	157	62	82	3	-	100.0
평택시	도농복합시	93.4	0.264	-	64.0	68.8	94.0	X	45.5	201	77	99	1	0.0	100.0
동두천시	일반시	91.6	0.042	-	96.7	95.9	-	X	-	42	13	14	0	-	100.0
안산시	일반시	95.8	0.022	-	99.6	98.7	-	X	-	337	105	162	6	-	100.0

구분		주거					교통			보건·의료					
		주거 가능	신재생 에너지 보일러 보급	공동시설 프로그램	안전한 마실물	오폐수 처리	대중교통		인도 설치	1차 진료			순회방문	의약품 구입	
시·군명	행정구역	최저주거 기준이상 가구비율 90%이상	%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이상	시·군별 하수도 보급률 71%이상	행정리별 도보 15분내 정류장 버스 하루 3회 이상 이용	시·군별 준공공 교통 유무	인도설치 도로비율 (%)	일반 병의원	한방 병의원	치과 병의원	방사선 병리 검사	행정리별 월1회 이상 순회방문 (%)	읍·면 내 의약품 구입 가능 (%)
고양시	일반시	95.2	0.031	-	98.0	88.3	-	X	-	470	198	255	4	-	100.0
과천시	일반시	96.1	0.122	-	99.8	97.7	-	X	-	27	10	19	0	-	100.0
구리시	일반시	90.8	0.003	-	99.9	100.0	-	X	-	117	42	66	2	-	100.0
남양주시	도농복합시	93.1	0.090	53.9	88.1	87.6	95.1	X	-	206	91	106	1	7.9	100.0
오산시	일반시	92.4	0.005	-	99.2	90.1	-	X	-	73	25	39	0	-	100.0
시흥시	일반시	95.3	0.023	-	99.3	89.1	-	X	-	169	53	84	1	-	100.0
군포시	일반시	95.0	0.001	-	100.0	96.6	-	X	-	134	49	73	0	-	100.0
의왕시	일반시	94.3	0.064	-	98.3	98.7	-	X	-	59	24	33	0	-	100.0
하남시	일반시	88.5	0.031	-	92.6	80.0	-	X	55.6	70	24	29	2	-	100.0
용인시	도농복합시	95.2	0.125	-	52.4	82.7	80.4	X	11.8	349	156	224	2	13.6	100.0
파주시	도농복합시	92.2	0.183	-	66.4	59.5	81.4	X	32.3	125	46	62	1	90.3	78.6
이천시	도농복합시	90.0	0.076	-	57.5	67.3	96.2	X	37.2	90	33	41	2	0.0	100.0
안성시	도농복합시	90.3	0.245	-	61.5	46.2	86.8	X	51.8	74	24	34	1	0.0	100.0
김포시	도농복합시	93.4	0.127	-	61.0	59.2	68.2	X	-	97	45	54	2	-	100.0
화성시	도농복합시	92.6	0.134	-	68.8	75.8	76.5	X	29.5	159	60	99	0	40.8	100.0
광주시	도농복합시	93.1	0.179	-	35.5	89.9	93.9	X	35.4	80	32	43	1	8.7	100.0
양주시	도농복합시	92.1	0.217	-	73.7	85.3	69.8	X	0	52	19	26	0	23.2	100.0
포천시	도농복합시	86.0	0.224	-	40.2	52.1	80.7	X	0	59	16	26	0	-	100.0
여주군	군지역	86.1	0.223	-	37.5	52.3	89.7	X	-	52	18	19	1	0.0	100.0

구분		주거					교통			보건·의료					
		주거 가능	신재생 에너지 보일러 보급	공동시설 프로그램	안전한 마실물	오폐수 처리	대중교통		인도 설치	1차 진료			순회방문	의약품 구입	
시·군명	행정구역	최저주거 기준이상 가구비율 90%이상	%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이상	시·군별 하수도 보급률 71%이상	행정리별 도보 15분내 정류장 버스 하루 3회 이상 이용	시·군별 준공공 교통 유무	인도설치 도로비율 (%)	일반 병의원	한방 병의원	치과 병의원	방사선 병리 검사	행정리별 월1회 이상 순회방문 (%)	읍·면 내 의약품 구입 가능 (%)
연천군	군지역	82.6	0.236	-	87.7	64.6	90.6	X	20.0	14	7	7	0	0.0	100.0
가평군	군지역	81.3	1.107	-	55.3	69.8	79.4	X	0.0	22	11	12	0	100.0	100.0
양평군	군지역	81.6	0.641	-	27.4	64.5	87.1	X	4.1	37	18	12	1	100.0	100.0
춘천시	도농복합시	88.4	0.091	-	44.7	89.7	88.1	X	60.0	125	46	59	4	-	100.0
원주시	도농복합시	88.4	0.163	-	6.5	83.9	97.1	O	100.0	165	78	71	5	62.1	88.9
강릉시	도농복합시	85.1	0.266	-	43.3	87.3	90.3	X	-	95	42	47	4	-	100.0
동해시	일반시	84.0	0.179	-	97.8	92.1	-	X	-	46	20	13	0	-	100.0
태백시	일반시	75.3	0.118	-	98.0	80.6	-	O	-	28	6	10	0	-	100.0
속초시	일반시	86.7	0.168	-	99.4	98.0	-	-	-	52	22	23	1	-	100.0
삼척시	도농복합시	73.0	0.144	-	43.7	80.4	65.8	O	-	27	9	10	0	-	100.0
홍천군	군지역	74.9	0.373	-	40.4	61.3	63.2	X	-	27	11	12	1	-	100.0
횡성군	군지역	72.2	0.335	-	26.3	47.6	82.8	O	5.8	12	11	4	0	-	100.0
영월군	군지역	67.0	0.357	-	49.9	3.1	72.2	O	6.6	15	5	3	0	-	100.0
평창군	군지역	73.0	0.688	-	66.1	45.4	54.3	O	-	13	9	9	0	-	100.0
정선군	군지역	68.5	0.174	-	55.9	78.2	71.7	O	30.8	10	6	4	0	-	100.0
철원군	군지역	83.7	0.561	-	48.8	44.9	92.5	O	31.3	14	7	7	0	-	54.5
화천군	군지역	74.4	0.082	-	36.6	24.3	61.7	O	1.7	7	3	3	0	-	100.0
양구군	군지역	78.5	0.578	-	55.9	84.6	81.6	O	47.1	4	2	4	0	-	100.0
인제군	군지역	76.5	0.446	-	80.4	48.8	78.6	O	8.5	8	3	4	0	-	100.0

구분		주거					교통			보건·의료					
		주거 가능	신재생 에너지 보일러 보급	공동시설 프로그램	안전한 마실물	오폐수 처리	대중교통		인도 설치	1차 진료			순회방문	의약품 구입	
시·군명	행정구역	최저주거 기준이상 가구비율 90%이상	%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이상	시·군별 하수도 보급률 71%이상	행정리별 도보 15분내 정류장 버스 하루 3회 이상 이용	시·군별 준공공 교통 유무	인도설치 도로비율 (%)	일반 병의원	한방 병의원	치과 병의원	방사선 병리 검사	행정리별 월1회 이상 순회방문 (%)	읍·면 내 의약품 구입 가능 (%)
고성군(강원)	군지역	79.2	0.155	-	78.6	43.1	90.6	X	0	7	4	5	0	-	83.3
양양군	군지역	78.7	0.258	-	64.4	41.9	82.3	O	21.1	5	3	5	0	-	100.0
청주시	일반시	93.5	0.178	-	99.2	97.4	-	-	-	361	151	149	6	-	100.0
충주시	도농복합시	85.9	0.254	61.6	24.6	80.1	92.2	X	5.5	107	37	36	1	-	100.0
제천시	도농복합시	82.4	0.582	-	35.5	86.0	92.2	X	-	77	29	28	2	-	100.0
청원군	군지역	83.6	0.568	90.5	45.6	38.5	96.4	O	32.8	45	19	15	0	50.0	100.0
보은군	군지역	68.2	0.838	99.2	19.4	55.9	77.2	X	-	17	6	4	0	99.2	100.0
옥천군	군지역	73.9	1.081	-	58.7	68.6	80.2	O	-	32	10	6	0	100.0	100.0
영동군	군지역	69.1	0.842	-	57.2	39.5	71.7	-	-	28.0	9.0	6.0	0.0	-	100.0
진천군	군지역	85.7	0.680	86.2	61.3	60.9	88.4	O	25.8	24	10	10	0	17.7	100.0
괴산군	군지역	65.1	0.911	100.0	28.0	33.0	87.1	X	-	15.0	7.0	2.0	0.0	8.2	100.0
음성군	군지역	84.4	0.642	-	56.9	48.4	80.9	-	-	45	16	13	0	10.9	100.0
단양군	군지역	71.8	1.361	-	33.2	48.8	90.5	-	-	13	5	3	0	13.5	87.5
증평군	군지역	86.4	0.548	100.0	32.5	82.4	94.9	O	15.6	21	5	7	0	42.7	100.0
천안시	도농복합시	91.6	0.075	-	26.6	90.0	91.5	-	-	286	115	123	5	-	100.0
공주시	도농복합시	81.9	0.418	-	25.8	62.2	97.1	-	-	74	31	21	1	-	100.0
보령시	도농복합시	84.9	0.402	-	17.8	58.4	91.1	-	-	54	23	19	1	-	100.0
아산시	도농복합시	90.4	0.086	-	66.9	48.0	89.4	-	-	95	27	43	1	-	100.0
서산시	도농복합시	86.6	0.110	-	40.7	57.1	92.2	-	-	70	25	29	2	-	100.0

구분		주거					교통			보건·의료					
		주거 가능	신재생 에너지 보일러 보급	공동시설 프로그램	안전한 마실물	오폐수 처리	대중교통		인도 설치	1차 진료			순회방문	의약품 구입	
시·군명	행정구역	최저주거 기준이상 가구비율 90%이상	%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이상	시·군별 하수도 보급률 71%이상	행정리별 도보 15분내 정류장 버스 하루 3회 이상 이용	시·군별 준공공 교통 유무	인도설치 도로비율 (%)	일반 병의원	한방 병의원	치과 병의원	방사선 병리 검사	행정리별 월1회 이상 순회방문 (%)	읍·면 내 의약품 구입 가능 (%)
논산시	도농복합시	81.3	0.179	-	12.6	46.7	96.0	-	-	83	34	24	1	-	100.0
계룡시	도농복합시	95.1	0.077	-	92.6	95.0	98.2	-	-	17	8	8	0	-	100.0
금산군	군지역	66.2	0.208	-	32.3	47.0	85.5	-	-	36	10	9	0	-	100.0
연기군	군지역	85.9	0.261	-	34.3	53.4	87.9	-	-	52	14	16	0	-	100.0
부여군	군지역	80.7	0.237	-	38.1	36.6	92.1	-	-	40	12	11	0	-	100.0
서천군	군지역	78.2	0.122	-	26.1	21.5	93.3	-	-	34	14	11	0	-	100.0
청양군	군지역	76.4	0.315	-	7.4	35.5	79.7	-	-	12	5	4	0	-	100.0
홍성군	군지역	83.3	0.233	-	15.1	57.3	79.5	-	-	42	15	19	1	-	100.0
예산군	군지역	86.0	0.622	-	12.5	52.6	96.7	-	-	44	21	16	0	-	100.0
태안군	군지역	86.9	0.189	-	38.5	37.7	91.8	-	-	30	10	12	1	-	100.0
당진군	군지역	87.6	0.075	-	30.2	56.1	91.3	-	-	67	21	26	0	-	100.0
전주시	일반시	91.4	0.041	-	99.2	96.1	-	X	-	412	164	179	12	-	100.0
군산시	도농복합시	89.3	0.063	0.0	49.9	86.3	94.4	X	-	147	55	54	2	94.6	100.0
익산시	도농복합시	87.9	0.114	-	71.6	81.0	97.9	X	18.5	167	75	82	2	15.4	100.0
정읍시	도농복합시	81.8	0.270	-	78.4	63.5	94.8	X	-	73	23	25	1	70.9	100.0
남원시	도농복합시	76.0	0.199	-	34.0	79.1	91.3	X	-	59	15	17	0	0.0	93.8
김제시	도농복합시	79.1	0.397	-	66.4	47.7	91.9	X	-	54	15	13	1	-	100.0
완주군	군지역	73.2	0.777	51.7	15.6	47.3	95.0	O	-	37	13	11	0	100.0	100.0
진안군	군지역	57.5	1.157	0.0	30.0	54.3	88.7	O	5.6	12	4	3	0	93.2	100.0

구분		주거					교통			보건·의료					
		주거 가능	신재생 에너지 보일러 보급	공동시설 프로그램	안전한 마실물	오폐수 처리	대중교통		인도 설치	1차 진료			순회방문	의약품 구입	
시·군명	행정구역	최저주거 기준이상 가구비율 90%이상	%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이상	시·군별 하수도 보급률 71%이상	행정리별 도보 15분내 정류장 버스 하루 3회 이상 이용	시·군별 준공공 교통 유무	인도설치 도로비율 (%)	일반 병의원	한방 병의원	치과 병의원	방사선 병리 검사	행정리별 월1회 이상 순회방문 (%)	읍·면 내 의약품 구입 가능 (%)
무주군	군지역	66.3	0.657	4.0	47.5	60.5	68.5	X	-	12	8	2	0	4.0	100.0
장수군	군지역	58.9	0.535	0.0	42.5	46.3	77.7	X	0.0	8	4	3	0	35.7	100.0
임실군	군지역	55.5	0.343	0.0	45.1	60.3	83.1	X	2.5	16	8	5	0	34.5	100.0
순창군	군지역	61.3	0.206	65.8	30.8	41.1	82.7	X	0.0	17	4	4	0	99.7	100.0
고창군	군지역	78.3	0.221	95.6	83.3	42.4	82.2	X	-	33	9	8	0	-	100.0
부안군	군지역	83.6	0.357	88.2	96.6	43.7	97.0	X	0.0	34	10	11	0	35.4	100.0
목포시	일반시	86.6	0.015	-	99.6	96.7	-	-	-	155	41	48	1	-	100.0
여수시	도농복합시	87.6	0.338	-	8.7	80.6	76.6	-	12.5	122	46	60	1	34.9	100.0
순천시	도농복합시	85.7	0.068	-	60.4	87.9	96.6	-	0.0	141	40	55	2	72.2	100.0
나주시	도농복합시	74.2	0.533	-	40.1	48.5	88.4	-	0.0	55	14	18	0	92.2	100.0
광양시	도농복합시	87.2	0.199	-	33.2	90.5	93.2	-	-	49	20	27	0	36.6	100.0
담양군	군지역	64.7	0.387	-	18.1	39.7	86.6	-	0.0	28	6	6	0	100.0	100.0
곡성군	군지역	63.0	0.351	-	36.2	58.6	87.8	-	0.0	15	6	4	0	100.0	100.0
구례군	군지역	73.5	0.194	-	32.4	72.3	91.3	-	25.0	12	6	6	0	87.3	100.0
고흥군	군지역	78.0	0.159	-	24.6	35.7	85.7	-	0.0	34	12	10	0	19.5	100.0
보성군	군지역	71.6	0.690	-	26.5	52.1	87.3	-	-	27	6	6	0	16.2	100.0
화순군	군지역	73.5	1.633	-	54.5	71.9	93.7	-	6.5	36	7	14	0	96.5	100.0
장흥군	군지역	67.9	0.216	-	12.6	14.9	81.3	-	2.3	26	5	6	0	11.6	100.0
강진군	군지역	76.1	1.704	-	18.5	47.2	83.9	-	23.4	17	5	4	0	19.6	100.0

구분		주거					교통			보건·의료					
		주거 가능	신재생 에너지 보일러 보급	공동시설 프로그램	안전한 마실물	오폐수 처리	대중교통		인도 설치	1차 진료			순회방문	의약품 구입	
시·군명	행정구역	최저주거 기준이상 가구비율 90%이상	%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이상	시·군별 하수도 보급률 71%이상	행정리별 도보 15분내 정류장 버스 하루 3회 이상 이용	시·군별 준공공 교통 유무	인도설치 도로비율 (%)	일반 병의원	한방 병의원	치과 병의원	방사선 병리 검사	행정리별 월1회 이상 순회방문 (%)	읍·면 내 의약품 구입 가능 (%)
해남군	군지역	72.9	0.545	-	24.0	39.6	84.8	-	8.3	40	9	13	0	57.3	100.0
영암군	군지역	83.1	0.439	-	42.0	51.1	87.6	-	6.1	24	10	8	0	96.2	100.0
무안군	군지역	77.7	0.428	-	41.2	37.2	73.8	-	17.1	29	9	8	0	51.0	100.0
함평군	군지역	73.1	0.467	-	24.8	36.2	86.7	-	22.7	19	5	5	0	68.6	100.0
영광군	군지역	79.3	0.252	-	58.9	39.9	85.3	-	0.0	33	10	13	0	59.6	100.0
장성군	군지역	70.4	0.488	-	23.6	44.4	92.3	-	36.1	21	7	7	0	5.6	100.0
완도군	군지역	84.0	0.549	-	57.7	45.6	72.7	-	0.0	20	7	8	0	16.3	100.0
진도군	군지역	70.1	0.186	-	47.3	50.4	78.5	-	18.8	15	3	4	0	54.5	100.0
신안군	군지역	65.7	0.183	-	55.8	17.6	58.9	O	0.0	12	2	2	0	58.9	100.0
포항시	도농복합시	84.1	0.081	-	32.5	78.0	80.7	O	7.4	246	106	104	3	10.4	100.0
경주시	도농복합시	75.9	0.101	-	57.5	84.5	82.4	O	-	124	54	42	1	29.9	100.0
김천시	도농복합시	75.0	0.239	-	26.7	63.1	91.1	X	100.0	59	23	25	0	27.5	100.0
안동시	도농복합시	66.8	0.142	-	37.1	71.3	80.3	X	3.0	74	37	31	2	43.8	100.0
구미시	도농복합시	90.8	0.047	-	63.3	93.5	71.1	O	35.3	185	81	95	1	81.3	100.0
영주시	도농복합시	66.7	0.167	-	15.6	78.8	84.9	X	-	58	17	20	1	40.2	100.0
영천시	도농복합시	61.9	0.127	-	52.1	62.4	88.8	X	-	66	30	14	0	5.8	100.0
상주시	도농복합시	62.5	0.397	-	28.2	57.0	78.4	X	-	47	18	16	0	34.3	100.0
문경시	도농복합시	67.2	0.243	-	56.6	71.1	79.1	O	-	40	12	11	0	8.4	100.0
경산시	도농복합시	85.1	0.085	-	80.5	87.2	83.8	O	-	124	49	46	1	29.7	100.0

구분		주거					교통			보건·의료					
		주거 가능	신재생 에너지 보일러 보급	공동시설 프로그램	안전한 마실물	오폐수 처리	대중교통		인도 설치	1차 진료			순회방문	의약품 구입	
시·군명	행정구역	최저주거 기준이상 가구비율 90%이상	%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이상	시·군별 하수도 보급률 71%이상	행정리별 도보 15분내 정류장 버스 하루 3회 이상 이용	시·군별 준공공 교통 유무	인도설치 도로비율 (%)	일반 병의원	한방 병의원	치과 병의원	방사선 병리 검사	행정리별 월1회 이상 순회방문 (%)	읍·면 내 의약품 구입 가능 (%)
군위군	군지역	43.3	0.154	-	39.1	0.0	69.2	O	-	8	3	2	0	82.4	100.0
의성군	군지역	45.9	0.275	-	34.8	26.9	71.5	O	-	25	10	9	0	10.0	100.0
청송군	군지역	44.4	0.389	-	48.6	8.6	83.1	O	28.6	9	6	3	0	63.2	100.0
영양군	군지역	34.6	0.271	-	31.5	2.6	84.2	X	1.1	3	3	2	0	-	100.0
영덕군	군지역	60.1	0.409	-	79.0	68.3	74.5	X	-	19	7	6	0	100.0	100.0
청도군	군지역	56.7	0.661	-	27.0	50.8	91.0	X	-	23	10	7	0	100.0	100.0
고령군	군지역	60.8	0.618	-	59.9	30.9	69.8	X	-	11	5	6	0	64.4	100.0
상주군	군지역	58.5	0.549	-	11.1	26.4	39.5	X	3.9	22	8	6	0	15.5	100.0
칠곡군	군지역	83.7	0.095	-	61.3	61.1	50.3	X	86.7	52	16	18	0	16.4	100.0
예천군	군지역	56.4	0.203	-	36.2	30.9	83.0	X	-	21	8	5	0	17.0	100.0
봉화군	군지역	43.0	0.506	-	34.5	3.8	76.9	O	-	6	3	3	0	100.0	100.0
울진군	군지역	65.4	0.064	-	48.2	22.8	75.9	O	10.1	17	11	8	0	100.0	100.0
울릉군	군지역	80.8	0.784	-	61.2	3.3	96.0	O	100.0	0	1	1	0	100.0	100.0
창원시	도농복합시	92.2	0.534	-	48.7	96.5	100.0	-	-	216	102	124	6	-	100.0
마산시	도농복합시	84.7	0.185	-	42.3	93.1	98.9	-	-	245	94	99	7	-	100.0
진주시	도농복합시	82.4	0.153	-	79.7	90.9	93.5	O	20.8	166	68	86	4	15.5	100.0
진해시	일반시	88.0	0.528	-	98.5	91.0	-	-	-	80	32	33	1	-	100.0
통영시	도농복합시	82.1	0.071	-	75.9	79.6	65.0	-	23.1	66	16	21	2	15.7	100.0
사천시	도농복합시	76.8	0.369	-	89.9	85.2	48.6	-	15.4	57	17	22	0	-	100.0

구분		주거					교통			보건·의료					
		주거 가능	신재생 에너지 보일러 보급	공동시설 프로그램	안전한 마실물	오폐수 처리	대중교통		인도 설치	1차 진료			순회방문	의약품 구입	
시·군명	행정구역	최저주거 기준이상 가구비율 90%이상	%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이상	시·군별 하수도 보급률 71%이상	행정리별 도보 15분내 정류장 버스 하루 3회 이상 이용	시·군별 준공공 교통 유무	인도설치 도로비율 (%)	일반 병의원	한방 병의원	치과 병의원	방사선 병리 검사	행정리별 월1회 이상 순회방문 (%)	읍·면 내 의약품 구입 가능 (%)
김해시	도농복합시	90.2	0.086	-	82.0	90.2	93.7	-	-	222	87	95	2	-	100.0
밀양시	도농복합시	67.5	0.166	-	23.4	70.9	69.1	O	0.0	60	22	19	0	53.6	100.0
거제시	도농복합시	87.4	0.100	-	69.1	80.4	96.8	-	10.4	80	45	43	1	-	100.0
양산시	도농복합시	88.8	0.047	-	37.6	81.7	96.8	-	2.6	114	43	51	1	-	100.0
의령군	군지역	51.5	0.403	100.0	15.2	46.5	17.3	-	-	14	3	4	0	100.0	100.0
함안군	군지역	71.8	0.181	-	70.2	31.7	35.7	O	9.6	25	11	7	0	-	100.0
창녕군	군지역	55.6	0.200	-	55.4	59.2	81.1	-	-	31	14	6	0	-	100.0
고성군(경남)	군지역	66.8	0.266	-	34.8	39.0	80.9	-	-	22	11	7	0	-	100.0
남해군	군지역	68.2	0.454	-	32.4	44.7	86.4	O	15.8	27	7	5	0	-	100.0
하동군	군지역	70.8	2.734	-	33.2	53.3	19.1	O	4.6	20	8	7	0	-	100.0
산청군	군지역	59.7	0.594	-	25.4	26.5	58.9	-	0.0	14	7	5	0	-	100.0
함양군	군지역	59.9	0.530	100.0	17.5	45.0	78.1	X	0.0	20	7	4	0	-	100.0
거창군	군지역	59.2	0.413	-	8.5	64.5	88.4	-	-	25	14	14	0	18.0	100.0
합천군	군지역	51.5	0.181	-	17.2	31.0	70.5	X	0.0	19	10	7	0	-	100.0
제주시	도농복합시	83.4	0.042	-	100.0	82.6	56.3	O	25.3	222	88	109	3	100.0	100.0
서귀포시	도농복합시	78.0	0.028	-	100.0	80.4	34.2	O	20.7	70	27	29	1	100.0	100.0

부록 5.

농어촌 서비스기준 기준자료 구축 현황(계속)

구분		교육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고등학교	교육발전 위원회	평생 교육	청소년 (청소년활동 진흥시설)	아동	다문화가족		도난 방지	독서	문화시설	
시·군명	행정구역	시·군별 우수/기숙형 고교 1개소 이상	교육발전 위원회 유무	읍·면별 1개소 이상	시·군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수	읍·면별 지역아동 정보센터 1개이상(%)	시·군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서비스 여부	행정리별 방범용 CCTV설치 (%)	읍·면별 공공 및 작은도서관 1개 이상(%)	시·군별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수	시·군별 월 평균 문화 프로그램 수
기장군	군지역	1	O	20.0	2	40.0	O	O	-	80.0	1	0.4
달성군	군지역	2	O	33.3	1	77.8	O	O	-	44.4	1	30.4
강화군	군지역	3	X	23.1	10	23.1	O	O	-	69.2	2	-
용진군	군지역	0	O	0.0	0	0.0	X	X	-	14.3	-	-
울주군	군지역	1	X	33.3	4	33.3	O	O	-	75.0	1	0.7
수원시	일반시	0	X	37.5	3	-	O	O	-	83.9	2	-
성남시	일반시	0	X	45.5	5	-	O	O	-	45.5	2	-
의정부시	일반시	0	X	61.5	1	-	O	O	-	69.2	2	0.0
안양시	일반시	0	X	71.4	4	-	O	O	-	100.0	3	0.3
부천시	일반시	0	O	87.5	5	-	O	O	-	66.7	2	0.3
광명시	일반시	0	O	50.0	4	-	O	O	-	50.0	1	-
평택시	도농복합시	1	X	11.1	7	44.4	O	O	-	55.6	4	0.1
동두천시	일반시	0	O	16.7	1	-	O	O	-	25.0	1	0.2
안산시	일반시	0	O	50.0	4	-	O	O	-	50.0	2	5.0

구분		교육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고등학교	교육발전 위원회	평생 교육	청소년 (청소년활동 진흥시설)	아동	다문화가족		도난 방지	독서	문화시설	
시·군명	행정구역	시·군별 우수/기숙형 고교 1개소 이상	교육발전 위원회 유무	읍·면별 1개소 이상	시·군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수	읍·면별 지역아동 정보센터 1개이상(%)	시·군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서비스 여부	행정리별 방범용 CCTV설치 (%)	읍·면별 공공 및 작은도서관 1개 이상(%)	시·군별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수	시·군별 월 평균 문화 프로그램 수
고양시	일반시	0	O	37.7	6	-	O	O	-	41.5	4	0.3
과천시	일반시	0	X	20.0	1	-	X	X	-	70.0	2	0.1
구리시	일반시	0	X	71.4	1	-	X	X	-	85.7	1	0.3
남양주시	도농복합시	1	O	66.7	3	88.9	O	O	-	77.8	1	-
오산시	일반시	0	O	20.8	1	-	O	O	-	45.8	2	0.3
시흥시	일반시	0	O	13.3	2	-	O	O	-	40.0	1	-
군포시	일반시	0	O	66.7	3	-	O	O	-	77.8	2	0.1
의왕시	일반시	0	X	45.5	1	-	X	X	-	63.6	1	0.2
하남시	일반시	0	X	25.0	1	-	X	X	-	12.5	2	0.1
용인시	도농복합시	1	X	85.7	11	57.1	O	O	-	0.0	2	0.1
파주시	도농복합시	1	O	35.7	8	42.9	O	O	-	50.0	1	0.2
이천시	도농복합시	1	O	60.0	6	40.0	O	O	-	50.0	1	2.1
안성시	도농복합시	0	O	41.7	2	33.3	O	O	-	25.0	2	0.4
김포시	도농복합시	1	X	16.7	5	83.3	O	O	-	33.3	1	-
화성시	도농복합시	1	O	46.2	3	46.2	O	O	-	46.2	1	-
광주시	도농복합시	1	X	28.6	3	57.1	O	O	-	57.1	2	1.1
양주시	도농복합시	1	O	40.0	5	60.0	O	O	-	80.0	2	0.3
포천시	도농복합시	1	O	25.0	10	16.7	X	X	-	58.3	2	0.6

구분		교육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고등학교	교육발전 위원회	평생 교육	청소년 (청소년활동 진흥시설)	아동	다문화가족		도난 방지	독서	문화시설	
시·군명	행정구역	시·군별 우수/기숙형 고교 1개소 이상	교육발전 위원회 유무	읍·면별 1개소 이상	시·군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수	읍·면별 지역아동 정보센터 1개이상(%)	시·군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서비스 여부	행정리별 방범용 CCTV설치 (%)	읍·면별 공공 및 작은도서관 1개 이상(%)	시·군별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수	시·군별 월 평균 문화 프로그램 수
여주군	군지역	1	X	10.0	5	60.0	O	O	-	70.0	1	-
연천군	군지역	1	X	10.0	3	20.0	X	X	-	40.0	1	-
가평군	군지역	1	X	50.0	14	50.0	O	O	-	50.0	2	0.3
양평군	군지역	1	O	25.0	6	33.3	X	X	-	50.0	2	0.2
춘천시	도농복합시	0	O	30.0	7	50.0	O	O	-	50.0	2	-
원주시	도농복합시	0	X	33.3	7	33.3	O	O	-	55.6	2	0.1
강릉시	도농복합시	0	X	37.5	2	25.0	O	O	-	37.5	2	2.8
동해시	일반시	0	-	11.1	4	-	O	O	-	19.4	2	0.2
태백시	일반시	0	-	11.8	4	-	X	X	-	41.2	2	-
속초시	일반시	0	-	23.1	3	-	O	O	-	46.2	2	2.2
삼척시	도농복합시	0	O	0.0	2	50.0	X	X	-	50.0	2	1.8
홍천군	군지역	3	O	10.0	3	30.0	O	O	-	20.0	2	0.5
횡성군	군지역	2	X	44.4	5	33.3	O	O	-	100.0	1	0.3
영월군	군지역	1	O	11.1	0	22.2	O	O	-	33.3	2	0.3
평창군	군지역	1	X	25.0	5	37.5	O	O	-	87.5	2	1.7
정선군	군지역	1	O	11.1	2	33.3	X	X	-	44.4	2	0.1
철원군	군지역	3	X	9.1	2	18.2	O	O	-	27.3	1	-
화천군	군지역	1	O	20.0	2	20.0	X	X	-	100.0	2	0.3

구분		교육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고등학교	교육발전 위원회	평생 교육	청소년 (청소년활동 진흥시설)	아동	다문화가족		도난 방지	독서	문화시설	
시·군명	행정구역	시·군별 우수/기숙형 고교 1개소 이상	교육발전 위원회 유무	읍·면별 1개소 이상	시·군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수	읍·면별 지역아동 정보센터 1개이상(%)	시·군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서비스 여부	행정리별 방법용 CCTV설치 (%)	읍·면별 공공 및 작은도서관 1개 이상(%)	시·군별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수	시·군별 월 평균 문화 프로그램 수
양구군	군지역	2	O	20.0	5	0.0	O	O	-	40.0	1	-
인제군	군지역	2	O	66.7	4	33.3	O	O	-	50.0	1	1.2
고성군(강원)	군지역	1	X	33.3	4	66.7	X	X	-	50.0	2	0.1
양양군	군지역	1	O	16.7	1	33.3	X	X	-	33.3	1	0.8
청주시	일반시	0	-	22.0	3	-	O	O	-	36.6	2	-
충주시	도농복합시	2	O	23.1	3	53.8	O	O	25.1	76.9	2	-
제천시	도농복합시	2	X	12.5	7	0.0	O	O	10.5	62.5	2	0.2
청원군	군지역	1	O	28.6	1	64.3	O	O	34.7	64.3	1	0.4
보은군	군지역	1	O	9.1	9	36.4	O	O	56.3	63.6	2	0.6
옥천군	군지역	1	O	11.1	3	11.1	O	O	39.3	44.4	3	-
영동군	군지역	1	-	9.1	2	36.4	O	O	-	54.5	1	0.3
진천군	군지역	1	O	14.3	1	42.9	O	O	44.3	71.4	3	0.1
괴산군	군지역	1	-	9.1	5	63.6	O	O	36.9	90.9	1	0.3
음성군	군지역	1	O	44.4	3	66.7	X	X	37.9	100.0	1	-
단양군	군지역	1	O	12.5	6	50.0	X	X	20.3	75.0	1	0.9
증평군	군지역	1	O	50.0	2	50.0	O	X	43.7	100.0	2	-
천안시	도농복합시	1	-	25.0	7	58.3	O	O	-	75.0	4	-
공주시	도농복합시	1	-	27.3	3	27.3	O	O	-	9.1	2	0.9

구분		교육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고등학교	교육발전 위원회	평생 교육	청소년 (청소년활동 진흥시설)	아동	다문화가족		도난 방지	독서	문화시설	
시·군명	행정구역	시·군별 우수/기숙형 고교 1개소 이상	교육발전 위원회 유무	읍·면별 1개소 이상	시·군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수	읍·면별 지역아동 정보센터 1개이상(%)	시·군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서비스 여부	행정리별 방범용 CCTV설치 (%)	읍·면별 공공 및 작은도서관 1개 이상(%)	시·군별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수	시·군별 월 평균 문화 프로그램 수
보령시	도농복합시	0	-	18.2	3	9.1	0	X	-	54.5	2	-
아산시	도농복합시	1	-	45.5	1	81.8	0	0	-	72.7	1	-
서산시	도농복합시	0	-	10.0	4	60.0	0	0	-	40.0	2	0.3
논산시	도농복합시	1	-	30.8	2	69.2	0	X	-	53.8	1	0.3
계룡시	도농복합시	0	-	0.0	0	33.3	X	X	-	33.3	-	-
금산군	군지역	2	-	30.0	2	80.0	0	0	-	20.0	2	0.8
연기군	군지역	1	-	25.0	2	25.0	0	X	-	62.5	2	3.8
부여군	군지역	1	-	6.3	4	18.8	0	0	-	25.0	2	-
서천군	군지역	2	-	7.7	0	23.1	0	0	-	38.5	1	0.1
청양군	군지역	2	-	20.0	3	30.0	0	0	-	20.0	2	0.2
홍성군	군지역	2	-	9.1	3	27.3	0	0	-	45.5	2	0.1
예산군	군지역	1	-	8.3	1	66.7	0	0	-	16.7	2	0.3
태안군	군지역	1	-	25.0	5	37.5	0	X	-	37.5	2	0.3
당진군	군지역	1	-	16.7	2	16.7	0	X	-	75.0	2	2.2
전주시	일반시	0	X	27.7	5	-	0	0	-	49.4	6	-
군산시	도농복합시	0	0	27.3	2	72.7	0	0	-	45.5	2	-
익산시	도농복합시	0	X	0.0	3	33.3	0	0	-	40.0	2	0.6
정읍시	도농복합시	2	X	0.0	4	40.0	0	0	-	20.0	2	0.8

구분		교육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고등학교	교육발전 위원회	평생 교육	청소년 (청소년활동 진흥시설)	아동	다문화가족		도난 방지	독서	문화시설	
시·군명	행정구역	시·군별 우수/기숙형 고교 1개소 이상	교육발전 위원회 유무	읍·면별 1개소 이상	시·군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수	읍·면별 지역아동 정보센터 1개이상(%)	시·군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서비스 여부	행정리별 방범용 CCTV설치 (%)	읍·면별 공공 및 작은도서관 1개 이상(%)	시·군별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수	시·군별 월 평균 문화 프로그램 수
남원시	도농복합시	2	X	12.5	3	43.8	O	O	-	31.3	2	-
김제시	도농복합시	1	-	13.3	8	20.0	O	O	-	53.3	2	3.3
완주군	군지역	1	-	15.4	5	61.5	O	O	-	69.2	2	0.3
진안군	군지역	1	X	18.2	4	45.5	O	X	-	45.5	2	2.7
무주군	군지역	1	O	16.7	3	50.0	O	X	-	50.0	2	0.2
장수군	군지역	1	X	14.3	2	57.1	O	O	-	71.4	2	-
임실군	군지역	1	X	25.0	2	25.0	O	O	-	25.0	1	0.3
순창군	군지역	1	O	9.1	2	18.2	O	O	-	9.1	2	0.3
고창군	군지역	1	O	7.1	4	14.3	O	O	-	21.4	2	0.9
부안군	군지역	1	X	7.7	3	46.2	O	X	-	30.8	2	0.4
목포시	일반시	0	-	12.5	1	-	O	X	-	21.9	2	0.6
여주시	도농복합시	1	O	14.3	2	71.4	O	O	-	42.9	2	0.5
순천시	도농복합시	0	-	18.2	4	72.7	O	O	-	54.5	2	-
나주시	도농복합시	1	-	7.7	3	84.6	O	O	-	30.8	2	-
광양시	도농복합시	1	O	14.3	2	28.6	O	O	-	42.9	2	-
담양군	군지역	1	O	8.3	4	50.0	O	O	-	66.7	2	4.3
곡성군	군지역	1	-	18.2	1	63.6	O	O	-	54.5	1	-
구례군	군지역	1	O	12.5	2	37.5	X	X	-	100.0	1	-

구분		교육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고등학교	교육발전 위원회	평생 교육	청소년 (청소년활동 진흥시설)	아동	다문화가족		도난 방지	독서	문화시설	
시·군명	행정구역	시·군별 우수/기숙형 고교 1개소 이상	교육발전 위원회 유무	읍·면별 1개소 이상	시·군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수	읍·면별 지역아동 정보센터 1개이상(%)	시·군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서비스 여부	행정리별 방범용 CCTV설치 (%)	읍·면별 공공 및 작은도서관 1개 이상(%)	시·군별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수	시·군별 월 평균 문화 프로그램 수
고흥군	군지역	1	O	6.3	2	62.5	O	O	-	37.5	2	0.3
보성군	군지역	2	-	16.7	1	41.7	X	X	-	91.7	1	0.0
화순군	군지역	2	-	7.7	0	23.1	O	O	-	23.1	1	0.5
장흥군	군지역	1	O	10.0	2	60.0	O	O	-	70.0	2	0.1
강진군	군지역	1	O	18.2	0	45.5	X	X	-	63.6	2	-
해남군	군지역	1	O	7.1	4	85.7	O	O	-	71.4	2	0.0
영암군	군지역	1	O	27.3	0	100.0	O	O	-	27.3	2	0.3
무안군	군지역	1	-	11.1	0	100.0	O	O	-	55.6	2	-
함평군	군지역	1	O	11.1	1	77.8	O	O	-	100.0	1	0.0
영광군	군지역	2	O	18.2	0	63.6	O	O	-	27.3	1	0.7
장성군	군지역	1	-	9.1	3	63.6	O	O	-	100.0	1	0.3
완도군	군지역	1	O	8.3	2	66.7	X	X	-	50.0	1	-
진도군	군지역	1	-	14.3	1	71.4	X	X	-	14.3	2	4.0
신안군	군지역	1	O	14.3	1	21.4	X	X	-	28.6	1	0.2
포항시	도농복합시	0	-	14.3	6	71.4	O	O	-	0.0	2	-
경주시	도농복합시	1	-	25.0	19	33.3	O	O	-	33.3	3	1.7
김천시	도농복합시	2	-	6.7	3	13.3	O	O	-	40.0	2	0.1
안동시	도농복합시	0	-	21.4	3	14.3	O	O	-	7.1	2	1.6

구분		교육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고등학교	교육발전 위원회	평생 교육	청소년 (청소년활동 진흥시설)	아동	다문화가족		도난 방지	독서	문화시설	
시·군명	행정구역	시·군별 우수/기숙형 고교 1개소 이상	교육발전 위원회 유무	읍·면별 1개소 이상	시·군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수	읍·면별 지역아동 정보센터 1개이상(%)	시·군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서비스 여부	행정리별 방범용 CCTV설치 (%)	읍·면별 공공 및 작은도서관 1개 이상(%)	시·군별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수	시·군별 월 평균 문화 프로그램 수
구미시	도농복합시	2	-	12.5	2	50.0	0	0	-	75.0	2	1.1
영주시	도농복합시	2	-	20.0	5	40.0	0	0	-	20.0	2	0.4
영천시	도농복합시	2	-	36.4	3	9.1	0	0	-	45.5	2	-
상주시	도농복합시	1	-	0.0	2	22.2	0	0	-	5.6	2	1.9
문경시	도농복합시	2	-	11.1	3	77.8	0	0	-	44.4	2	0.4
경산시	도농복합시	0	-	50.0	3	87.5	0	0	-	50.0	2	0.3
군위군	군지역	1	-	12.5	1	25.0	X	X	-	62.5	2	0.3
의성군	군지역	2	-	5.6	2	16.7	0	0	-	22.2	1	-
청송군	군지역	1	-	12.5	1	0.0	0	X	-	50.0	1	0.4
영양군	군지역	1	-	16.7	1	33.3	X	X	-	16.7	2	0.6
영덕군	군지역	1	-	22.2	3	44.4	X	X	-	100.0	2	0.4
청도군	군지역	1	-	11.1	0	11.1	X	X	-	88.9	1	0.1
고령군	군지역	0	-	25.0	1	25.0	X	X	-	25.0	2	0.2
성주군	군지역	1	-	10.0	1	10.0	0	0	-	60.0	2	-
칠곡군	군지역	1	-	25.0	3	37.5	X	X	-	100.0	1	0.1
예천군	군지역	1	-	8.3	1	16.7	0	0	-	41.7	2	0.1
봉화군	군지역	1	-	10.0	1	0.0	0	0	-	100.0	1	0.3
울진군	군지역	2	-	10.0	2	10.0	0	0	-	50.0	2	0.2

구분		교육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고등학교	교육발전 위원회	평생 교육	청소년 (청소년활동 진흥시설)	아동	다문화가족		도난 방지	독서	문화시설	
시·군명	행정구역	시·군별 우수/기숙형 고교 1개소 이상	교육발전 위원회 유무	읍·면별 1개소 이상	시·군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수	읍·면별 지역아동 정보센터 1개이상(%)	시·군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서비스 여부	행정리별 방범용 CCTV설치 (%)	읍·면별 공공 및 작은도서관 1개 이상(%)	시·군별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수	시·군별 월 평균 문화 프로그램 수
울릉군	군지역	0	-	33.3	2	33.3	X	X	-	33.3	2	0.2
창원시	도농복합시	1	-	0.0	2	66.7	O	O	-	100.0	2	-
마산시	도농복합시	0	-	40.0	3	40.0	O	O	-	20.0	2	0.4
진주시	도농복합시	1	-	6.3	1	25.0	O	O	-	43.8	2	0.3
진해시	일반시	1	-	4.6	4	-	X	X	-	12.3	2	1.8
통영시	도농복합시	1	O	14.3	2	28.6	X	X	-	42.9	2	-
사천시	도농복합시	1	-	25.0	1	37.5	O	O	-	50.0	2	0.3
김해시	도농복합시	1	X	25.0	5	62.5	O	O	-	62.5	2	2.2
밀양시	도농복합시	1	X	9.1	4	63.6	O	O	-	36.4	1	-
거제시	도농복합시	1	-	11.1	5	44.4	O	O	-	11.1	2	0.1
양산시	도농복합시	1	-	40.0	6	60.0	O	O	-	40.0	2	-
의령군	군지역	1	-	15.4	4	7.7	X	X	-	53.8	2	0.3
함안군	군지역	1	O	20.0	1	30.0	O	O	-	50.0	2	-
창녕군	군지역	1	X	14.3	3	28.6	X	X	-	100.0	1	0.1
고성군(경남)	군지역	2	X	7.1	2	21.4	O	O	-	100.0	2	-
남해군	군지역	1	X	10.0	5	50.0	O	O	-	10.0	2	5.0
하동군	군지역	1	X	7.7	10	30.8	X	X	-	76.9	2	-
산청군	군지역	1	X	27.3	4	27.3	X	X	-	54.5	2	0.4

구분		교육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고등학교	교육발전 위원회	평생 교육	청소년 (청소년활동 진흥시설)	아동	다문화가족		도난 방지	독서	문화시설	
시·군명	행정구역	시·군별 우수/기숙형 고교 1개소 이상	교육발전 위원회 유무	읍·면별 1개소 이상	시·군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수	읍·면별 지역아동 정보센터 1개이상(%)	시·군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서비스 여부	행정리별 방범용 CCTV설치 (%)	읍·면별 공공 및 작은도서관 1개 이상(%)	시·군별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수	시·군별 월 평균 문화 프로그램 수
함양군	군지역	1	X	9.1	1	36.4	0	0	-	54.5	1	-
거창군	군지역	1	O	8.3	2	41.7	0	0	-	41.7	2	0.1
합천군	군지역	1	O	11.8	4	47.1	0	0	-	35.3	2	0.3
제주시	도농복합시	0	X	28.6	16	85.7	0	0	-	100.0	3	0.1
서귀포시	도농복합시	0	X	60.0	19	100.0	0	0	-	100.0	1	0.8

주 1: 상수도보급률: 강화군의 경우 읍부를 포함한 군 전체 보급률임.

- 신재생에너지 보일러 보급: 2009년 주민등록통계 총 가구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일러 보급 가구의 비율의 의미함.
신재생에너지 보일러 보급은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현황(2009년 설치완료+2010 사업 승인)과 그린홈100만호사업 보급 현황(2009. 1~2010. 10)을 합한 값임.
- 대중교통: 마을별 도보 15분 내 대중교통 운행 자료는 2005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행정리)를 기준으로 함.
- 문화시설(월 1회 공연): 전국 지방문화원 프로그램(2009년 기준) 중 '공연 프로그램'의 '전체 공연 횟수'를 12개월로 나눈 값.
- '-'는 데이터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음을 나타냄.
- 일반시의 상수도보급률은 동지역의 보급률이며, 평생교육시설과 도서관의 값은 1개소 이상 있는 동지역의 비율을 나타냄.

부록 6.

농어촌 통계 풀(pool) 보완 사항

* 3: 시·도단위 공표 / 4: 전국단위 공표

분 야	공표 구분	통계명	통계출처	공표 주기
기초통계 분야 (2)	3	장래인구추계 및 증감률	장래인구추계	5년
		기혼부인당 평균 출생아 수	인구총조사	5년
보건복지 증진 (27)	3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사회조사	2년
		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	경찰청범죄통계	1년
		부랑인 생활시설 수 및 생활인원 현황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현황	1년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사회조사	2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사회조사	2년
		유유아 양육비/지원액	보육시설 및 이용자 통계	반기
		유병기간 및 와병율	사회조사	2년
		만 10세 이하 자녀 양육 실태	사회조사	2년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 이유	사회조사	2년	
	4	전반적 안전수준 만족도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5년
		전반적 복지수준 만족도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5년
		건강검진 빈도	농촌생활지표조사	1년
		건강수준 만족도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5년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5년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5년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5년
		하루 평균 근로시간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5년
		산재보험 또는 농림어업인안전공제 가입 여부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5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5년
		질병 치료 시 예로사항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5년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1년
		출산 전후 몸조리 일 수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5년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5년
		최저생계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년
		노인의 의존 소득원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5년

분 야	공표구분	통계명	통계출처	공표주기
		필요한 여성복지사업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5년
		불의의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여부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5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18)	3	교원 변동 상황	교육통계	1년
		교육비에 대한 인식	사회조사	2년
		교육비 부담 요인	사회조사	2년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조사	2년
		학교 교육의 효과	사회조사	2년
		자녀 유학에 대한 견해	사회조사	2년
		졸업자의 진학 상황	교육통계	1년
		소요시간/이용교통수단별 통학인구	인구주택총조사	5년
		교육 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	사회조사	2년
		학교급 및 시·도별 사교육비/참여율	사교육비조사	1년
		지역별 평생교육기관 현황	평생교육통계	1년
		사회교육기회에 대한 만족도	사회조사	1년
	사회교육 참여	농촌생활지표조사	1년	
	4	특성 및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비조사	1년
		방과후학교, 어학연수 등 비용/참여율	사교육비조사	1년
		자녀의 교육여건 만족도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5년
		소규모학교 비율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5년
			타 지역 유학생 수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11)	3	교통문제	사회조사	2년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사회조사	2년
		주택 만족도	사회조사	2년
		정보통신기기 및 컴퓨터 보유 현황	사회조사	2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현황	인터넷이용실태조사	1년
		컴퓨터 사용 용도·시간·능력	사회조사	2년
	4	기초생활여건 만족도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5년
		주택 신개축 의사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5년
		이주의사(현 주택 계속 거주 의사)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5년
		정보·통신여건에 대한 만족도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5년
		컴퓨터 관련 교육 경험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5년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15)	3	성/연령/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매월
		활동 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매월
		도시와 농어촌 교류활동 및 만족도	사회조사	2년
		농가총소득	농가경제조사	1년

분 야	공표 구분	통계명	통계출처	공표 주기	
		소득·소비 만족도	사회조사	2년	
		일에 대한 만족도	사회조사	2년	
		저축 및 부채 현황	가구소비실태조사	5년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재정연감	1년	
		취업률 및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4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5년	
		도농교류사업 참여 의사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5년	
		어가총소득	어가경제조사	1년	
		월소득 계층별 가구 분포	가계동향조사	1년	
		월평균 가구소득	가계동향조사	1년	
		월평균 지출액 및 지출 구성	가계동향조사	1년	
		문화·여가 여건 향상 (9)	3	가사분담 실태	사회조사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사회조사			1년	
여가활용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사회조사			2년	
주요 여가활동 현황	사회조사			2년	
사회단체 참여	사회조사			2년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사회조사			2년	
4	많이 이용하는 공공 여가시설		농촌생활지표조사	1년	
	필요한 문화·여가시설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1년	
	월평균 휴무일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5년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6)	3		현재 체감 환경	사회조사	2년
			환경보호 부담감	사회조사	2년
		환경오염 방지노력	사회조사	2년	
	4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인식 정도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5년	
		폐기물 처리방법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5년	
		생활환경 쾌적성 만족도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5년	
지역발전 역량 강화 (3)	4	지역생활 만족도	농촌생활지표조사	1년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	농촌생활지표조사	3년	
		마을 공동체 참여 의식	농촌생활지표조사	1년	

부록 7.

삶의질지수 및 부문별 지수 상위 50위 지역

□ 보건·복지 부문지수(상위 50개 시·군)

시·군명	행정구역	기초생활권	광특회계지역	낙후지역	보건·복지 지수
부천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6.150
음성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5.934
수원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824
안양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386
성남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267
고양시	일반시	도시형	특수상황지역		5.204
전주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136
청주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983
목포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916
의정부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839
화순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759
안산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752
광명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525
정읍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497
남원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442
천안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442
진천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39
순천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36
김해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394
청양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391
마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364
동두천시	일반시	도농연계형	특수상황지역		4.360
포항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357
창원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350
익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343
고창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330
진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324
김제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304
군포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296

시·군명	행정구역	기초생활권	광특회계지역	낙후지역	보건·복지 지수
순창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축진지역	4.290
산청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축진지역	4.289
구리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267
양주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특수상황지역		4.250
거창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축진지역	4.240
부안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축진지역	4.225
논산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199
장흥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축진지역	4.191
시흥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190
증평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180
나주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축진지역	4.164
함양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축진지역	4.158
안성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153
성주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축진지역	4.148
제주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139
문경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축진지역	4.135
임실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축진지역	4.129
진안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축진지역	4.117
구례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축진지역	4.104
장수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089
의령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축진지역	4.064

□ 교육여건 부문지수(상위 50개 시·군)

시·군명	행정구역	기초생활권	광특회계지역	낙후지역	교육여건 지수
부천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7.565
수원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6.787
성남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656
전주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633
목포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533
안양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476
청주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446
안산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315
천안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256
창원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134
용인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159
고양시	일반시	도시형	특수상황지역		4.927
마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768
광명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725
김해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628
구리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569
계주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564
진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542
군포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530
광양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529
구미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519
순천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572
진해시	일반시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473
시흥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453
경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23
화성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42
오산시	일반시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397
의정부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381

시·군명	행정구역	기초생활권	광특회계지역	낙후지역	교육여건 지수
안동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337
강릉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328
강화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특수상황지역		4.318
통영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315
칠곡군	군지역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346
포항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294
원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298
횡성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284
평택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275
양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특수상황지역		4.235
서귀포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232
경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215
의령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184
춘천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특수상황지역		4.183
동해시	일반시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179
아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168
양구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167
이천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154
거창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135
밀양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134
당진군	군지역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128
순창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128

□ 기초생활 인프라 부문지수(상위 50개 시·군)

시·군명	행정구역	기초생활권	광특회계지역	낙후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지수
부천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7.136
안양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6.701
수원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935
목포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912
광명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912
성남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848
군포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714
구리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679
안산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636
의정부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631
청주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458
시흥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310
오산시	일반시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306
고양시	일반시	도시형	특수상황지역		5.255
전주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129
용인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939
남양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882
의왕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867
계룡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842
창원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835
김해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832
속초시	일반시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793
동두천시	일반시	도농연계형	특수상황지역		4.773
하남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749
구미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723
광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703
진해시	일반시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683
제주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682

시·군명	행정구역	기초생활권	광특회계지역	낙후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지수
달성군	군지역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663
평택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650
양주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특수상황지역		4.635
경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633
천안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606
양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특수상황지역		4.580
화성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564
동해시	일반시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501
거제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96
마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88
포항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480
진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44
기장군	군지역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443
김포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특수상황지역		4.442
파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특수상황지역		4.435
춘천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특수상황지역		4.426
이천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15
원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06
군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03
익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00
서귀포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395
통영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389

□ 경제활동 부문지수(상위 50개 시·군)

시·군명	행정구역	기초생활권	광특회계지역	낙후지역	경제활동 지수
용인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729
화성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5.646
고양시	일반시	도시형	특수상황지역		5.603
경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5.531
포항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514
창원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508
아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5.482
수원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406
천안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402
성남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368
과천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293
안산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257
부천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228
안양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078
구미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5.055
김해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5.023
시흥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016
파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특수상황지역		5.015
거제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988
강릉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984
계주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904
평택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883
청주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882
울주군	군지역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877
전주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860
보령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801
광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722
진천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693

시·군명	행정구역	기초생활권	광특회계지역	낙후지역	경제활동 지수
김포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특수상황지역		4.652
서귀포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651
양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특수상황지역		4.640
광양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637
당진군	군지역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623
포천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특수상황지역		4.546
여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544
춘천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특수상황지역		4.538
태안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535
청원군	군지역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503
이천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58
양주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특수상황지역		4.448
경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45
마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25
진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07
목포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394
진해시	일반시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384
군포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350
안성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313
정선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308
원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301
기장군	군지역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290

□ 문화·여가 부문지수(상위 50개 시·군)

시·군명	행정구역	기초생활권	광특회계지역	낙후지역	문화·여가 지수
부천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8.249
목포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6.440
안양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942
수원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881
과천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821
청주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771
안동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5.762
광명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648
성남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513
경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5.485
안산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377
의정부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277
전주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096
계주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5.048
군포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872
창원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796
구리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777
용인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735
양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특수상황지역		4.653
합천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607
서귀포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575
진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547
고양시	일반시	도시형	특수상황지역		4.533
부여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355
공주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290
논산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288
순천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240
밀양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236

시·군명	행정구역	기초생활권	광특회계지역	낙후지역	문화·여가 지수
창녕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235
강화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특수상황지역		4.215
오산시	일반시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203
예산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196
의왕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153
강릉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137
봉화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121
남양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116
거창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107
영천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103
남원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103
진해시	일반시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086
남해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071
영주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071
천안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067
시흥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065
통영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054
정읍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006
김해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3.984
함양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3.970
충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3.968
아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3.957

□ 환경·경관 부문지수(상위 50개 시·군)

시·군명	행정구역	기초생활권	광특회계지역	낙후지역	환경·경관 지수
진도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6.556
인제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특수상황지역		5.438
완도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5.420
무주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5.355
신안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5.016
구례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868
속초시	일반시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733
태백시	일반시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성장촉진지역	4.712
강릉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690
삼척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661
달성군	군지역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659
춘천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특수상황지역		4.648
계천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641
정선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585
평창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573
가평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569
동해시	일반시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541
양양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540
문경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510
단양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504
영덕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490
마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55
홍천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55
원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45
동두천시	일반시	도농연계형	특수상황지역		4.433
영주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429
양구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26
광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20

시·군명	행정구역	기초생활권	광특회계지역	낙후지역	환경·경관 지수
계룡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16
경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11
양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특수상황지역		4.410
순천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393
남원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373
남양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371
과천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368
광양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366
진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344
보은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343
구미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314
안동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312
여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305
울주군	군지역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293
의왕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292
진안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285
충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283
포항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282
화순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278
거제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278
횡성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4.278
기장군	군지역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277

□ 지역발전역량 부문지수(상위 50개 시·군)

시·군명	행정구역	기초생활권	광특회계지역	낙후지역	지역발전역량 지수
과천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10.278
계룡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6.228
용인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6.192
고양시	일반시	도시형	특수상황지역		5.952
성남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861
철원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특수상황지역		5.845
군포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576
기장군	군지역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572
시흥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564
하남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339
수원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266
안양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207
남양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5.163
전주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148
구리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132
의왕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124
부천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042
청주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865
경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830
청원군	군지역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803
천안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789
광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773
김해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756
창원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727
강릉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724
광명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714
화성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665
김포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특수상황지역		4.656

시·군명	행정구역	기초생활권	광특회계지역	낙후지역	지역발전역량 지수
춘천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특수상황지역		4.586
원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582
화천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특수상황지역		4.562
오산시	일반시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553
파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특수상황지역		4.537
광양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536
군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535
익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523
의정부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522
양구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512
목포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490
아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73
제주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53
안성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44
진해시	일반시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444
순천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31
양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특수상황지역		4.424
충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07
마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06
구미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396
거제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390
진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383

□ 삶의 질 종합지수(상위 50개 시·군)

시·군명	행정구역	기초생활권	광특회계지역	낙후지역	삶의질지수 (종합지수)
부천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6.026
수원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521
안양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415
성남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369
과천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165
고양시	일반시	도시형	특수상황지역		5.037
목포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035
청주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5.014
전주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972
용인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966
안산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933
창원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771
군포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750
광명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747
의정부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714
천안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653
구리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616
시흥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600
경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534
김해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531
제주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516
강릉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40
포항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438
진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27
양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특수상황지역		4.416
구미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05
마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403

시·군명	행정구역	기초생활권	광특회계지역	낙후지역	삶의질지수 (종합지수)
화성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356
순천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350
남양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317
진해시	일반시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305
경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297
오산시	일반시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291
광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285
기장군	군지역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284
하남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277
원주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272
안동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269
춘천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특수상황지역		4.267
광양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263
계룡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239
거제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214
아산시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213
속초시	일반시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206
의왕시	일반시	도시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204
서귀포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169
양주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	특수상황지역		4.165
울주군	군지역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165
음성군	군지역	농산어촌형	일반농산어촌지역		4.135
동해시	일반시	도농연계형	도시활력증진지역		4.134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농산어촌 우수고교 선정 대상.”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 김광선·권인혜·김창호. 2010. 「농촌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발전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렬·김경덕. 2008. 「농촌지역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렬·유학렬. 2009. “일본의 농촌지역 통계정보 현황.” 세계농업 제10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현호 외. 2008. 「지역생활여건개선 사업추진 기본계획 마련연구」. 행정안전부.
- 김혜승. 2007.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 연구」. 국토연구원.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2009. “농어촌 서비스기준(안).”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 2009. 「2010-2014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 2010. 「2010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농림수산식품부.
- 문화체육관광부. 2009. 「2009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09. “2009년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세부사업 설명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0년 사계절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 백승길. 2007. 「정책학 원론」. 대영문화사.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2010. 「2009년 보육통계」.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2010.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 송미령·김광선. 2009. “농촌 서비스 기준 도입 필요성과 과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4): 1-18.
- 송미령·김광선·박주영. 2009.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김용렬·성주인·박주영·허윤진. 2007.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김정섭·김광선·박주영. 2008.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박시현. 2001. 「농촌 공동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박시현·성주인·김광선·권인혜. 2009. 「지역발전정책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정책 방향 설정 및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외. 2010. “2010 지역발전지수(RDI)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 송미령 외. 2010. “2010 특수지표①: 창조지역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 송미령 외. 2010. “2010 특수지표②: 생활편의기반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 이강진·황중동·진영섭. 2006.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한 지역통계의 적극적 활용방안」. 전북발전연구원.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09. 「2009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준급. 2006. 「정책학 원론」. 대명출판사.
- 한국교육개발원. 2009. 「평생교육통계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한표환 외. 2007. 「지역생활여건개선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6대 생활서비스 DB구축 연구」. 행정자치부.
- 환경부. 2009. 「2008상수도통계」. 환경부.
- 환경부. 2009. 「2008하수도통계」. 환경부.

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 2010. *State of the Countryside 2010*. 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

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 2008. *State of the Countryside Update: Rural Analysis of the Index of Multiple Deprivation 2008*.

Defra. 2008. “Rural Challenges, Local Solutions: Building on the Rural Delivery Pathfinders in England.”

Defra. 2007. “Rural Services Review: Reviewing Standards 2006.”

Defra. 2005. “Rural Delivery Pathfinders: Prospectus.”

Defra. 2004. “Defra’s Five Year Strategy: Delivering the Essentials of Life.”

Deputy Prime Minister and Secretary of State for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and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2000. *Our Countryside: The Future - A Fair Deal for Rural England*.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http://stat.mw.go.kr>)

영국 지방정부 개선개발국 (www.idea.gov.uk)

영국 Defra 패스파인더 (<http://www.defra.gov.uk/rural/policy/ruraldelivery/pathfinders.htm>)

캐나다 커뮤니티 정보 데이터베이스 (www.cid-bdc.ca)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영국 Neighbourhood Statistics (<http://www.neighbourhood.statistics.gov.uk/>)